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 12

세 법 연구 센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관세제도의 대부분을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지면의 부족 및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가급적 최신의 내용을 수록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사회·경제 상황에 따라 세제에 변화가 빈번하여, 가장 최신의 내용을 본 보고서에 반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는 베트남의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길라잡이임을 밝히며,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베트남 관세총국 및 재무부의 출판물 및 홈페이지와 관련 법령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특히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 법령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불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관세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홈페이지(www.kipf.re.kr) 및 관세청 해외통관 지원센터 홈페이지(www.customs.go.kr/foreign)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와 무관함을 밝혀둔다.

목 차

| | |
|--|----|
| I. 개 관 | 9 |
| 1. 일반 개황 | 9 |
| 2. 경제 개황 | 12 |
| 가.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 12 |
| 나.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 | 14 |
| 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동향 | 17 |
| 3.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관계 | 21 |
| 4.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및 동향 | 25 |
|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 32 |
| 1. The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 32 |
|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35 |
| 가. 수입 관세정책(Import policies) | 36 |
| 나.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 36 |
| III. 베트남의 통관환경 | 40 |
| 1. 통관 행정 개요 | 40 |
| 가. 통관 행정기관 | 40 |
| 나. 베트남 신(新)관세법 | 42 |
| 2.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43 |
| 가. 수입 관세 | 43 |
| 나. 특별소비세(SCT, Special Consumption Tax) | 45 |

| | |
|--|----|
| 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 47 |
| 라. 수출세..... | 47 |
| 3. 관세 면세, 유예 및 환급제도..... | 48 |
| 가. 관세 면세제도..... | 48 |
| 나. 관세 유예제도..... | 49 |
| 다. 관세 환급제도..... | 50 |
| 4. 베트남의 통관 절차..... | 52 |
| 가. 수입통관 절차..... | 52 |
| 나. 수출통관 절차..... | 57 |
| 5. 수입규제..... | 59 |
| 가. 수입제한 및 금지..... | 59 |
| 나. 수입허가제도..... | 61 |
| 6. 원산지제도..... | 71 |
| 7. 보세제도..... | 73 |
| 8. 베트남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 74 |
| | |
| IV. 통관절차별 고려사항..... | 77 |
| 1. 수입신고 전 준비 단계..... | 77 |
|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77 |
| 나. 애로사례..... | 78 |
| 다. 업무상 유의점..... | 79 |
| 2. 수입신고 및 세관의 심사단계..... | 83 |
|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83 |
| 나. 애로사례..... | 84 |
| 다. 업무상 유의점..... | 87 |
| 3. 수입신고 수리 이후 단계..... | 88 |
|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88 |
| 나. 애로사례..... | 89 |

| | |
|--------------------------|-----|
| 다. 업무상 유의점..... | 89 |
| 4.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단계..... | 90 |
|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90 |
| 나. 애로사례..... | 92 |
| 다. 업무상 유의점..... | 93 |
| 5. 요약..... | 95 |
| | |
| 참고문헌..... | 96 |
| | |
| 〈부록 Ⅰ〉 비즈니스 팁..... | 101 |
|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 105 |
| 〈부록 Ⅲ〉 베트남 관세청법..... | 109 |
| 〈부록 Ⅳ〉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 | 166 |
| 〈부록 Ⅴ〉 베트남 소비세법..... | 179 |
| 〈부록 Ⅵ〉 물품 라벨링 규정..... | 188 |

표목차

| | |
|--|----|
| 〈표 I -1〉 최근 베트남의 GDP성장률 | 13 |
| 〈표 I -2〉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 14 |
| 〈표 I -3〉 베트남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 15 |
| 〈표 I -4〉 2014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품목 | 15 |
| 〈표 I -5〉 2014년 베트남의 국별 수출입 현황 | 17 |
| 〈표 I -6〉 연도별 외국인의 대(對)베트남 투자동향 | 17 |
| 〈표 I -7〉 대(對)베트남 국별 외국인 투자실적(2015.06.20 기준 누계) | 18 |
| 〈표 I -8〉 대(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2015.06.20 기준 누계) | 19 |
| 〈표 I -9〉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투자현황 | 20 |
| 〈표 I -10〉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업종별 투자 현황 | 21 |
| 〈표 I -11〉 최근 대(對)베트남 교역량 및 무역수지 | 22 |
| 〈표 I -12〉 2014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순위 | 22 |
| 〈표 I -13〉 최근 대(對)베트남 10대 수출 품목 | 23 |
| 〈표 I -14〉 최근 대(對)베트남 10대 수입 품목 | 24 |
| 〈표 I -15〉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 26 |
| 〈표 I -16〉 일반품목군에 대한 한·ASEAN FTA의 관세 철폐 이행 | 28 |
| 〈표 I -17〉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 29 |
| 〈표 I -18〉 베트남 주요 FTA 비교 | 31 |
| 〈표 II -1〉 『Doing Business 2015』상 베트남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 33 |
| 〈표 II -2〉 베트남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 34 |
| 〈표 II -3〉 베트남 수출입 시 구비서류 | 34 |
| 〈표 III -1〉 WTO 가입 전·후 베트남 평균 수입관세율 | 44 |

| | |
|--|----|
| 〈표 Ⅲ-2〉 특별소비세 대상 주요 품목 예시..... | 46 |
| 〈표 Ⅲ-3〉 채널(Channel)별 필요 심사 절차(전산신고 시)..... | 53 |
| 〈표 Ⅲ-4〉 2014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 60 |
| 〈표 Ⅲ-5〉 자동수입허가(AIL) 대상 주요 품목 예시..... | 64 |
| 〈표 Ⅲ-6〉 한·베트남 FTA 원산지기준의 주요 내용..... | 72 |
| 〈표 Ⅲ-7〉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비교..... | 73 |
| | |
| 〈표 Ⅳ-1〉 베트남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 95 |

그림 목차

| | |
|--|----|
| [그림 I -1] 베트남 정부조직도..... | 11 |
| [그림 I -2] 한·ASEAN FTA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분류..... | 27 |
| [그림 III-1] 베트남 관세행정 조직도..... | 41 |
| [그림 III-2] 베트남 관세청 관세율 검색창 화면..... | 45 |
| [그림 III-3] 베트남의 관세 환급절차..... | 51 |
| [그림 III-4] 베트남의 수입통관 절차..... | 55 |
| [그림 III-5] 베트남의 수출통관 절차..... | 58 |
| [그림 III-6] 베트남의 자동수입허가(AIL) 신청서 예시..... | 63 |
| [그림 III-7]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TCVN) 절차..... | 67 |

I. 개 관

1. 일반 개황¹⁾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에 남북으로 약 1,7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동서 최장거리는 600km에 달하고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국토면적은 약 33만km²로 한반도 면적의 약 1.5배에 달함
 - 남부는 평지와 삼각주 등이 분포하여 곡창지대를 이루고 중부와 북부는 대부분이 산악지대이며, 국토의 70% 이상이 산악지대임

- 베트남은 지형적 특성상 남부 지역과 북부 지역의 기후 차이가 큰 편임
 - 북부 지역은 아열대성 기후로 연간 최저 기온과 최고 기온의 차가 매우 크지만, 남부 지역은 열대몬순기후로 연간 온도 차가 크지 않음
 - 연평균 기온은 24.1℃(북부 23.2℃, 남부 27.1℃)이며, 습도는 월평균 83%, 연평균 강수량은 우리나라보다 2.4배 많은 2,151mm임

- 현재 베트남의 행정구역은 2008년 정부 조직법에 따라 58개의 성(省)과, 그와 같은 급인 5개의 직할시(하노이, 껀터, 다낭, 하이퐁, 호치민)로 운영되고 있음
 -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로 베트남 북부에 위치
 - 호치민은 베트남에서 가장 큰 도시로 베트남 남부에 위치

1)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p.9-10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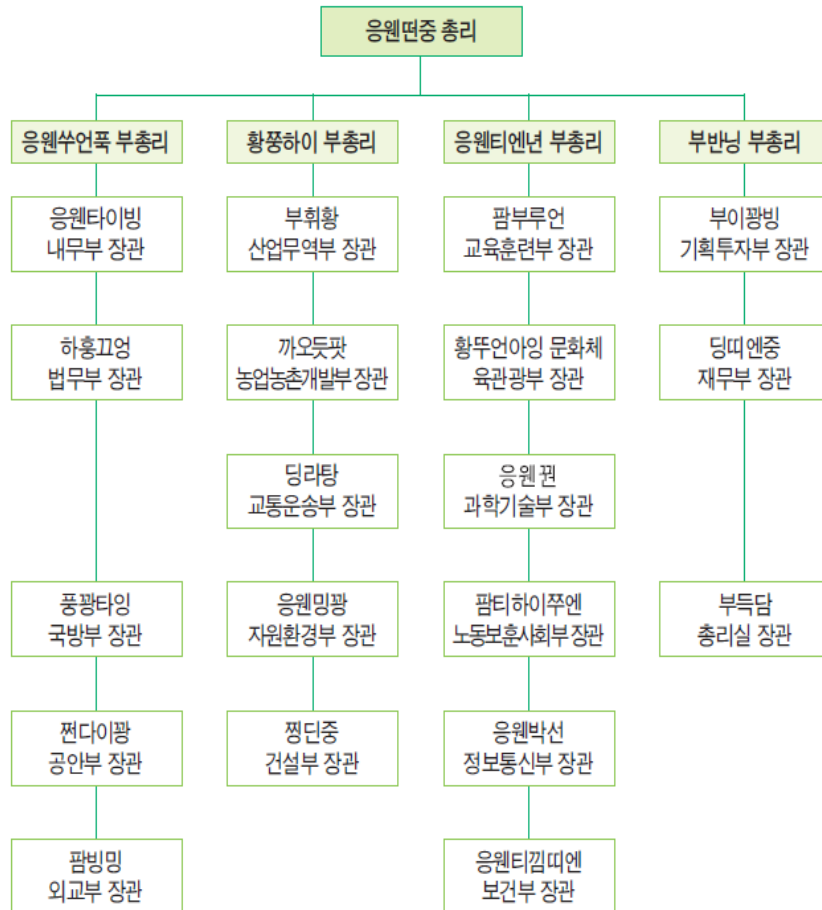
- 베트남의 화폐단위는 동(Dong/VND 2015년 5월 기준 21,583동/1달러)이며, 언어는 베트남어를 사용하고, 종교는 불교가 약 11%, 가톨릭이 약 6%를 차지함

- 베트남의 총인구는 2014년 7월 기준 약 9,342만명으로 우리나라의 1.8배 정도임
 - 베트남은 총인구의 약 50%를 차지하는 30대 미만의 젊은 연령층이 베트남 경제성장을 주도 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은 54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비엣(Viet)족이 약 90%로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함
 - 베트남 통계청 조사에 의한 2011년 베트남의 산업별 고용 비중을 살펴보면 농·수·임업 종사 노동자 수는 48.4%로 전년 대비 1.1%가 감소하였음에도 여전히 높은 편이며, 제조업과 서비스 분야 고용 비중은 각각 21.3%와 30.3%로 나타남

- 과거 베트남은 1859년부터 95년 동안 프랑스의 식민지 지배를 받은 바 있어 도처에 프랑스의 영향을 받은 건물, 음식 등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1955년부터 20년간 벌어진 베트남 전쟁에는 우리나라 군인 32만명이 파병되기도 하였음
 - 문화적으로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중국의 영향을 받은 한자 문화권에 속하기 때문에, 인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다른 동남아 국가들과 큰 대조를 이룸

- 베트남의 정치체제는 사회주의 공화제로 공산당이 유일한 정당이며, 정부는 중앙행정기구, 국회(최고인민회의)는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임
 - 베트남 최고의 중앙행정기구인 정부의 구성원은 5년 임기로 국회에서 선출되며, 법률 및 법령안을 국회 및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법령 및 명령, 총리령 및 부령을 공포함
 -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국회는 단원제로 5년마다 행해지는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주요기능으로는 헌법 및 법률 제정·개정, 예산·결산안의 의결 등임

[그림 I -1] 베트남 정부조직도



출처: 외교부, 『베트남 개황』, 2013, p.22.

- 베트남은 1995년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7번째 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의장국으로 활동한 바 있음
 - 현재 ASEAN의 가입국은 총 10개국으로, 베트남을 비롯하여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임

- 2007년 1월 베트남은 150번째 WTO 가입국 지위를 얻음
 - 베트남은 WTO 가입 이후 무엇보다 수출 실적이 향상되고,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이 대폭 확대되었음

- 과거 베트남 외국인투자는 섬유·의류 등 노동집약적산업의 투자비중이 높았지만, 최근 건설, 철강 등 기타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산업 분야의 투자가 증대되었으며, 인프라 및 원자재 산업 개발은 베트남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쇄신) 정책을 통하여 개혁·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2008년에는 UN의 최빈국 기준을 탈피하는 성과를 거둠²⁾
 - 최근에는 지도층의 부정부패 척결, 소득의 증대 및 빈부격차 해소, 치안유지 등을 통한 사회·정치적 안정 도모와 이를 통한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
- 베트남의 주요 경제현안은 만성적인 무역적자와 동화(貨)의 가치 하락으로 인한 환율 불안정, 물가 불안, 외환 부족, 전력 부족 등이며,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현재 한·ASEAN FTA와 별도의 양자 협정으로 한·베트남 FTA가 타결되어 2015년 12월 20일 발효됨
- 2015년 10월 5일 베트남이 최초 협상국으로 참여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이 최종 타결됨에 따라, 베트남으로의 외국인 투자유치 증대가 기대되며 이는 곧 베트남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2. 경제 개황

가.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 2014년도 베트남의 경제는 5월 반중시위 등 여러 경제 및 정치적 악재들을 극복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 흑자를 기록하여 환율의 안정화에도 기여하는 등 전반적으로 거시경제의 안정화를 실현한 것으로 평가됨³⁾

2) UN의 최빈국 기준은 1인당 GDP 960달러이며, 베트남은 2008년 1인당 GDP 1,052달러를 기록함

3)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2014년 베트남 경제동향』,

- 베트남은 세계 경제 불안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14년 5.98%의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며, GDP 약 1,861억달러를 달성하였음⁴⁾
- 베트남의 GDP성장률은 2012년 5.03%, 2013년 5.42%에 이어 3년 연속 5%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2015년 목표는 6.2%임
 - 국제통화기금(IMF)의 2014년 자료 기준으로 베트남은 세계 GDP 순위 중 제55위에 올랐음
- 베트남의 2015년 1/4분기 산업별 GDP 구성비는 1차 산업 12.35%, 2차 산업 34.80%, 3차 산업 52.85%임⁵⁾
- 전년 대비 1차 산업의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3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표 I-1〉 최근 베트남의 GDP성장률

(단위: %, 전년동기 대비)

| 구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년 1/4분기 | 2015년 2/4분기 | 2015년 3/4분기 |
|------------|------|------|------|------|----------------|----------------|----------------|
| GDP 성장률 | 5.89 | 5.03 | 5.42 | 5.98 | 6.12 | 6.47 | 6.81 |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5년 3/4분기 베트남 경제 동향』,
http://www.kita.net/global_hcm/bizinfo/economy/view.jsp?n_index=1730196&n_boardidx=117000,117001,126005,120010&count=y, 2015, 검색일자: 2015. 11. 23.

- 베트남의 물가상승률은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상승 억제 노력에 힘입어 2014년 약 4.1%로 전년도의 약 6.6%보다 더욱 안정된 기조를 유지함⁶⁾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83&tableName=TYPE_KORBOARD&seqno=10198, 2015, 검색일자: 2015. 11. 30.

4) 외교부, 『베트남 2014년 경제성과 및 2015년 전망』, 2015, p.1.

5) 한국무역협회, 『2015년 1/4분기 베트남 경제 동향』,
http://www.kita.net/global_hcm/bizinfo/economy/view.jsp?n_index=1730196&n_boardidx=117000,117001,126005,120010&count=y, 2015, 검색일자: 2015. 11. 30.

6)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2014년 베트남 경제동향』,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83&tableName=TYPE_KORBOARD&seqno=10198, 2015, 검색일자: 2015. 11. 30.

- 환율 또한 무역수지 개선 및 외자의 유입 등으로 달러당 21,200동대에서 안정세를 보임

〈표 I-2〉 베트남의 주요 경제지표

| 구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경상 GDP(억달러) | 1,346 | 1,556 | 1,706 | 1,860 |
| 1인당 GDP(달러) | 1,532.3 | 1,752.6 | 1,901.7 | 2,052.8 |
| 경제성장률(%) | 6.2 | 5.0 | 5.4 | 6.0 |
| 물가상승률(%) | 18.68 | 9.10 | 6.60 | 4.10 |
| 실업률(%) | 4.51 | 4.47 | 4.42 | 4.42 |
| 수출(억달러) | 969 | 1,145 | 1,320 | 1,502 |
| 수입(억달러) | 1,067 | 1,138 | 1,320 | 1,481 |
| 무역수지(억달러) | -98 | 7 | 0 | 21 |
| 외환보유(억달러) | 140 | 261 | 263 | 308 |

- 출처: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http://knoema.com/IMFWEO2015Apr/imf-world-economic-outlook-weo-april-2015?country=1001860-vietnam>, 검색일자: 2015. 11. 23.
 2) The World Bank, 『Data: Vietnam』, <http://data.worldbank.org/country/vietnam>, 검색일자: 2015. 11. 23.
 3)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경제무역현황』,
http://www.kita.net/WIKI006.R02.cmd?cmd_id=WIKI006.R02.cmd&country=asia&countryEngName=vietnam&nationCategory=economic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5. 11. 23.

나. 베트남의 수출입 동향

- 2014년 베트남은 전년 대비 수출금액이 약 14% 증가하여 수출총액 1,500억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약 21억달러의 무역흑자를 기록함⁷⁾
 - 2014년 베트남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실적은 전년 대비 6.5% 감소한 202.4억달러를 기록함

7) 주 베트남 한국대사관, 『2014년 베트남 경제동향』,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83&tableName=TYPE_KORBOARD&seqno=10198, 2015, 검색일자: 2015. 11. 30.

〈표 I-3〉 베트남의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 구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총교역량 | 1,270.5 | 1,561.9 | 2,036.6 | 2,283.6 | 2,642.5 | 2,982.5 |
| 수출 | 571.0 | 721.9 | 969.1 | 1,145.7 | 1,321.3 | 1,501.9 |
| 수입 | 699.5 | 840.0 | 1,067.5 | 1,137.9 | 1,321.2 | 1,480.6 |
| 무역수지 | -128.5 | -118.1 | -98.4 | 7.8 | 0.1 | 21.3 |

출처: 베트남 통계청(GSO), 『Thematic Data』,

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6&ItemID=14220, 검색일자: 2015. 11. 23.

- 베트남의 주요 수출 품목에 있어 1차 상품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가전제품과 섬유류를 비롯하여 공산품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
- 베트남의 수출품목 중 금액 기준으로 휴대폰 및 부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음으로 섬유 및 의류, 컴퓨터 및 전기제품, 신발, 수산물 등이 주로 수출되고 있음
- 베트남의 주요 수입 품목에 있어서는 수출 호조로 인한 부품 및 중간재 수입의 증가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의 수요 증가로 인하여 철강제품 또한 주요 수입 품목으로 부상함
- 베트남의 수입 품목 중 금액 기준으로 기계·장비·부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철강과 정유, 의류, 컴퓨터 전자부품·부분품 등의 수입이 뒤를 이음

〈표 I-4〉 2014년 베트남의 주요 수출입 품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 수출 | | 수입 | |
|----|------------|--------|------------|--------|
| | 품목 | 금액 | 품목 | 금액 |
| 1 | 휴대폰 및 부품 | 23,607 | 기계공구 및 부품 | 22,500 |
| 2 | 섬유 및 의류 | 20,947 | 컴퓨터 및 전기제품 | 18,722 |
| 3 | 컴퓨터 및 전기제품 | 11,440 | 식물 | 9,428 |
| 4 | 신발 | 10,340 | 휴대폰 및 부품 | 8,476 |
| 5 | 수산물 | 7,836 | 철강 | 7,775 |
| 6 | 기계공구 및 부품 | 7,314 | 석유제품 | 7,665 |
| 7 | 원유 | 7,229 | 플라스틱 원료 | 6,317 |
| 8 | 목재 및 목제품 | 6,232 | 섬유신발 원자재 | 4,692 |
| 9 | 운송수단 및 부품 | 5,627 | 기타금속 | 3,434 |
| 10 | 커피 | 3,558 | 화학원료 | 3,315 |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4 베트남 수출입 동향』, 2015, pp.2-3.

- 금액 기준 2014년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상대국은 미국이었고, 그 외에 중국·일본·한국 순으로 활발한 수출이 이루어짐
 - 2014년 베트남은 약 71억달러의 대(對)한국 수출액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약 147억달러를 기록한 3위 수출국인 일본에 이은 4위에 해당하는 수치임

- 베트남의 가장 큰 수입상대국은 중국이었으며, 한국·일본·대만이 그 뒤를 이음
 - 2014년 우리나라는 베트남의 2위 수입상대국이었으나, 1위인 중국과는 수입액 기준으로 200억달러 이상의 차이를 보임

- 베트남은 교역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특성이 있는데, 전체 대외교역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⁸⁾
 - 무역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술 장벽 도입, 지원 산업(Supporting Industry) 육성, 중국 상품을 대체할 제품 개발 등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자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크지 않은 실정임

8)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베트남 2015년 상반기 무역적자, 불황형 흑자에서 탈피?」,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9986&ARTICLE_SE=20301,
 2015, 검색일자: 2015. 11. 30.

〈표 I-5〉 2014년 베트남의 국별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달러)

| 순위 | 수 출 | | 수 입 | |
|----|-------|--------|-------|--------|
| | 국가명 | 금액 | 국가명 | 금액 |
| 1 | 미국 | 28,656 | 중국 | 43,868 |
| 2 | 중국 | 14,906 | 한국 | 21,736 |
| 3 | 일본 | 14,704 | 일본 | 12,909 |
| 4 | 한국 | 7,144 | 대만 | 11,085 |
| 5 | 홍콩 | 5,203 | 태국 | 7,119 |
| 6 | 독일 | 5,185 | 싱가포르 | 6,827 |
| 7 | UAE | 4,628 | 미국 | 6,284 |
| 8 | 호주 | 3,990 | 말레이시아 | 4,193 |
| 9 | 말레이시아 | 3,931 | 독일 | 2,623 |
| 10 | 네덜란드 | 3,769 | 인도네시아 | 2,497 |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4 베트남 수출입 동향』, 2015, p.4.

다. 베트남의 외국인 투자 동향⁹⁾

- 베트남은 2007년 WTO 가입 이후 3년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3년간의 투자 금액은 WTO 가입 이전보다 큰 폭으로 상승하였음
 - WTO 가입 후 3년 간 베트남이 유치한 외국인투자는 총 4,098여 건, 전체 투자등록 금액 1,141억 5천만달러로, 이 금액은 2001~2006년 대비 3.5배, 1988~2006년 대비 1.4배 높은 수치임

〈표 I-6〉 연도별 외국인의 대(對)베트남 투자동향

(단위: 건, 백만달러)

| 구분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
| 신규 투자건수 | 1,208 | 1,237 | 1,191 | 1,287 | 1,530 | 1,843 |
| 투자금액(증자포함) | 23,108 | 19,887 | 15,619 | 16,348 | 22,352 | 21,922 |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베트남-외국인투자동향』, p.1.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 검색일자: 2015. 11. 23.

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p.14-16 일부 내용을 직접 인용하되, 수정 및 보완하였음

- 베트남으로의 외국인투자는 누계 기준으로 2015년 6월 20일까지 총 18,529건, 2,578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국제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은 2009년과 2010년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투자 유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¹⁰⁾
- 누계 투자금액 기준, 국가별로 한국(약 392억달러)이 최대 투자국이며 누계 투자 건수 또한 4,459건으로 대(對)베트남 최대 투자국임
 - 2014년 연간 기준으로는 우리나라(약 61.83억달러)가 1위 투자국이었으며, 홍콩(약 28.18억달러), 싱가포르(약 23.31억달러), 일본(약 13.37억달러)순으로 나타남

〈표 I -7〉 대(對)베트남 국별 외국인 투자실적(2015.06.20 기준 누계)

(단위: 건, 백만달러)

| 순위 | 국가명 | 건수 | 투자금액 | 실행금액 |
|----|-----------|-------|--------|--------|
| 1 | 한국 | 4,459 | 39,160 | 11,090 |
| 2 | 일본 | 2,661 | 37,719 | 12,095 |
| 3 | 싱가포르 | 1,425 | 33,185 | 8,594 |
| 4 | 대만 | 2,429 | 28,740 | 12,055 |
| 5 | 버진아일랜드(영) | 563 | 18,631 | 6,002 |
| 6 | 홍콩 | 918 | 16,181 | 5,139 |
| 7 | 미국 | 748 | 11,079 | 2,703 |
| 8 | 말레이시아 | 498 | 10,893 | 3,699 |
| 9 | 중국 | 1,141 | 8,132 | 3,216 |
| 10 | 태국 | 392 | 6,809 | 2,987 |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베트남-외국인투자동향』, pp.1-2,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5. 11. 23.

- 2014년 말까지 누계 기준으로 가장 많은 투자를 유치한 업종은 제조·가공업이었으며, 그 뒤로 부동산경영, 건설, 호텔·요식업 순으로 조사됨
- 2014년 연간 기준으로도 제조·가공업이 가장 많은 투자금액(109.64억달러)을 유치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 부동산경영, 건설, 호텔·요식업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사업에 대한 투자 편중이 매우 높음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베트남-외국인투자동향』, p.1,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 검색일자: 2015. 11. 30.

- 베트남은 경제적 발전의 잠재력이 높은 국가로서, 외국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임
- 최근에는 신기술 및 친환경적업 분야 투자에 다양한 특혜 제도를 두었으며,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환경오염에 대한 관리가 엄격해졌음
 - 과거에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하였던 공단지역·수출입가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소득세 우대감면 혜택 등이 폐지되었음

〈표 I-8〉 대(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2015.06.20 기준 누계)

(단위: 건, 백만달러)

| 연번 | 산업 | 건수 | 투자금액 | 실행금액 |
|----|-----------------|-------|---------|--------|
| 1 | 제조, 가공 | 9,939 | 145,282 | 49,364 |
| 2 | 부동산경영 | 463 | 48,740 | 12,915 |
| 3 | 건설 | 1,216 | 11,572 | 4,264 |
| 4 | 호텔, 요식업 | 389 | 11,230 | 2,670 |
| 5 | 전력, 가스, 용수제조 공급 | 101 | 9,897 | 2,114 |
| 6 | 도소매, 유지보수 | 1,476 | 4,208 | 2,130 |
| 7 | 정보통신 | 1,152 | 4,144 | 2,329 |
| 8 | 물류운수 | 468 | 3,809 | 1,171 |
| 9 | 농·임·수산 | 530 | 3,733 | 1,839 |
| 10 | 예술, 오락 | 149 | 3,637 | 1,078 |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베트남-외국인투자동향』, p.3.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5. 11. 23.

-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투자는 세계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신고금액과 투자금액이 증가하며 신고건수 역시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한국의 대(對)베트남 직접투자는 1992년 한·베트남 수교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는 주로 의류·섬유 등 노동 집약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자본 및 기술 집약산업에 대한 투자가 주를 이룸¹¹⁾

11)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 증가 배경 분석과 시사점』, 2015, p.5.

〈표 I-9〉 최근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투자현황

(단위: 건, 개, 회, 천달러)

| | 신고건수 | 신규법인수 | 신고금액 | 송금횟수 | 투자금액 |
|-------|-------|-------|-----------|-------|-----------|
| 2011년 | 789 | 199 | 1,521,919 | 1,798 | 1,051,397 |
| 2012년 | 808 | 212 | 995,408 | 1,730 | 970,093 |
| 2013년 | 1,099 | 328 | 1,476,432 | 2,015 | 1,132,602 |
| 2014년 | 1,346 | 460 | 2,142,068 | 2,703 | 1,559,469 |

주: 법인은 현지 법인과 지점, 지사 포함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5. 11. 23.

- 한국의 대(對)베트남 직접투자는 제조업이 전통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여 왔으며, 주요 투자업종은 섬유·의류에서 금속, 전기·전자산업으로 변화해왔음
 - 2014년 12월 제조·가공업을 중심으로 약 3,112개 한국기업이 베트남 현지에 진출해있음
- 최근 한국의 대(對)베트남 직접투자 역시 제조업에 매우 치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금융 및 보험업과 도매 및 소매업에 대한 투자 금액이 급증하였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투자금액은 감소하였음
- 대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한국과 베트남의 전기·전자 분야의 생산네트워크는 양국 간 투자 및 교역 증가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산업고도화를 견인하는 데 크게 기여함
 -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의 참여 확대는 앞으로 기술이전 등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를 확대해 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표 I -10〉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천달러, 건)

| 2014 순위 | 투자 업종 | 2014년 | | 2013년 | |
|------------|--------------------|---------|------|---------|------|
| | | 투자금액 | 신고건수 | 투자금액 | 신고건수 |
| 1 | 제조업 | 974,710 | 946 | 757,541 | 794 |
| 2 | 광업 | 228,353 | 4 | 140,243 | 0 |
| 3 | 부동산업 및 임대업 | 75,567 | 22 | 71,806 | 14 |
| 4 | 도매 및 소매업 | 58,843 | 125 | 40,148 | 103 |
| 5 | 금융 및 보험업 | 87,694 | 7 | 11,443 | 3 |
| 6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36,631 | 10 | 41,630 | 14 |

주: 법인은 현지 법인과 지점, 지사 포함

출처: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작성.
검색일자: 2015. 11. 23.

3.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교역관계

- 2014년 한국과 베트남 간 교역규모는 전년 대비 약 7.4% 증가한 303억 4천만달러를 기록하며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하였으며,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223억달러를 상회하며 약 144억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냄
-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수출 확대는 베트남에 우리 기업의 제조업 현지 투자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품·소재 등의 중간재 공급이 빠르게 증가한 데 기인함¹²⁾

1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 요약.

〈표 I-11〉 최근 대(對)베트남 교역량 및 무역수지

(단위: 억달러, %)

| 구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3년 | 2014년 |
|-------------------|----------------|-----------------|-----------------|-----------------|----------------|
| 수출 (전년 대비 증감률) | 96.5 (35.0) | 134.6 (39.5) | 159.5 (18.4) | 210.9 (32.2) | 223.5 (6.0) |
| 수입 (전년 대비 증감률) | 33.3 (40.5) | 50.8 (52.6) | 57.2 (12.5) | 71.8 (25.5) | 79.9 (11.4) |
| 무역수지 | 63.2 | 83.8 | 102.3 | 139.1 | 143.6 |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4 베트남 수출입 동향』, 2015, p.5.

- 우리나라의 대(對)베트남 무역수지는 지난 1980년대 이후 30여 년 동안 계속 흑자를 지속해 오고 있음
- 베트남은 금액 기준 2013년과 2014년 모두 한국의 제6위 수출국이었으며, 수입에 있어서는 2013년 16위에서 2014년 15위 수입대상국으로 자리함

〈표 I-12〉 2014년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 순위

(단위: 천달러)

| 수 출 | | | 수 입 | | |
|-----|-------|-------------|-----|----------|------------|
| 순위 | 국가 | 수출금액 | 순위 | 국가 | 수입금액 |
| 1 | 중국 | 145,287,701 | 1 | 중국 | 90,082,226 |
| 2 | 미국 | 70,284,872 | 2 | 일본 | 53,768,313 |
| 3 | 일본 | 32,183,788 | 3 | 미국 | 45,283,254 |
| 4 | 홍콩 | 27,256,402 | 4 | 사우디아라비아 | 36,694,536 |
| 5 | 싱가포르 | 23,749,882 | 5 | 카타르 | 25,723,055 |
| 6 | 베트남 | 22,351,690 | 6 | 독일 | 21,298,750 |
| 7 | 대만 | 15,077,398 | 7 | 호주 | 20,413,019 |
| 8 | 인도 | 12,782,490 | 8 | 쿠웨이트 | 16,892,033 |
| 9 | 인도네시아 | 11,360,656 | 9 | 아랍에미리트연합 | 16,194,256 |
| 10 | 멕시코 | 10,846,018 | 15 | 베트남 | 7,990,325 |

출처: 한국무역협회, 『세계통계』, <http://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5. 11. 23.

- 2013년 기준 한국의 대(對)베트남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와 무선통신기기 및 합성수지 등이었으며, 이 중 무선통신기기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수출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자동차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세와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수출 감소세가 두드러짐
 - 플라스틱제품의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은 26.5%로 처음으로 대(對)베트남 10대 수출 품목에 포함됨

〈표 I-13〉 최근 대(對)베트남 10대 수출 품목

(단위: 천달러, %)

| 순위 | 2013년 | | | 2014년 | | |
|----|--------------------------|------------|-----------|--------------|------------|-----------|
| | 품목명 | 금액 | 전년 대비 증가율 | 품목명 | 금액 | 전년 대비 증가율 |
| | 총 계 | 21,087,582 | 32.2 | 총 계 | 22,351,690 | 6.0 |
| 1 | 반도체 | 2,901,188 | 35.1 | 반도체 | 2,788,953 | -3.9 |
| 2 | 무선통신기기 | 1,566,043 | 83.0 | 무선통신기기 | 2,270,895 | 45.0 |
| 3 | 합성수지 | 1,135,908 | 28.7 | 합성수지 | 1,187,881 | 4.6 |
| 4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1,121,010 | 60.6 | 편직물 | 978,192 | 3.9 |
| 5 | 철강판 | 962,506 | -13.0 | 기구부품 | 936,520 | 1.0 |
| 6 | 편직물 | 941,824 | 15.1 | 철강판 | 916,671 | -4.8 |
| 7 | 기구부품 | 927,493 | 70.3 | 자동차 | 713,187 | 63.1 |
| 8 | 석유제품 | 787,327 | -32.7 | 석유제품 | 600,374 | -23.7 |
| 9 | 기타중전 (heavy electric) 기기 | 601,255 | 72.4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597,334 | -46.7 |
| 10 | 자동차 | 437,227 | 8.7 | 플라스틱 제품 | 508,027 | 26.5 |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4 베트남 수출입 동향』, 2015, p.5.

- 2013년 기준 한국의 대(對)베트남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신발, 원유 및 목재류 등이었으며, 이 중 신발과 목재류는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수입 증가세가 두드러짐

- 2014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컴퓨터 및 무선통신기기, 갑각류의 전년 대비 수입 증가세와 원유,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의 수입 감소세가 두드러짐
- 컴퓨터의 전년 대비 수입 증가율은 141.8%로 대(對)베트남 10대 수입 품목에 처음으로 포함됨
- 한국이 베트남으로부터 수입하는 주요 수입 품목은 의류와 신발, 목재류 등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의 경우 이 품목들의 수입액이 베트남으로부터의 전체 수입금액의 약 38%로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였음

〈표 I-14〉 최근 대(對)베트남 10대 수입 품목

(단위: 천달러, %)

| 순위 | 2013년 | | | 2014년 | | |
|----|--------------|-----------|-----------|--------------|-----------|-----------|
| | 품목명 | 금액 | 전년 대비 증가율 | 품목명 | 금액 | 전년 대비 증가율 |
| | 총 계 | 7,175,193 | 25.5 | 총 계 | 7,990,325 | 11.4 |
| 1 | 의류 | 1,682,627 | 55.2 | 의류 | 2,160,376 | 28.4 |
| 2 | 원유 | 943,158 | 13.7 | 신발 | 506,353 | 34.2 |
| 3 | 신발 | 377,255 | 24.3 | 목재류 | 350,385 | 51.2 |
| 4 | 목재류 | 231,676 | 32.4 | 무선통신기기 | 292,117 | 55.6 |
| 5 | 기타섬유제품 | 217,263 | 27.3 | 기타섬유제품 | 251,851 | 15.9 |
| 6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210,986 | 157.9 | 갑각류 | 206,455 | 64.3 |
| 7 | 무선통신기기 | 187,740 | 92.8 |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 193,023 | -8.5 |
| 8 | 연체동물 | 132,225 | -9.0 | 원유 | 192,244 | -79.6 |
| 9 | 천연섬유사 | 128,700 | 25.1 | 컴퓨터 | 173,858 | 141.8 |
| 10 | 갑각류 | 125,623 | 9.3 | 연체동물 | 167,819 | 26.9 |

출처: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4 베트남 수출입 동향』, 2015, p.6.

4.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현황 및 동향

- 베트남은 능동적이며 개방적인 외교정책으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외교를 적극 수행하고 있으며, 중국이나 쿠바 등 사회주의 국가와 러시아 등과도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한편, 개도국과의 연대 강화와 ASEAN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
- 베트남의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 평균관세율¹³⁾은 WTO 가입 전인 2000년 16.2%였으나, 2012년에는 11.36%, 2013년에는 9.5%로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¹⁴⁾
 - EU와의 FTA협상 등이 추가적으로 완료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2015년 12월 기준, 베트남은 9개의 FTA협정이 발효 중이고 EU, EFTA와 양자 간 FTA를 협상 중에 있으며 FTAAP, 우크라이나, 스리랑카, 터키와의 협상을 검토 중임
 - 베트남이 ASEAN 국가로서 참여한 FTA는 일본, 중국, 인도, 호주·뉴질랜드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FTA가 있음
 - 베트남 단독적으로 체결한 양자 간 FTA로는 베트남과 일본 간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베트남·칠레 FTA, 한·베트남 FTA,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FTA, TPP가 있음
- 중국과는 2006년부터 2015년인 올해까지 10년간 관세율 인하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행 중에 있으며, 일본과는 2009년 10월부터 경제동반자협정(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 발효되어 관세 인하 프로그램을 실행중임

13) MFN 관세율은 FTA 특혜 관세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의미함, 주로 WTO 협정세율이 MFN 관세율이 됨

14)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2.분야별 통상환경』, 2014, p.12.

〈표 I-15〉 베트남의 자유무역협정 현황

(2015년 12월 기준)

| | ASEAN 차원 | 베트남 단독 |
|----|-------------------------|------------------------------|
| 발효 | 한국, 중국, 일본, 호주·뉴질랜드, 인도 | AFTA, 일본 EPA, 칠레 FTA, 한국 FTA |
| 타결 | - | 러시아·벨라루스·카자흐스탄 관세동맹 FTA, TPP |
| 협상 | RCEP | EU FTA, EFTA FT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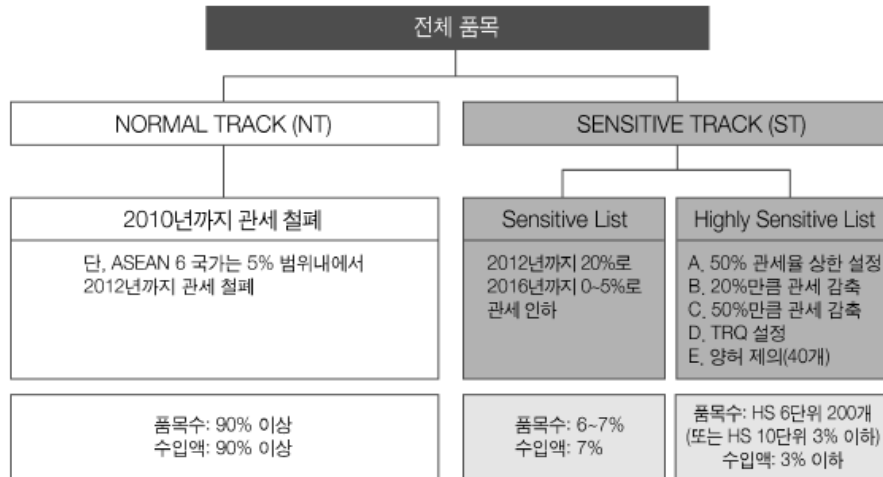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전세계 FTA 체결현황』 <http://fta.go.kr/main/situation/fta/world/>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5. 11. 23.

- 우리나라와는 2007년 6월 한·ASEAN FTA의 상품분야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한·베트남 간에 교역되는 상품들은 한·ASEAN FTA에서 정한 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음
 - 베트남으로부터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협정 발효 즉시 전체 품목의 63%에 해당하는 품목이 무관세 혜택을 받음
 - 베트남에 수출되는 상품의 경우에는 전체 품목의 45%에 해당하는 품목이 0~5%의 저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며, 2018년까지 전체의 90%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예정임
-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위한 상품협정 양허안은 전체 품목을 기본적으로 일반품목(NT), 일반민감품목(SL) 그리고 초민감품목(HSL)으로 구분하고 있음
- 베트남은 2015년까지 일반품목의 최소 90%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할 계획이며, 2018년까지 일반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를 완료할 예정임¹⁵⁾
- 베트남은 일반민감품목의 관세 철폐에 있어서 2017년 1월 1일까지 20%로 인하, 2021년 1월 1일까지 0~5%로 인하할 것을 합의함¹⁶⁾

1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베트남-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p.3. http://www.globalwindow.org/quasar_jsp/inc./gw_downloadpdf.html?fileName=/gw_files/NationPDF/101084/101084_204_5071826.pdf, 검색일자: 2015. 11. 30.

16) 한·ASEAN FTA 협정문 부속서 2. 『민감품목군에 배치된 관세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 및 철폐 방식』, 3.(2).

[그림 I-2] 한·ASEAN FTA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위한 품목분류



주: 위의 그림은 ASEAN 선발 6개국과 우리나라에 적용되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 대해서는 다소 완화된 기준이 적용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2, p.47.

〈표 I-16〉 일반품목군에 대한 한·ASEAN FTA의 관세 철폐 이행

| | 한국 | ASEAN 6 | 베트남 |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
| 발효 | 70% 이상 관세 철폐 | - | - | - |
| 2007 | - | 최소 50% 품목에 대해 관세 0~5%로 감축 | - | - |
| 2008 | 95% 관세 철폐 | - | - | - |
| 2009 | | 최소 90% 관세 철폐 | - | - |
| 2010 | 관세 철폐 완료 | 최소 95% 관세 철폐 | - | - |
| 2012 | - | 일반 품목군 관세 철폐 완료 (태국제외) | - | - |
| 2013 | - | - | 최소 50% 품목에 대해 관세 0~5%로 감축 | - |
| 2015 | - | - | 최소 90% 관세 철폐 | 최소 50% 품목에 대해 관세 0~5%로 감축 |
| 2016 | - | - | 최소 95% 관세 철폐 | - |
| 2017 | - | 일반 품목군 관세 철폐 완료 (태국) | - | 최소 90% 관세 철폐 |
| 2018 | - | - | 관세 철폐 완료 | 최소 95% 관세 철폐 |
| 2020 | - | - | - | 관세 철폐 완료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정으로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쉬워진다」, 2015, p.8.

- 이후 2012년 8월 협상을 시작한 한·베트남 FTA가 2015년 5월 정식 서명됨으로써 양국 간 경제협력 관계를 한층 더 확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마련됨
 - 한·베트남 FTA는 개방 수준이 비교적 낮은 한·ASEAN FTA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었음

- 베트남은 30대 이하 젊은 층이 전체 9천만 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소비 잠재력이 높은 내수시장으로 한·베트남 FTA는 베트남의 내수시장 공략에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¹⁷⁾

- 한·베트남 FTA는 상품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환경 개선 등 개방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성격의 자유무역협정임¹⁸⁾

17) 한국무역협회, 『한·베트남 무역·투자 동향과 FTA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2014, p.8.

- 특히, 베트남은 최근 신규 고속도로, 고속철도, 항만건설 공사 및 대형 택지 개발 등 정부 주도의 도시 인프라 및 건설 산업이 활발하여 FTA를 통한 우리 기업들의 관련 분야 진출 확대가 기대됨¹⁹⁾

〈표 I -17〉 한·베트남 FTA 추진 경과

| 일자 | 추진 경과 |
|--------------------|---|
| 2008. 12. 9 | 양국 간 FTA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
| 2010. 6 - 2011. 11 | 한·베트남 FTA 민간공동연구회의 개최(총 6회) 및 공동연구보고서 채택(11. 8) |
| 2012. 4. 20 | 한·베트남 FTA 공청회 |
| 2012. 8. 6 | 한·베트남 FTA 협상 공식 개시 선언(하노이) |
| 2012. 9 - 2014. 12 | 한·베트남 FTA 제1~9차 협상 개최 |
| 2014. 12. 10 | 한·베트남 FTA 타결 선언 |
| 2015. 5. 5 | 한·베트남 FTA 정식서명 |
| 2015. 12. 20 | 한·베트남 FTA 발효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한·베트남 FTA 개요』

<http://fta.go.kr/main/situation/kfta/lov3/vn/1/2/>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검색일자: 2015. 11. 23.

- 한·베트남 FTA는 한·ASEAN FTA 상품 양허를 토대로 추가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한국은 수입액 기준 94.7%(+3.0%p), 베트남은 92.4%(+6.1%p)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함²⁰⁾
-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액 상위 20개 품목(HS 6단위 기준)중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제품 등의 추가 관세 인하가 이루어질 예정임
- 주요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액 상위 20개 품목(HS 6단위 기준)이 모두 한·ASEAN FTA의 일반품목군(normal track)으로 2012년 관세 철폐가 완료됨에 따라 한·베트남 FTA에 따른 추가적인 시장 개방은 없음²¹⁾

18) 한국무역협회(2014), p.8.

19) 한국무역협회(2014), p.8.

20)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http://www.kita.net/global_hcm/bizinfo/economy/view.jsp?n_index=1713981&n_boardidx=117000,117001,126005,120010&count=y, 2015, 검색일자: 2015. 12. 4.

21)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2015)

- 관세 양허로 인한 대표적 수출 유망 품목은 자동차 부품, 섬유·신발, 생활가전을 포함한 전자기기 및 기계류 등으로 본 품목에 대하여 대(對)베트남 수출 증대가 특히 기대됨²²⁾
- 한·베트남 FTA는 관세 철폐와 함께 상품양허에 핵심적인 요소인 품목별 원산지기준 (PSR, Product Specific Rule of Origin)도 대폭 개선됨²³⁾
 - 대부분의 품목에서 공통기준을 적용했던 기존 한·ASEAN FTA와 달리 전체 품목에 대하여 개별 기준을 두어 품목별로 우리의 이익을 반영함
- 농수산물 중 수출 유망품목과 기계류에 대하여 원산지기준이 각각 완화되면서 원산지 기준 충족이 용이해졌고, 섬유류는 공정기준이 삭제됨으로써 원산지 증명방식이 간소화되었음²⁴⁾
- 또한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을 기존의 2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와 같은 소액 수출업자들의 FTA 활용도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²⁵⁾
- 베트남이 협상국으로 참여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Economic Partnership)이 2015년 10월 5일 최종 타결됨에 따라 한·베트남 FTA의 조기 발효를 통한 선점효과를 누릴 필요가 있음
 - 베트남의 의류 수출은 지난 3년간 연평균 18.3% 증가하였으며, 의류수출의 68.0%가 미국, 일본 등 TPP 역내국에 집중되어 있어 TPP 발효 시 관세 철폐로 인한 수출 확대가 크게 기대됨²⁶⁾

22)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 p.22.

23)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5), p.17.

24)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2015), p.18.

25)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 p.20.

26)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수입규제 포털, 『베트남, TPP로 글로벌 섬유·의류 공급망 중심 된다』, http://ntb.kita.net/intro/weekly_fta_view.screen?menuid=ntb010301&seq=285&tab_seq=6&fix_

○ 따라서, 베트남의 섬유·의류 산업은 TPP의 대표적인 수혜 산업으로 꼽히며, 베트남 정부는 TPP 발효 시 2020년까지 220억달러의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²⁷⁾

□ 베트남은 현재 진행 중인 EU와의 FTA 협상도 빠른 시일 내에 타결될 것으로 예상됨

〈표 I-18〉 베트남 주요 FTA 비교

| 구분 | 한·ASEAN FTA | 베트남·일본 EPA | 한·베트남 FTA | |
|-------|---------------------------|----------------------------|-----------------|--|
| 추진 현황 | 2007. 6. 1 발효 (이행 9년차) | 2009. 10. 1 발효 (이행 7년차) | 2015. 12. 20 발효 | |
| 상품 개방 | 한국/일본 | 91.7% | 96.5% | 94.7%(+3.0%p) |
| | 베트남 | 86.3% | 90.1% | 92.4%(+6.1%p) |
| | 기준세율 | 2005년 MFN세율 | 2007년 MFN세율 | ① 2012년 MFN 세율 또는 한·ASEAN FTA 세율 중 낮은 세율 ② 2015년 한·ASEAN FTA 세율 |

주: 1. 상품개방 수준은 수입액 기준

2. 한·베트남 FTA의 기준세율은 ①의 경우 한·베트남 FTA 추가 양허 품목, ②의 경우 기존의 한·ASEAN FTA 양허를 따르는 품목에 해당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 p.8.

yn=Np, 2015, 검색일자: 2015. 11. 23.

27) 한국무역협회(2015)

II. 외국의 통상환경 보고서

- 세계은행(The World Bank)에서 매년 발행하는 『Doing Business』는 무역분야를 포함하여 각 국가의 부문별 조사를 토대로 사업의 용이성을 평가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서 발행하는 『NTE 보고서』는 주요국의 무역장벽에 대하여 작성하는 신뢰성 있는 보고서로서, 본 장은 이 두 보고서를 바탕으로 기술되었음

1. The World Bank의 『Doing Business 2015』

- 세계은행(The World Bank)은 2004년부터 매년 ‘사업하기 좋은 나라(Ease of doing business)’ 순위를 다양한 부문에 걸쳐 조사하여 『Doing Business』라는 보고서 명으로 발표하고 있음
 - 2015년에 발간된 당해 보고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189개국에 대하여 부문별로 조사·평가한 내용을 수록함
 - 『Doing Business 2015』 보고서상 순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조사된 분야는 사업 개시(Starting a business), 건설 허가(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전력 공급(Getting electricity), 재산권 등록(Registering property), 세금 납부(Paying taxes), 무역(Trading across borders), 신용 취득(Getting Credit), 투자자 보호(Protecting minority investors), 계약 이행(Enforcing contracts), 파산 해결(Resolving insolvency), 노동시장 규제(Labor market regulation) 등 11개의 지표임
- 『Doing Business 2015』에서 베트남은 전반적인 ‘사업의 용이성’분야에 있어 전체 조사국인 189개국 중 78위에 올랐으며, 부문별 주요 지표 중 무역분야(Trading Across Borders)에서는 전년도보다 10순위 하락한 75위를 기록함

- 베트남은 중국을 제외한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다른 ASEAN 비교국가들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함
 -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적인 ‘사업의 용이성(Ease of Doing Business)’분야 순위에서는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으며, 우리나라는 5위에 올랐음
- 당해 보고서의 무역분야 순위는 수출입에 필요한 서류의 개수와 수출입 소요 일수 및 소요 비용 등을 산출하여 순위를 정하고 있으며, 필요서류가 적고 수출입 소요 기일이 짧을 수록 더욱 높은 순위에 오르는 형식임
- 무역분야에서 우리나라는 2014년 보고서에 이어 2015년에도 3위를 기록하며 상위권을 유지하였음

〈표 II-1〉 『Doing Business 2015』상 베트남의 무역분야 순위 비교

| 구분 | 베트남 | 인도네시아 | 중국 | 태국 | 필리핀 | 한국 |
|---------------------|-----|-------|-----|-----|-----|-----|
| 수출필요서류(개수) | 5 | 4 | 8 | 5 | 6 | 3 |
| 수출소요시간(일) | 21 | 17 | 21 | 14 | 15 | 8 |
| 수출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 610 | 572 | 823 | 595 | 755 | 670 |
| 수입필요서류(개수) | 8 | 8 | 5 | 5 | 7 | 3 |
| 수입소요시간(일) | 21 | 26 | 24 | 13 | 15 | 7 |
| 수입소요비용 (달러/컨테이너) | 600 | 647 | 800 | 760 | 915 | 695 |
| 무역분야 순위 | 75 | 62 | 98 | 36 | 65 | 3 |

출처: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4, pp.167-230의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베트남에서의 해상 수출 비용은 컨테이너당²⁸⁾ 약 61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수출에 필요한 서류는 5가지이고, 서류 준비를 비롯하여 수출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 등 수출에 총 2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28) 20피트 컨테이너(TEU) 만재 화물 기준이며, 위험물 또는 군수품 등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금액을 산정함

- 해상 수입에 있어서는 컨테이너당 약 600달러의 금액이 소요되며,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8가지이고, 서류 준비를 포함한 수입통관 및 국내 운송, 항만 업무를 포함하여 총 21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II-2〉 베트남 수출입 소요 기간 및 비용

(단위: 일, 달러)

| 구 분 | 수출 | | 수입 | |
|---------|------|-----|------|-----|
| | 소요기간 | 비용 | 소요기간 | 비용 |
| 서류준비 | 12 | 160 | 12 | 130 |
| 세관통관 | 4 | 100 | 4 | 95 |
| 항만(터미널) | 3 | 150 | 4 | 175 |
| 내륙운송 | 2 | 200 | 1 | 200 |
| 합 계 | 21 | 610 | 21 | 600 |

출처: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4, p.228.

- 베트남과의 수출입에 필요한 기본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수출입신고서, 포장명세서, 기술표준/검역증명서 등임
- 이외에 화물보관해제주문서, 검수보고서,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 등이 있음

〈표 II-3〉 베트남 수출입 시 구비서류

| 수출 시 구비 서류 | 수입 시 구비 서류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ll of Lading(선하증권)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Customs Export Declaration(수출신고서)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기술표준/검역증명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ll of Lading(선하증권) - Cargo Release Order(화물보관해제주문서) -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 Customs Import Declaration(수입신고서) - Inspection Report(검수보고서)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Technical Standard/Health Certificate (기술표준/검역증명서) - Terminal Handling Receipts (터미널 화물처리 영수증) |

출처: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Vietnam*, 2014, p.67.

2. 미국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NTE 보고서)

-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는 1974년 통상법(Trade Act of 1974) 제181조에 근거하여 미국 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가 작성, 매년 3월 말 의회에 제출하는 연례 보고서임
 - 이 보고서는 미국 업계의 의견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의 보고서와 관련 정부 부처의 의견 등을 기초로 작성됨
 - 2015년 보고서는 미국의 62개 주요 교역국 및 경제권의 무역과 투자 장벽에 대해 포괄적으로 기술하고 있음²⁹⁾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15년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의 베트남 부분에서 베트남의 관세(Tariffs) ·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보호 및 서비스 장벽 등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음

- 미국의 44번째로 큰 수출 상대국인 베트남은, 2014년 미국과의 교역에 있어 249억달러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이 흑자액은 전년 대비 52억달러 증가한 수치임
 - 2014년 미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전년 대비 13.7% 증가한 약 57억달러였으며, 대(對)베트남 수입액은 306억달러로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수치임
 - 미국의 대(對)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FDI)액은 2013년 14억달러로 2012년 11억달러보다 소폭 증가하였음

- 2009년 베트남과 미국은 베트남 WTO 가입 공약의 감시와 실행, 양측의 무역 이슈 사항에 대한 논의, 무역 및 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무역 및 투자 기본협정(TIFA, Trade and Investment Framework Agreement)을 체결함
 - 2008년 6월, 양국은 양자 간 투자 조약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을 위한

29) 2010년부터 동식물 위생 및 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및 무역에 대한 기술 장벽(TBT, Technical Barriers to Trade) 관련 사안은 NTE 보고서와 별도로 발표하고 있음

협상을 시작하였으며, 2009년 2회의 협상이 진행되었음

- 2009년과 2010년에는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통상 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 2009년 12월 미국은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TT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위한 협상 시작 의지를 표명하였음

- 이 협정으로 미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걸친 경제 통합(economic integration)의 잠재적 발판을 마련하고, 급속도로 성장하는 경제권과의 교류를 통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며, 수출 확대가 이루어질 것임
- 미국의 수출 확대는 궁극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며, 범아시아적 경제통합을 위한 토대가 될 것임
- 현재 TPP에는 미국과 베트남을 포함, 호주,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그리고 싱가포르가 협상중임

가. 수입 관세정책(Import policies)

- 베트남은 2007년 1월 WTO에 가입하면서 관세율 인하에 합의하였으며, 미국이 수출하는 주요 제품에 대하여도 관세를 인하하였음

- 최근 베트남은 WTO의 권고수준 이내에서 여러 품목에 대한 실행관세율을 높임
 - 인상된 실행관세율의 적용받는 제품으로는 과당, 포도당과 같은 감미료, 견과류, 토마토소스류, 잉크젯 프린터, 소다회, 스테인리스 철근 및 철선 제품 등이 있으며, 이러한 제품들 대부분은 현지기업들에 의해 생산되는 제품군들임

나. 비관세 장벽(NTBs, Non-Tariff Barriers)

- 베트남은 2001년의 미국·베트남 간 양자무역협정(BTA, Bilateral Trade Agreement) 및 2007년 WTO 가입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상당 부분 제거하였음

- 그 결과 상당수의 수입 제한이 없어졌으며, 쿼터·금지·허가·사전 승인 요구 등 기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는, WTO 약정과 불일치하는 제한들을 제거함

1) 수입금지

- 베트남은 부도덕적(depraved)이거나 반동을 상징하는(reactionary) 문화상품, 특정 어린이 장난감, 중고 소비제품, 중고 자동차 부품, 30마력 이하의 중고 내연기관, 암호화 장비 및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하고 있음
 - 소금, 담배, 달걀, 설탕에 대해서는 관세율 할당(tariff-rate quota) 체제하에 수입수량 제한 및 수입허가를 요하고 있음
- 2012년 9월 베트남 총리는 “재수출과 환적무역을 위한 특정 수입”에 관한 시행지침(Directive) 23을 도입함
 - 시행지침(Directive) 23은 환경파괴의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품들의 수입을 금지함
- 2014년 1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는 시행지침(Directive) 23하에 재수출을 위한 영구·일시적 수입 금지대상 품목을 열거한 시행세칙(Circular) 05/2014를 도입함
 - 시행세칙(Circular) 05/2014에서 정한 관리 품목에는 화학물질, 플라스틱 및 플라스틱 폐기물, 특정 유형의 기계류와 장비들이 포함되어 있음

2) 수입제한

- 2012년 8월 7일부터 도입된 시행세칙(Circular) 23에 의하여 수입 철강제품은 허가(licensing)를 받도록 요구되어 왔으나, 2014년 6월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의 시행세칙(Circular) 17은 이러한 요구 사항을 폐지함
- 2014년 11월 26일 베트남 정보통신부(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는 휴대전화, 무선 송·수신기의 수입과 관련된 시행법령(Decree) 187/2013/ND-CP의 시행세칙(Circular) 18/2-14/TT-BTTTT을 도입함

- 시행세칙(Circular) 18/2-14/TT-BTTTT는 무선통신기기 수입업자들이 상업송장, 계약서, 수입허가신청서, 증빙서류 등을 포함한 수입허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에 제출할 것을 명시함

□ 2013년 1월부터 “와인 생산과 와인 거래”에 관한 시행법령(Decree) 94가 시행됨

- 시행법령(Decree) 94는 주류의 공급, 도매 및 소매 등 세 가지 유형의 행위에 대한 허가제를 확립함

□ 베트남 국회(National Assembly)는 2012년 정가제(The Price Law)를 공포하였으며, 2013년 1월부터 발효되었음

- 이 법률에 의거하여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가 관리하는 품목에는 석유제품, 전기, 액화석유가스, 질소비료, 살충제, 동물용 백신, 소금, 6세 이하 어린이용 유제품, 설탕, 쌀, 기초 의약품이 포함되어 있음

□ 베트남은 2006년 관세법과 관련 실행 규정에 따라 WTO 관세평가협정(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을 시행하였으나, 미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되는 가금류의 수입업자들은 적용되는 준거가격(reference price)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

- 미국 수출업자들은 이외에도 통관절차, 부정확한 HS코드분류 등 비효율적인 통관 환경에 대해서도 우려를 포함
- 미국은 WTO 관세평가협정 이행에 대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베트남 정부와 논의해 나갈 예정임

□ 2014년 6월 23일 베트남은 기존의 관세법을 대체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 관세법을 공포함

- 베트남 신관세법은 통관단일창구시스템(National Single Window)의 법적인 토대를 제공하고 관세행정의 전산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변화를 포

함하고 있음

- 베트남에서 기업들은 담배, 원유, 신문, 정기간행물과 음향 또는 영상 기록매체 등 국영무역기업을 통해 수입되어야 하는 일부 제한된 품목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을 수입할 수 있음

Ⅲ. 베트남의 통관환경

1. 통관 행정 개요

가. 통관 행정기관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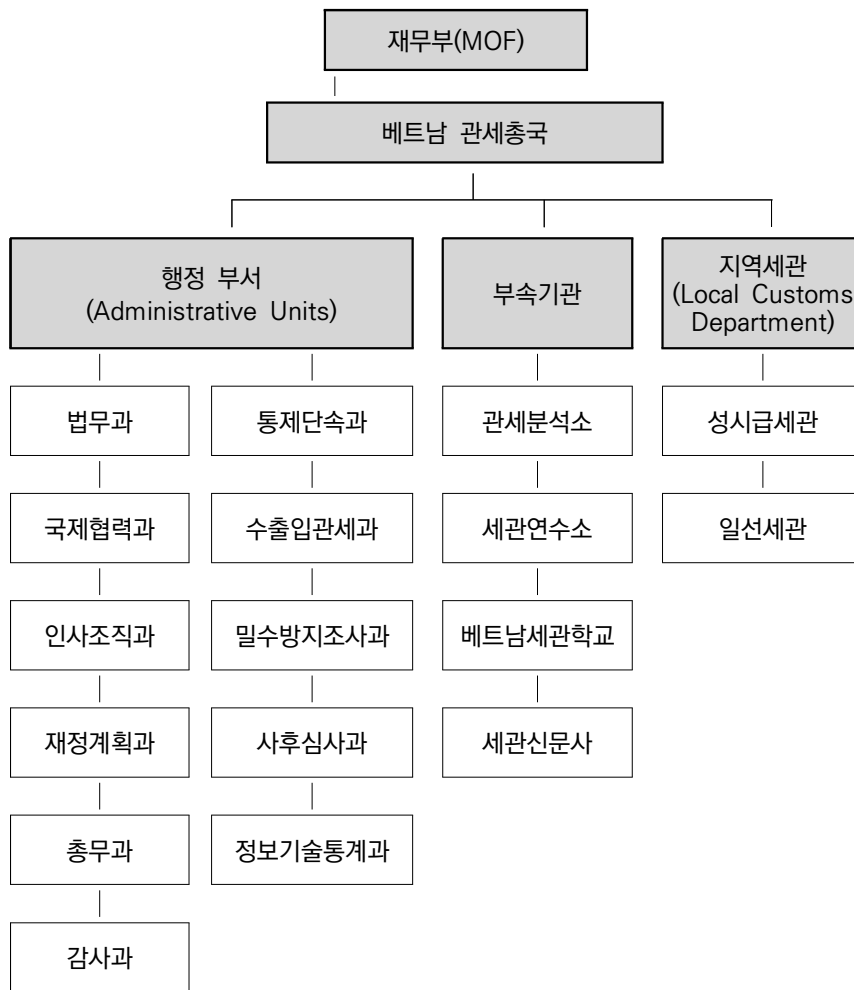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관세청과 유사한 베트남의 정부기관은 1945년 9월 10일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산하 관세소비세국으로 출발, 현재 재무부 산하 관세총국(General Department of Vietnam Customs)으로 발전하였음
- 관세총국의 기능과 임무는 통관 절차의 수행, 수출입화물의 검사·감독, 관세법규에 따른 세관 관련 업무의 집행과 수출입 관세 및 정부에서 위임받은 기타 세금의 징수, 밀수에 대한 조사, 통제 및 단속 등임
- 베트남 관세총국의 조직은 본청(해관³¹⁾총국), 성급세관(해관국), 지역세관(해관지국), 국경감시소·세관출장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 전체 63개 직할시 및 성 가운데 31개 직할시 및 성에 해관국(지방관세국)이 있고, 본청의 사후심사국 및 밀수단속국 2개국은 전국 국경세관과 도시에 직할 조직을 두고 있음. 이를 포함하여 통상 33개의 지방 관세조직이 있음
 - 각 지방 해관국은 각 지방 인민위원회 소속기관이면서도 중앙의 재무부와 본청의 강한 지휘통제를 받고 있음

3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p.29-31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31) 베트남에서는 '세관'을 '해관'이라는 용어로 사용함

- 국경감시소·세관출장소는 현재 185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세관집행기구는 성급·지방·시급 세관의 산하기구로서 이들 세관의 업무를 보좌하는 것임

[그림 Ⅲ-1] 베트남 관세행정 조직도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1, p.30.

- 베트남에서는 지방관세 조직이 각 직할시 및 성(省)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 관세법령과 중앙정부 재무부, 관세총국의 지휘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음에도, 각 건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각 관세국마다 상이한 경우가 많음

- 베트남의 세관은 한국처럼 중앙 통제하에 운용되고 있기는 하나, 세부 시행령에 따른 업무 처리는 한국처럼 일사분란하지 않음
 - 세관 직원 역시 성 세관별 자율 선발 체계이며, 세관원의 권한이 막강한 편임
 - 이에 따른 업무 처리의 일관성 저하, 신속한 서비스 및 전문성 개선 애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옴
- 베트남 재무부는 통관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매년 한국 수출입 업계의 애로 사항을 수렴하여 답변하여 주는 ‘국세 및 관세 대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음
- 한국 기업의 수출활동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우리 기업이 이러한 통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임

나. 베트남 신(新)관세법

- 베트남 관세청은 지난 2014년 6월 베트남 관세법을 전면 개정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베트남 신(新)관세법을 시행중에 있음
- 베트남의 기존 관세법은 2001년도에 전면 개정되었고, 2007년 베트남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앞두고 2005년 부분 개정되어 9년 동안 시행되어 왔음
- 신관세법의 구성은 제1장 일반규정, 제2장 관세청의 임무, 조직, 제3장 통관절차, 검사제도 및 세관감시, 제4장 수출·수입물품에 대한 국세 및 기타 각종 수익금 납부, 제5장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 제6장 관세정보와 수출입물품 통계, 제7장 관세에 대한 국가관리, 마지막으로 제8장 시행 조항에 대한 수정 및 보충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됨
- 신관세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세행정 현대화 및 전산화, 위험관리 도입, 원산지업무 신규 수행, 밀수 단속 강화, 성실무역업체(AEO) 제도 도입, 국내 및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국가와의 통관단일창구시스템(싱글윈도) 기반 구축 등이 있음

- 한국 관세청과 베트남 주호치민한국총영사관은 베트남 신(新) 관세법을 우리말로 번역하여 「베트남 관세법 2014」 책자를 국내외에 배포함
 - 「베트남 관세법 2014」은 본서의 〈부록 Ⅲ. 베트남 관세청법〉에 수록되어 있음
 - 또한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패밀리 사이트인 ‘해외통관지원센터’에서 내려받는 것이 가능함

2. 수출입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가. 수입 관세

- 베트남은 1999년 1월 1일부터 자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수입관세율을 일반관세율, 우대관세율 그리고 특혜관세율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함
- 일반관세율(Normal tariffs)은 베트남과 정상무역관계(NTR)를 체결하지 못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우대관세율 및 특혜관세율을 적용하는 163개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들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세율임
- 우대관세율(Preferential tariffs)은 베트남과 MFN 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율로 미국, EU 및 일본 등 총 163개국에 적용되며, 이는 특혜관세율 적용 국가도 포함된 수치임
- 특혜관세율(Special preferential tariffs)은 베트남과 특혜관세협정을 맺은 국가들 또는 베트남 상품에 특혜관세율 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 적용하는 관세율로 대표적인 것이 한국,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에게 적용되는 관세율임
 - 한국: 한국의 경우 수출 시 한·ASEAN FTA(AKFTA, ASEAN Korea FTA)관세율을 적용받았으나,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어 수출업자는 두 FTA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게 됨

- 중국: 중·ASEAN FTA (ACFTA, ASEAN China FTA)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며 현재 까지 9,5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음. 일부 품목의 경우 ACFTA의 관세율이 일반관세율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는 일반관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 아세안 회원국: 베트남은 AFTA(ASEAN Free Trade Area)의 가입국으로 CEPT(The Common Effective Preferential Tariff Scheme)의 적용을 받으며, 2006년 말까지 베트남 관세율표상에 명기된 품목 중 약 97%의 품목에 대해 0~5%의 관세율을 적용함. 현행 베트남 특혜 관세 중 가장 관세율이 낮고, 적용범위가 포괄적임
- 베트남의 관세장벽은 2007년 150번째로 WTO 가입 후 한국, 일본, 중국, 호주 등과의 ASEAN FTA, 그리고 일본 및 한국 등과의 양자 FTA 체결을 계기로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임
- WTO 가입 전인 2000년도에는 MFN 평균관세율이 16.2%였으나, 2012년도에는 11.36%(베트남 통계청), 2013년도에는 9.5%(UNESCAP 분석)로 낮아졌으며, EU와의 FTA 협상 등이 추가적으로 완료될 경우 베트남의 평균관세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Ⅲ-1〉 WTO 가입 전·후 베트남 평균 수입관세율

(단위: %)

| 분야 | 베트남 평균 수입 관세율 | |
|-----|---------------|----------|
| | WTO 가입 전 | WTO 가입 후 |
| 농산물 | 23.5 | 21.0 |
| 공산품 | 16.6 | 1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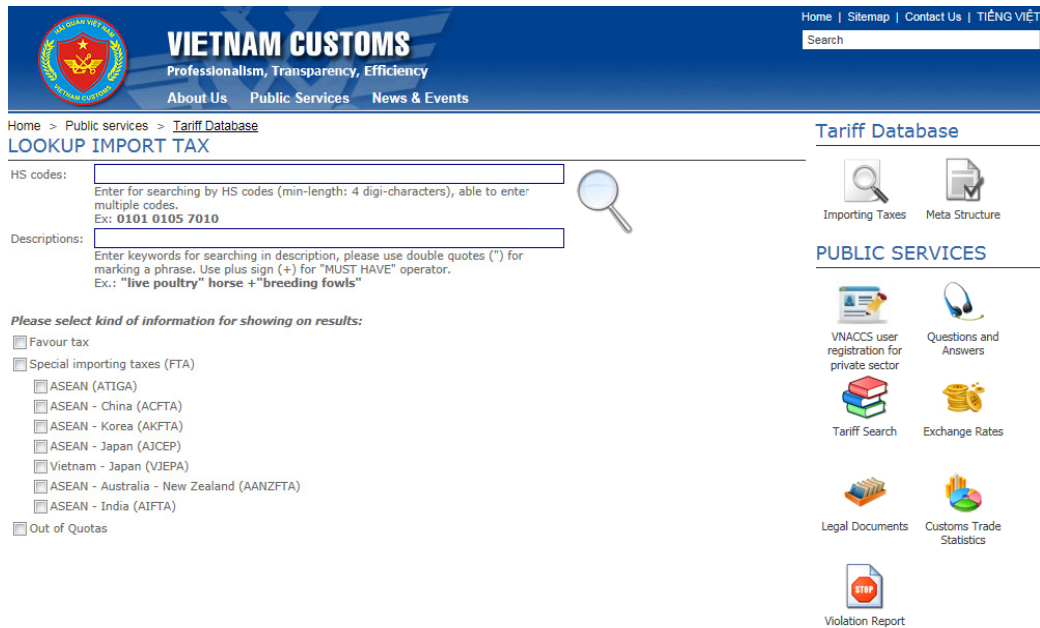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6.

- 베트남의 관세율은 재무부 산하 관세청국에서 발행한 관세율표에 HS Code별로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국제공통 HS Code 6자리에 4자리를 추가하여 10자리의 HS Number를 사용해 왔으나, 2012년 HS 개정 이후 현재는 8자리의 HS Code가 사용되고 있음³²⁾
- 베트남 관세청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v.vn>에서 영어로 변환 후 Tariff

Search를 통해 관세율의 검색이 가능함

- 한국의 FTA중합지원센터 웹페이지 <http://okfta.kita.net/>를 통해서도 관세율의 직접검색이 가능함

[그림 Ⅲ-2] 베트남 관세청 관세율 검색창 화면



출처: 베트남 관세청 관세율 검색포털,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Search.aspx?language=en-US>, 검색일자: 2015. 11. 23.

나. 특별소비세(SCT, Special Consumption Tax)

- 특정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수입에 대하여 관세와는 별도로 수입업체 또는 생산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세율은 보통 10~80%이며 일반적으로 수입상품의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가격을 기초로 산정됨

- 운임보험료포함조건(CIF)이란 선적항에서 본선에 물품의 선적을 완료할 때까지의

3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7.

제비용(C)인 FOB가격에 목적항까지의 해상보험료(I, marine insurance premium) 및 해상운임(F, ocean freight)비용을 가산한 조건입³³⁾

〈표 Ⅲ-2〉 특별소비세 대상 주요 품목 예시

(단위: %)

| 제품/서비스 | | 세율 |
|-------------------------------------|----------------------------------|-------|
| 담배(컬러/업컬러)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65 |
| |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70 |
| |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 | 75 |
| 주류/와인 | 201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25~50 |
| |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30~55 |
| |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30~60 |
| |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 | 35~65 |
| 맥주 | | 50 |
| 24인승 이하 자동차 | | 10~60 |
| 실린더 용량 125cm ³ 초과인 모터사이클 | | 20 |
| 휘발유 | | 10 |
| 에어컨 | | 10 |
| 게임용 카드 | | 40 |
| 부적(votive paper) | | 70 |

출처: PWC, *Vietnam Pocket Tax Book 2015*, 2015, p.20.

-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은 담배, 주류, 맥주, 24인승 이하 자동차, 모터사이클, 항공기, 선박, 휘발유, 에어컨, 게임용 카드, 부적 등이며, 디스코텍, 마사지, 가라오케, 카지노, 복권, 골프클럽 및 사행성 유흥 서비스 분야 등에도 특별소비세가 부과됨
- 인도주의적 성격의 기증품, 구호물품, 자선용 물품 및 정부기관 등에 대한 기증품, 베트남을 경유해서 환적하는 물품, 베트남 통과 물품, 관세가 면제되는 재수출용 수입물품 및 재수입물품, 면세범위에 해당하는 여행자 휴대품, 비과세경제구역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³⁴⁾

33)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검색포털,
http://www.kita.net/dictionary/trade_dic.jsp, 검색일자: 2015. 12. 2.

3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45.

- 베트남 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2016년 1월 1일 발효예정) 초안에 따르면 24인승 이하의 수입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산정 방법이 변경되며, 이로 인해 적용세율이 인상되어 과세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 부가가치세는 기존의 매출세(Turnover tax)를 대신하여 적용되는 세금으로 0%, 5%, 10%의 3단계 과세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10%의 세율이 적용됨³⁵⁾
 - 0% 적용대상에는 일부 농산물, 베트남 내 생산이 불가능한 선박 및 항공기, 베트남에서 수출되는 물품 등이 해당됨³⁶⁾
 - 5% 적용대상에는 생수, 비료, 살충제, 의약품 및 의료기자재, 교육훈련장비, 종이, 유아용 완구, 아동용 서적, 식료품 및 농산물, 가축 사료, 기본 화학제품, 기계제어장치, 정제금속, 전산처리 기기, 운송·적재 및 적하 관련 기기, 기타 생필품 등이 해당됨³⁷⁾
- 부가가치세세액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결정됨
 - 부가가치세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CIF)] + 관세+ 기타 특별소비세] × 부가가치세율(5% 또는 10%)

라. 수출세

- 베트남은 일부 전략 광물자원 및 원부자재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는데, 이는 자국 내 자원의 무분별한 채취 방지 및 국내수급 조절을 위한 것임³⁸⁾

3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43.

36)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43.

37)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43.

38) 수출세 부과 규정은 시행세칙(Circular) No. 184/2010/TT-BTC에 명시되어 있음

- 수출세는 본선인도(FOB, Free On Board) 및 국경인도조건(DAF, Delivered At Frontier)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따라서 출발항에서의 판매가는 화물운송비와 보험료를 제외함
 - 본선인도조건(FOB)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하며,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함³⁹⁾
 - 국경인도조건(DAF)은 물품이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 전에 양하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는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 위에서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뜻함⁴⁰⁾

- 수출세가 부과되는 상품으로는 모래, 석회암, 대리석, 화강암, 광석, 원유, 목재 등 주로 광물 및 천연자원이 포함되며 0%에서 최고 40%의 수출세를 부과함
 - 구체적으로 코코넛 3%, 암석·석재류 17%, 철광석 40%, 동광석 30%, 천연고무라텍스 3%, 쇠가죽 10%, 원목 10% 철 및 기타 스크랩 15%의 수출세 부과⁴¹⁾

3. 관세 면세, 유예 및 환급제도

가. 관세 면세제도⁴²⁾

- 베트남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를 위한 공장설비용 기계류인 고정 자산'과 '투자기획부(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서 승인받은 수입계획에 따라 수입 하는 공장설비용 중고 기계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

39)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검색포털, http://www.kita.net/dictionary/trade_dic.jsp, 검색일자: 2015. 12. 2.

40)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검색포털, http://www.kita.net/dictionary/trade_dic.jsp, 검색일자: 2015. 12. 2.

41)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1. 무역장벽 보고서』, 2014, p.62.

4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41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하고 있음

- 면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투자기업은 베트남 투자기획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로부터 투자허가서 취득 후 60일 이내에 수입계획을 각 성의 투자기획부(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 신청해야 함
- 수입계획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업 공식 서한, 수입 재화의 목록(재화명, 수량 기술 사양 및 금액),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허가서 사본, 경제적·기술적 설명서 등임
 - 투자기획부(DPI)에 수입계획 신청 서류 접수 후 15일 이내에 수입 계획을 승인하며, 투자 기업은 당해 승인을 받은 후부터 허용된 기계류 및 장비를 수입할 수 있음
- 투자기획부(DPI)에서 수입계획 승인 이후 수입통관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음
 - 중고 설비·기계류 수입에 필요한 서류는 선하증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와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를 비롯하여 판매 계약서(Sales Contract), DPI 수입 계획 승인서, 수령 서류(Receipt docs form) 1과 2, 수입신고서(Import declaration form) 2부, 기업 및 제품설명서(Introduction letter)임
- 만일 수입되는 설비·기계류가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이면 부가가치세 또한 면제되었으나, 2009년 이후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프로젝트 화물의 경우 면세 리스트 승인을 받더라도 부가세를 반드시 납부해야 함
 - 일반적으로 기계류의 수입 부가세율은 10%임
- 투자용 공장 설비·기계류 이외에 전시회 및 박람회용 물품, 재수출용 일시 수입 물품, 재수입용 일시 수출 물품 등에 대하여도 관세 부과가 면제됨

나. 관세 유예제도

- 납부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수입 전에 먼저 세관으로부터 납부 유예 승인

을 받아야 함⁴³⁾

- 승인을 받은 수입물품은 275일간 관세가 유예되며, 추후 수출이 완료된 이후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유예 절차를 종료해야 함⁴⁴⁾

□ 또한, 베트남 수출입세법 제16~20조에 의해, 임가공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받은 원자재 등은 수입신고일로부터 275일간 관세가 일시 면제됨⁴⁵⁾

- 다만 조선, 기계·장비제조, 농수산물가공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을 각 관할세관을 통해 연장할 수 있음

□ 납부 유예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업체는 임가공 계약서, 수출품의 소요량 증명서, 투자기업 관할 세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무한계약서(Processing Contract), Receipt Docs Form(1,2), Import Declaration Form(2부), Introduction Letter, 수입신고 시 첨부서류(Bill of Lading, 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 Delivery Order)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⁴⁶⁾

다. 관세 환급제도

□ 수출용 원부자재에 대해 수입관세를 이미 납부한 경우, 수출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⁴⁷⁾

-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함⁴⁸⁾

4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1.

44)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31.

45)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30.

46)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31.

47)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31.

48)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31.

-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심사 기관은 환급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신청인에게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함⁴⁹⁾
- 관세 환급 시 구비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수입신고필증, 소요량 정산서, 대금결제 확인 서류 등이 요구됨⁵⁰⁾
- 환급 대상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부가가치세로 관세는 관세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해야 함⁵¹⁾

[그림 Ⅲ-3] 베트남의 관세 환급절차



출처: 주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http://vnm-hochimin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583&seqno=88608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자: 2015. 11. 24.

49)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31.

5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2.

51)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32.

4. 베트남의 통관 절차

가. 수입통관 절차⁵²⁾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입통관 절차는 ① 수입신고 → ② 세관 서류심사 → ③ 물품 검사 → ④ 관세 등의 납부 → ⑤ 물품 반출 순서로 이루어지며, 통관 절차는 통상적으로 5~7일 정도가 소요됨
- 수입자는 수입물품이 국경 관문에 도착하기 전 또는 국경 관문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함
 - 수입신고서는 신고일로부터 15일간 효력이 유지됨
- 수입자는 서류와 전산을 통한 수입신고가 모두 가능하며, 물품을 하역하는 항만의 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여야 함
 - 베트남의 전자통관시스템(E-Custom)의 실행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는 것이 무역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며, 베트남 재무부는 전국적으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검토하여 2020년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에 있음⁵³⁾
 - 베트남의 주요 3대 항만으로는 북부 하이퐁 항, 중부 다낭 항과 남부 호치민 항이 있음⁵⁴⁾
- 세관검사는 수입업자의 세관신고서와 수입 물품 서류의 일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적인 검사를 포함하며, 물품의 위험도를 기준으로 그린채널(Green Channel), 옐로우채널(Yellow Channel), 레드채널(Red Channel) 등 3가지로 분류하여 진행함

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42-46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5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1.

5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베트남-통관절차 및 운송』, p.3.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 검색일자: 2015. 12. 2.

- 그린채널(Green Channel): 저위험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 서류 검사 및 물품 검사를 면제함
- 옐로우채널(Yellow Channel): 수입된 재화가 면세 대상인 고정자산 성격의 기계 장치류 또는 관세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실제 검사가 면제되나, 세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 제출 및 물품 검사가 진행됨
- 레드채널(Red Channel): 고위험 물품에 대하여 세관 서류 검사와 더불어 수입 물품에 대한 실제 검사가 진행되며 검사 방식에 따라 다시 세 종류로 나뉨
 - 세 종류는 ① 전수 검사 대상, ② 무작위 10% 검사 대상(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 ③ 무작위 5% 검사 대상(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검사 종료, 위법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위법의 정도를 파악할 때까지 검사)임

〈표 Ⅲ-3〉 채널(Channel)별 필요 심사 절차(전산신고 시)

| 채널(Channel) 분류 | | 필요 심사 절차 |
|---------------------------|--------------------------------------|---|
| 그린채널(Green Channel) | | 전산신고만으로 신고 수리 가능 - 세관 서류 심사 및 물품 검사 면제 |
| 옐로우채널 (Yellow Channel) | 전자서류 옐로우채널 (E-Yellow Channel) | 전자서류(E-Document)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 | 종이서류 옐로우채널 (Paper-Yellow Channel) | 종이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함 |
| 레드채널(Red Channel) | | 종이서류 제출 및 세관의 물품 검사 |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1.

- 일반 통관의 경우 10% 샘플 검사를 하고 있으나, 통관 절차 위반 또는 관세법 위반 등의 전력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전수 조사를 시행함

-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흔적이 있거나, 제품의 불법적인 위조·복제가 있거나, 수입관리 정책을 위반한 경우 또는 관련 자료나 세관원의 수색 또는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확보된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통관 후 5년 이내에 세관검사를 다시 받아야 함

- 물품 검사는 보통 세관 통제구역인 부두·창고 등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로 운반되는 품목의 경우 세관원이 현장에 파견되어 검사를 실시함⁵⁵⁾
 - 강제적 검사·규격·인증을 받아야 수입·판매가 허용되는 물품은 베트남 정부에서 지정하는 검사소에서 샘플을 검사한 후 승인을 받은 이후에야 수입통관이 허용됨
 -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의료장비, 화학제품, 살충제, 비료, 화장품 등 건강과 직결된 품목의 경우 품질검사를 강제하고 있음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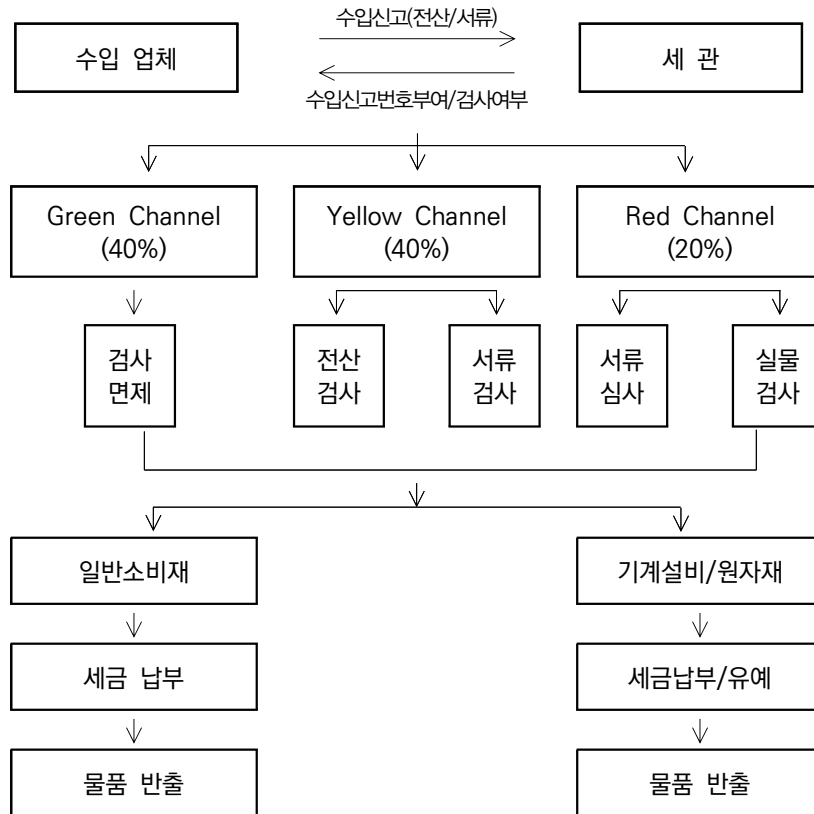
- 2009년 제조업체의 완제품 수입 허용 이후, 일부 제철, 제약 분야에서 수입 급증이 발생하여 중소 제조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베트남 정부는 2012년 5월 1일 수입물품 관리 체계 확립과 불법·요건미달 수입품의 국내 유통 근절을 위해 수입물품 검사 강화를 요지로 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함⁵⁷⁾

5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베트남-통관절차 및 운송』, p.1.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 검색일자: 2015. 12. 2.

5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78.

57)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22.

[그림 Ⅲ-4] 베트남의 수입통관 절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베트남 관세법령 및 FTA활용방법』,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sean/2/Vietnam2.pdf, 검색일자: 2015. 11. 24.

- 신고 시 수입신고서와 함께 선하증권 등 필요 서류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수입신고를 위해 기본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음
 -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Air Way Bill)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수입계약서(Sales Contract)
 - 필수 서류에 더하여, 해당 경우에 따라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한·ASEAN FTA협정세율 적용 희망 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

- 수입 허가 대상 물품인 경우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 허가증(I/L)
 - 수입 쿼터 대상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 증명서(Annual Import License)
 - 수입 품목에 따라 사전에 정부기관 등으로부터 허가 등을 득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허가서와 각종 증명서 등
- 통상적으로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수입 목적 등에 따라 면세 또는 환급 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투자 목적 공장설비용 기계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수출 재화 생산을 위해 수입하는 원자재에 대하여는 세금 납부를 일정 기간 유예 또는 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음
- 물품 반출 전 관세 납부 대상에는 재무부가 지정하는 소비재 및 설립 후 1년 미경과 업체, 관세 납부 유예기간 중 관세법을 위반한 업체, 관세법 위반으로 1년 내 국(局) 1회, 지국(支局)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이 해당됨
- 관세 납부 대상은 소비재가 아닌 물품으로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투자 목적의 공장 설비 또는 수출용 원재료, 은행의 납세보증이 있는 수입물품임
- 베트남 산업무역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따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를 받아야 함⁵⁸⁾
- 그 중 특히 육류나 수산물, 동식물 수입 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검역을 거친 후, 세관신고 시에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모두 함께 제출하여야 함

58) 자동수입허가 대상 품목은 시행세칙(Circular) No.17/2008/TT-BCT와 No.24/2010/TT-BCT에 HS 코드별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된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 특정 플라스틱 제품, 특정 도자 및 유리 제품, 철강 제품, 일부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음료 등임

나. 수출통관 절차

- 베트남의 일반적인 수출통관 절차는 ①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선적일정 확인 후, 선사 혹은 포워더에 선복 예약 → ② 수출신고 시 구비서류 준비 및 전자통관시스템(E-Custom)을 통한 수출신고서 작성·전송 또는 서면 수출신고서 제출 → ③ 세관의 수출신고 승인 → ④ 수출물품의 컨테이너 입고 후 적재 → ⑤ 컨테이너 야드(CY, Container Yard)로 컨테이너 이동 → ⑥ 세관 공무원의 선적 전 수출물품 검사 → ⑦ 수출신고필증 및 부킹노트(Booking Note)를 세관에 신고 → ⑧ 세관 승인 후 선적 → ⑨ 선적 후 세관의 최종 검사 → ⑩ 수출관세 대상 품목의 경우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 납부 → ⑪ 통관 종료⁵⁹⁾
- 수출자는 수출물품을 적하한 운송수단이 출경하기 8시간 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함⁶⁰⁾
 -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수출신고서도 수출신고일로부터 15일 동안 유효함
- 수출신고 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수출신고서, 수출계약서, 포장명세서, 수출허가서(필요 시)이며, 수출신고서를 출력하여 수출 항구에서 세관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⁶¹⁾
- 베트남에서는 자원유출의 방지, 국내 시장의 안정 그리고 국제시장에서의 자원 수요 증대에 대응을 위해 규조토, 주석, 대리석, 원유, 석탄 등 일부 자원의 수출에 있어서 수출관세를 부과함⁶²⁾
- 최근 건설부령 시행세칙(Circular) No. 04/2012/TT-BXD를 발표하고 동남·서남지역 광산에서 생산된 건축석재, 모래, 자갈, 장식, 점토 등 일부 건축자재에 대해서 수출을 금지하고 있음⁶³⁾

59)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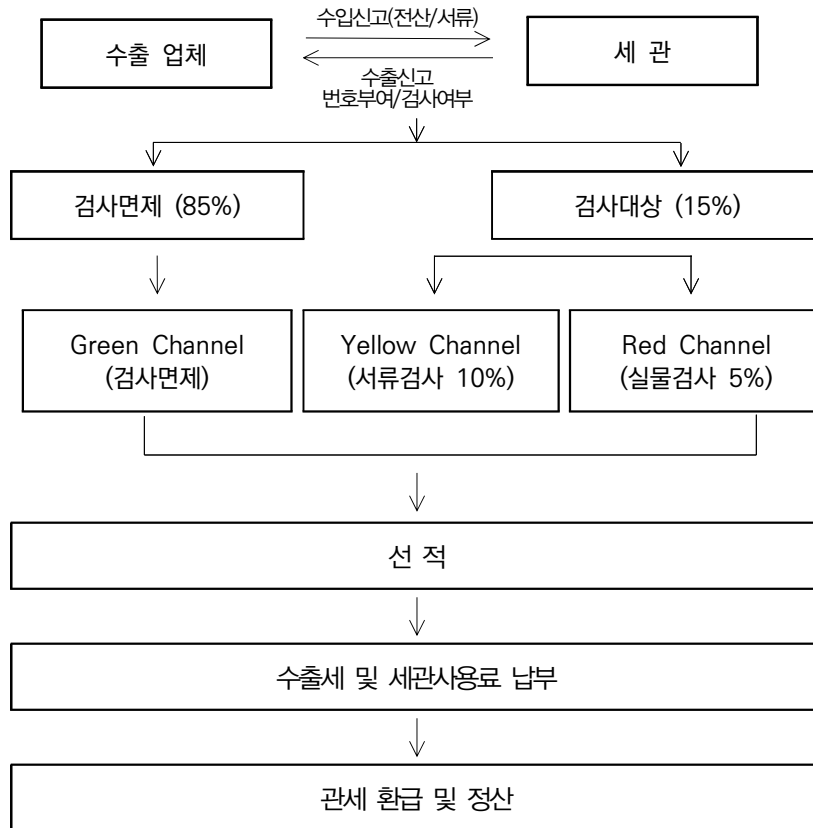
6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4.

61)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25.

62)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25.

63)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5.

[그림 Ⅲ-5] 베트남의 수출통관 절차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베트남 관세법령 및 FTA활용방법』,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sean/2/Vietnam2.pdf, 검색일자: 2015. 11. 24.

5. 수입규제

가. 수입제한 및 금지

1) 일반 수입규제 제도

- 베트남 정부는 최근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일련의 수입규제 조치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는 세원 확보와 관련성이 높음⁶⁴⁾
 - 화장품, 자동차, 휴대폰 등 베트남 정부가 규정한 사치품목의 수입통관 절차 강화 및 일시적 수입관세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함
- 베트남 정부는 수입허가 품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 및 기관들이 해당 수입허가 품목에 대하여 수입허가, 제품검사, 규격 인증 등을 결정함⁶⁵⁾
- 수입허가 대상품목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부처로부터 허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입허가를 받은 이후에는 금액 및 수량 제한 없이 수입이 가능함⁶⁶⁾

2) 수입쿼터 제도

-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쿼터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베트남 정부의 기본 무역정책 방향인 자유 무역 장려에도 불구하고, 석유 등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제품의 경우 수입쿼터를 통해 제한하거나 수입금지 등의 조치를 통해 수입을 조절하고 있음⁶⁷⁾

6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베트남-수입규제제도』, p.2.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 검색일자: 2015. 12. 4.

6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09.

66)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09.

67)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35.

-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선정되며,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됨⁶⁸⁾

〈표 Ⅲ-4〉 2014년도 수입쿼터 관리대상 품목

| HS코드 | 상품 | 쿼터 |
|------|--------|--------------|
| 0407 | 각종 달걀류 | 44,100 Dozen |
| 2401 | 담배 원료 | 44,100 Tons |
| 1701 | 설탕 | 77,000 Tons |
| 2501 | 소금 | 102,000 Tons |

출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 윈도우, 『베트남-수입규제제도』, p.1-2,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 검색일자: 2015. 11. 24.

3) 수입금지제도

- 베트남으로의 수입금지 품목은 무기류, 폭발물(공업용 제외), 군사장비, 독극물 및 마약류, 반동 문화품, 폭죽류, 담배류, 중고 제품(신발, 옷, 전자제품 등), 중고 부품, 우측 핸들 차량(단, 환경차량, 도로 시공 차량, 공항에서의 승객 이동 차량은 제외) 등임⁶⁹⁾
- 그 외에도 중고 2·3륜 오토바이, 중고 앰블런스, 중고 자전거, 중고 의료기계 등에 대하여 수입을 금지함

6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35.

6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p.35-36.

나. 수입허가제도

1) 자동수입허가(AIL, Automatic Import Licensing)제도⁷⁰⁾

- 자동수입허가(AIL)란 수입허가 신청을 자동적으로 승인하는 제도로서, 2010년부터 새롭게 도입한 시행세칙(Circular) No. 24/2010/TT-BCT에 의함
 - 수입업자로 하여금 특정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하역 전 자동수입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함

- 2010년 개정된 시행세칙에서는 개정 전 시행세칙에 비해 자동수입허가 대상이 크게 확대되어 비관세장벽으로 지목된 바 있음
 - 미국 무역부(USTR)가 발행한 2011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보고서)에는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출하는 미국 기업들의 자동수입허가(AIL) 취득관련 애로사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베트남이 이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서 WTO에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미국 측이 해당 조치를 WTO에 보고할 것을 베트남 정부에 요청하였고, 이후 항공운송의 경우 항공화물운송장(AWB) 원본 없이도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다소 개선됨

-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의 시행세칙⁷¹⁾에서 정하는 화장품, 의류·신발류, 특정 플라스틱 제품, 도자·유리 제품, 철강 제품, 기계 및 전자 제품, 차량, 가구류, 수산물, 각종 조제 식료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자동수입허가(AIL)를 받아야 함
 - 재수출용 일시 수입물품, 비상업적 물품, 면세점 판매용으로 수입되는 물품 등은 자동수입허가(AIL) 적용이 배제됨

7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p.86, 95-96내용을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71) 시행세칙(Circular) No.24/2010/TT-BCT

- 자동수입허가(AIL) 신청은 품목별로 하여야 하고, 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신청은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수입 계약서, 상업송장, 대금 송금 관련 서류 및 선하증권 등 필요 서류를 산업무역부에 우편으로 송부하여 신청이 이루어짐
 - 필요 서류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 대금결제 관련 서류 등 다음과 같은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자동수입허가(AIL) 신청서⁷²⁾ 2부
 - 사업등록증명서(the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 투자허가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1부
 - 수입계약서 및 이에 상응하는 서류 1부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1부
 - 신용장(L/C) 또는 대금 결제 관련 서류, 은행을 통한 송금 증명서 원본 1부
 - 선하증권(Bill of Lading) 1부

72) 시행세칙(Circular) No.24/2010/TT-BCT의 부록(Appendix) 02

[그림 Ⅲ-6] 베트남의 자동수입허가(AIL) 신청서 예시

Appendix 02

A WRITTEN APPLICATION FOR AUTOMATIC IMPORT REGISTRATION
(Issued in conjunction with the Industry and Trade Ministry's Circular No. 24/2010/TT-BCT of May 28, 2010 stipulating the application of automatic import licensing for a number of commodity items)

NAME OF TRADER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ndependence - Freedom Happiness
 No., dated.....
 on Registration of import according to
 automatic import licensing

To: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Name of trader:.....
- Address:.....
- Tel.....Fax.....
- Registration of business No.....

Propose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to certify the import registration according to automatic import licensing as stipulated in the Industry and Trade Ministry's Circular No. 24/2010/TT-BCT of May 28, 2010, details of the goods consignment shall be as follows:

| No. | Name of goods | HS code (10 digitals) | Exporting country | Quantity or volume | Value (USD) |
|-----|---------------|--------------------------|----------------------|-----------------------|----------------|
| 1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 | ... | ... |

Import contract No.:... dated.....
 Commercial invoice No.:...dated.....
 Bill of lading or transportation document No.:...dated.....
 Payment document No.: ...dated..... or L/C at sight No.: ...dated.....
 Total quantity/volume:.....
 Total value (USD):.....
(being converted into USD in case payment is made in other currencies)
 Import border-gate:.....
(If being imported from non-tariff areas, please specify clearly)
 Estimated time-limit for conducting import procedure:
(Specifying that estimated from the date.....to the date.....)

Have registered at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in Hanoi (or Ho Chi Minh City)
 Dated.....
 Registration is valid for 30 days as from the date on which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certifies

Representative-at-law of the Trader
 (specifying position, signing and affixing seal)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97.

- 수입자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에 품목별로 자동수입허가(AIL)신청서와 기타 서류들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함
- 산업무역부에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자동수입허가(AIL)가 발급되며, 발급된 자동수입허가(AIL)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효력을 가짐
 - 유효하지 아니한 서류의 제출 시 산업무역부는 신청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함
 - 발급된 자동수입허가(AIL)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필요 서류 및 사유서 제출을 통해 수정 또는 재발급이 가능함

〈표 Ⅲ-5〉 자동수입허가(AIL) 대상 주요 품목 예시

| 베트남 HS 코드 | 품 목 군 |
|--|-----------------------------|
| - 0301 내지 0305, 0307 - 0306 14 0000 - 0306 24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 동물 |
| - 1601 00 0000 - 1602 내지 1605 | 육류 · 어류 등의 조제품 |
| - 1704 | 코코아 미함유한 사탕과자 |
| - 1806 | 초콜렛과 코코아 함유 기타 조제식료품 |
| - 1901 10 - 1902, 1904, 1905 - 1903 00 0000 | 곡물, 전분,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
| - 2101 내지 2104 - 2105 00 0000 - 2106 90 1000/2000/3000 - 2106 90 9100/9200/9400/9910/9990 | 각종 조제식료품 |
| - 2201 내지 2208 - 2209 00 0000 | 음료 · 알코올 및 식초 |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32.

2) 라벨링(Labelling)⁷³⁾

- 베트남 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수입 재화는 라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지방정부의 검사·관리를 위해서 수입된 재화의 포장 용기에 표기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규정하고 있음⁷⁴⁾
- 수입물품의 포장 용기에는 기본적으로 필수 정보, 숫자, 기호, 상징 등이 베트남어로 명확하게 표기되어야 함⁷⁵⁾
 - 베트남어로 변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영어 표기도 인정됨
- 법에서 규정하는 필수 기재사항은 상품명과 제품의 성분 등을 포함하여 8가지임⁷⁶⁾
 - 상품명
 - 제품에 대한 책임을 가진 사업장의 상호 및 주소(수입 제품의 경우 수입업체, 대리인, 유통업체)
 - 국제 척도에 부합하는 수량 정보(예: 생산일련번호, 순 중량, 부피, 지름)
 - 제품의 구성(주요 성분)
 - 주요 품질 지표(사용량의 제한, 인간과 환경의 안전)
 - 제조년월일, 사용기간, 보존기간
 - 사용법, 보존방법
 - 제품의 원산지
- 라벨링 의무는 기본적으로 모든 수입품에 적용이 되나, 다음 물품들에 한해서 라벨링 규정이 면제됨⁷⁷⁾
 - 부동산

73) 관련법령은 시행령(Decree) No. 89/2006/ND-CP(2006.8.30.)

74)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33.

75)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33.

76)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1), p.33.

7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99.

- 전시(Exhibition), 환적 목적 등 재수출용 일시수입물품
 - 선물, 증정용 물품, 기타 판매용이 아닌 개인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
 - 비포장 상태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신선식품, 연료, 건설용 자재(벽돌, 타일, 석회, 모래, 망석, 시멘트, 회반죽, 콘크리트 혼합물 등), 스크랩 등
 - 국가안전 및 재난구호에 사용되는 물품, 압수물품, 경매 또는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물품
- 라벨링 규정은 과학기술부의 관리 및 감독을 받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있을 시에는 보조 라벨링을 부착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⁷⁸⁾
- 이를 위반 시에는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3)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TCVN, Tiêu Chuẩn Việt Nam)⁷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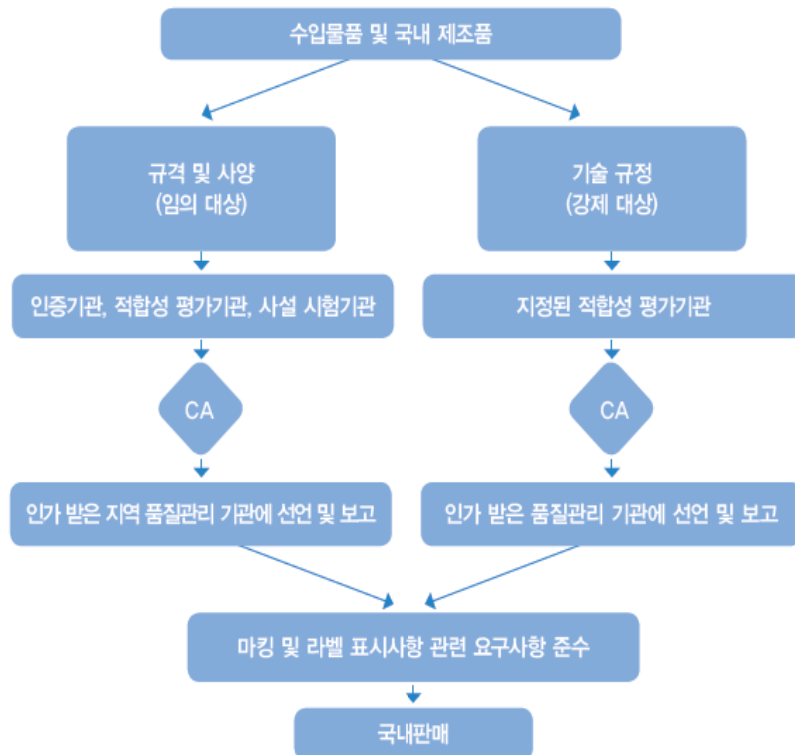
- 제품별 표준규격에 관한 정보는 무역거래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며, 그 기준에 맞추어 표준규격이나 제품 설명을 작성하여야 함
- 특정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에 관한 정보는 수입업자나 현지 거래선을 통해 제공받기도 하고, 베트남 과학기술부 산하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of Vietnam, STAMEQ, www.tcvn.go v.vn)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TCVN)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며, 인증 신청을 한 제조자, 수입업자, 무역업자는 6개월 또는 9개월에 한 번씩 인증서 소지인의 공장에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함
- 제품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최초 인증 신청 절차와 동일하게 새로 인증을

7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77.

7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p.77-78, 82-85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인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 및 제품 재시험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함

[그림 Ⅲ-7]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TCVN) 절차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83.

- 베트남은 약 6,000여 가지 이상의 표준규격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 가운데 약 38%에 해당하는 베트남 국내 표준이 국제 표준과 동일함
 - ISO, IEC, ASTM, JIS, BSI 등 대표적인 국제 표준은 별도의 베트남 국내 표준규격 인증 절차 없이 베트남에서 국내 규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TCVN)의 근거법령은 2007년 1월부터 발효된 Law on Standard

and Technical Regulations이며, 규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함

- 임의 규격 적용 대상: National Standards(TCVNs), Organization Standards (TCCSs)
- 강제 규격 적용 대상: National Technical Regulations(QCVNs), Local Technical Regulations(QCDPs)
- 표준규격의 경우는 임의 규격 적용 대상이지만, 기술 규정은 강제 규격 적용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베트남 규정에 따라야 함

□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TCVN) 기관은 임의 및 강제 규격 적용 대상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됨

- 적합성 평가기관(임의 규격 적용 대상)
 - 지역별로 QUATEST1, QUATEST2, QUATEST3, QUACERT, Vinacontrol, BQV, 기타 정부 산하시험소 및 기관 설치
- 정부 지정 적합성 평가기관(강제 규격 적용 대상)
 - 지역별로 QUATEST1, QUATEST2, QUATEST3, QUACERT, NAFIQUAVED 설치
- 이들 적합성 평가기관은 회보 No.08/2009/TT-BKHHCN에 따라 관련 기관에 의해 지정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지방 부처들은 각 지방 규정에 따라 적합성 평가기관을 지정함
- 베트남 표준 규격 인증(TCVN) 신청 시 인증신청서, 기업 정보 자료와 제품 상세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증신청서는 각 인증기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베트남은 기술적인 계량 요소를 비관세 장벽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예외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 또는 그와 동등한 기관으로부터의 품질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강제하고 있음

- 대상 품목으로는 의료장비, 화학제품, 야생동물, 살충제, 비료, 화장품 등 주로 위생 및 건강과 직결된 품목들이 포함되어 있음

□ 베트남 표준규격 인증(TCVN) 대상 품목은 크게 2008년 7월 1일 발효된 베트남 제품 품

질 관련법에 의해 인간·환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제품과 인간·환경을 손상시키는 제품으로 구분됨

- 베트남 보건부 결의안 No. 50/2006/QD-TTg에 따른 강제 규격 적용 대상 품목으로는 일반 엑스레이 진단기, 의료용 수혈기, 엑스레이 차폐물, 멸균 오븐, 압력스팀 보일러, 산소 공급 및 감시 기기, 의료용 산소 농축기 등이 포함됨

4) 환경 규제⁸⁰⁾

- 베트남 자원환경부는 외국기업들의 무단 폐수 방류 등 환경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급증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14년 6월 환경보호법을 개정하여 국회에 상정함
 - 새 개정안에는 재활용 폐기물 및 폐품 수입허가와 관련한 항목이 신규로 포함됨
- 2006년부터 환경보호법 No. 52/2005/QH11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들이 환경오염 처리시설을 설치에 소극적임
 - 이에 베트남은 정부는 사업장의 강제 폐쇄 및 추방조치 등을 통해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기계, 장비, 운반구, 재료, 연료, 화학물질 등은 환경보호법에서 규정한 환경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제품은 베트남으로의 수입이 금지됨⁸¹⁾
 - 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기계류, 장비, 운반구
 - 중고 기계, 장비, 폐기대상 운반구
 - 수입금지 품목에서 정한 원재료, 연료, 화학물질
 - 방사능에 오염된 기계장비, 병원균, 기타 독성물질
 -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위생 및 안전에 관한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음식물 및 의약품
 - 검역되지 아니한 동·식물 및 수입허가 품목에 정의되지 않은 미생물

80)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p.103-105, 107-108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81)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p.103-104.

- 폐기물(형태 불문)
 - 원료 이외의 용도로 수입하는 재활용품
- 재활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수입업자는 환경기준에 부합하는 재활용품 보관창고 시설, 재활용품 재생 기술 및 장비 및 혼합 불순물 처리 기술 보유 시 허가 후 수입 가능⁸²⁾
- 2011년 베트남 산업통상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금지법(RoHS) 개정을 발표하였으며, 다음 전기·전자 제품군의 경우 유럽연합 특정 유해물질 규제지침(EU RoHS)과 마찬가지로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함⁸³⁾
- 음향·시각장비
 - 자동판매기
 - 작업도구 (다만 공업용 대형 설치 공구는 제외)
 - 대형 가전제품
 - 조명기기
 - 소형 가전기기
 - 스포츠장비
 - 장난감
- 베트남에서 유통되기 위하여 생산자 및 수입자는 전기·전자제품의 유해 화학물질 허용 함량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준수했음을 기업 홈페이지 공지, 사용자 설명서 기재, 전자매체 수록 및 배포, 제품 또는 포장에 인쇄하는 방식을 통해 소비자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⁸⁴⁾
- 전기·전자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 함량 관리서류는 관리·감독관청에서 요구하는 경우

8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04.

83)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04.

8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08.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므로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규제대상 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기 전에 이를 미리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함⁸⁵⁾

- 환경규제와 관련된 수입금지 대상품목은 베트남 국내로 절대 반입할 수 없고,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물품을 반드시 재수출 또는 폐기 조치해야 하며, 위반의 성질 및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⁸⁶⁾

6. 원산지제도

- 2013년 6월 27일 개최된 한·ASEAN FTA 이행위원회에서 원산지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한·ASEAN 상품무역협정의 원산지증명 운영절차 규정(OCP, Operational Certification Procedures) 개정안을 승인하여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FTA 활용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⁸⁷⁾
 - 관련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단, 미얀마 및 캄보디아의 경우 본선인도 가격정보(FOB) 기재 관련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관련규정에 의하면, 수출기업이 원하지 않을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제조자명과 본선인도 가격정보(FOB)⁸⁸⁾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⁸⁹⁾
 - 개정 전에는 수출가격과 같은 민감한 정보도 증명서에 기재해야 했음
- 원산지증명서의 첨부 서식을 도입하여 물품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도 한 건으로 통합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함⁹⁰⁾

8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08.

86)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08.

87)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4.1.1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2013, p.1.

88) 역내부가가치(Regional Value Content)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본선인도가격정보(FOB) 기재 요함

89)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4.1.1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2013, p.1.

90)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 p.2.

- 여러 종류의 물품에 대하여 다수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원산지증명서 준비에 어려움이 있었음
- 또한, 개정된 원산지 관련규정에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려 수출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킴⁹¹⁾
 - 다른 선진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미국 4년, EU 1년 등 우리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었음
- 한·ASEAN FTA에서는 원산지증명서를 정부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기관 발급제도를 채택하고 있음⁹²⁾
 -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으로는 베트남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경우 베트남상공회의소와 무역부를,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경우 상공회의소와 세관이 지정함
- 한·베트남 FTA의 원산지 규정은 기존의 한·ASEAN FTA와 비해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크게 개선함

〈표 Ⅲ-6〉 한·베트남 FTA 원산지기준의 주요 내용

| 업종 | 품목별 원산지기준의 주요 내용 |
|-----------|--|
| 농수산물 | 신선 농수산물은 대체로 완전생산기준(WO)을 유지하되, 가공농수산물 중 우리 수출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선택기준(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 중 택일)의 비율 제고(예: 가당연유, 유당 등) |
| 섬유·의류 | 대부분 한·ASEAN FTA 기준과 동일하게 합의하였으며, 기타 섬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신축성 합의(예: 커튼, 모포 등) |
| 기계, 전기·전자 | 우리의 핵심 관심품목을 중심으로 한·ASEAN FTA상 기준보다 더 신축적인 6단위 세번변경기준 혹은 부가가치기준(40%)으로 합의(예: 세탁기, 냉장고 등) |
| 자동차 | 완성차는 한·ASEAN FTA 기준과 같이 부가가치기준(RVC45%)으로 하되, 자동차 부품의 경우 4단위 세번변경기준을 다수 추가하여 업계 편의 제고(예: 기어박스, 차축 등) |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2015, p.8.

91)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13), p.2.

9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조사』, 2010, p.37.

- 한·베트남 FTA는 원산지증명 절차에 있어서 특혜 관세 신청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수출자 및 생산자의 편의를 도모함⁹³⁾
- 한·베트남 FTA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면제 기준을 기존 한·ASEAN FTA의 200달러 이하에서 600달러 이하로 인상하였으며, 수입 관세당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함⁹⁴⁾

〈표 Ⅲ-7〉 한·아세안 FTA와 한·베트남 FTA 원산지규정 비교

| | | 한·아세안 FTA | 한·베트남 FTA |
|---------|-----------|--|--|
| 발급방식 | | 기관 발급(통일서식, Form AK) | 기관 발급(통일서식, Form KV) |
| 제출면제 | | 본선인도가격조건(FOB) 2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 본선인도가격조건(FOB) 600달러 이하 물품에 대해 면제 |
| 사 후 검 증 | 검증방식 |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 수출국 세관/간접검증 (예외적인 경우에 수입국 세관이 직접검증) |
| | 검증요청 회신기간 | 수출국 세관은 2개월 내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 수출국 세관은 6개월 내 검증결과를 수입국 세관에 제공 |
| | 사후검증 소요기간 | 6개월 이내 완료 | 10개월 이내 완료 |
| 서류보관 |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3년 이상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2015, p.21.

7. 보세제도

- 보세제도는 수입물품에 대한 수입관세 및 기타 제세를 특정 시점까지 보세(保稅)하는 제도를 말함⁹⁵⁾

93)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실질타결”」, 2014, p.11.

94)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2014), p.11.

9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6.

- 보세구역이란 수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의 외국물품(보세화물)을 세관의 관리하에 장치, 검사, 판매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함⁹⁶⁾
 - 보세구역은 통관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의 통제력을 높여 관세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한편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을 촉진하여 수출 및 산업진흥 효과가 있음
- 베트남에 한국의 보세공장 및 보세운송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며 다만, 전국의 공업구(Industrial Zone)와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의 관세유예제도와 보세구역 외 임가공제도가 한국의 보세공장제도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⁹⁷⁾

8. 베트남의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

- 베트남은 현재 특정 조건들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통관 간소화 및 사후심사 면제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우대 제도인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제도를 운용중임
- 2013년 7월 27일 베트남 재무부는 시행세칙(Circular) No. 86/2013/TT-BTC 「우선 세관 제도(the priority customs regime)」로 제도를 공식화함
 - 2011년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는 시행세칙(Circular) No. 63/2011/TT-BTC (Priority Customs System)를 제정하여 AEO제도를 시범 운영하였음
 - 이후 시행세칙(Circular) No. 105/2011/TT-BTC로 개정되었으며, 시행세칙(Circular) No. 65 및 105에 의거하여 2011년 6월 28일부터 「신속하고 간단한 세관 절차 시범사업(prioritized enterprises)」이 시행됨
-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제도의 구체적인 혜택사항으로는 세관 전수·촉수검사 면제, 사업장 내에서의 사후 통관 검사 면제, 한 번의 세관신고, 자체 청산 및 검사 전 환

9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6.

97)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26.

급, 체납 및 추가 관세에 대한 과태료 면제 등이 있음

-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자격조건은 다음과 같음⁹⁸⁾
 - 연간 수출입 매출액 최소 2억달러 이상
 - 농수산물, 섬유, 가죽, 신발류를 수출하며,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 연간 수출입 매출액 5천만달러 이상
 -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에서 인정한 첨단기술 상품 수출 및 동 상품 생산을 위한 자재를 수입하는 기업

-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신청일 기준 최근 24개월 동안의 법규준수 사항과 관련하여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자격의 부적격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음(손영환, 2014)
 - 수출입 금지 물품의 수출입 사실이 적발된 경우
 -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송, 세금 사기 및 탈세 행위가 적발된 경우
 - 관세신고 오류로 인한 행정적 벌금을 3회 이상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세관검사에 불응하여 행정적 벌금(과태료)을 납부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 및 주요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손영환, 2014)
 - 과거 2년간의 수출입보고서, 법규 준수 보고서, 회계감사 보고서, 자체 진단 보고서 양식을 PCA Department에 제출
 - 관세총국은 인증 전 지역세관 혹은 세무서에 자문하여 신청서 검토
 - 법정 평가 기간은 근무일기준 45일이며,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장 30일까지 연장 가능
 - 관세총국은 평가결과를 서면 통보
 -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승인 시 관세총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98) 손영환, 『베트남 AEO현황』,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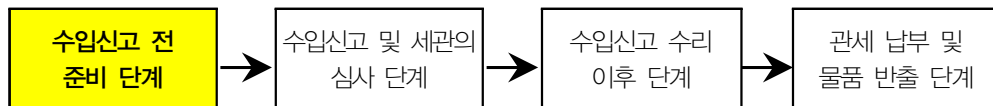
결정문을 공식 발급함

- 우선 세관 제도의 신청기간은 2년이며, 긍정적인 재평가를 조건으로 3년에서 5년간 자격을 연장 가능
 - 시행세칙(Circular) No. 86/2013/TT-BTC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자격이 중단되거나 철회될 수 있으며 향후 2년간 재신청 자격이 박탈됨
- 2014년 말 기준 총 30개 기업이 베트남의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 중 한국기업은 4개사가 포함됨⁹⁹⁾
- AEO 자격을 취득한 한국기업에는 (유)Vietnam Samsung Electronics, (유) Samsung Vina, Thai Nguyen Vietnam Samsung Electronics, Tae Kwang Vina가 있음
- 본 제도와 관련하여 2014년 9월, 제16차 한·베트남 관세청장회의에서 우리나라와 베트남 관세청장은 수출입 종합인증 우수업체(AEO)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체결을 논의함

99) 손영환, 『베트남 AEO현황』, 2014

IV. 통관절차별 고려사항

1. 수입신고 전 준비 단계¹⁰⁰⁾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수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서와 함께 선하증권(B/L, Bill of Lading) 또는 항공 운송장(Air Way Bil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수입 계약서, 기타 세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 등의 준비가 필요함
 - 한·ASEAN FTA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를 구비해야 하며, 쿼터 대상 품목의 경우 연간 쿼터증명서(Annual Import License), 면세 제품인 경우 면세신청서, 수입허가 대상인 경우에는 대외무역관리부서에서 발급한 수입허가증(I/L, Import License)과 기타 경우에 따라 각종 증명서의 제출이 필요함
 - 한·베트남 FTA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을 기존 2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함에 따라, 한·베트남 FTA발효 시 소액 수출업체의 FTA 활용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산업무역부(MOIT)에서 정하는 자동수입허가(AIL) 대상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전, 물품의 하역 전에 미리 수입허가를 받아야 함

1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p.49-53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 신청을 받은 산업무역부는 5일 이내에 허가서를 발행함
- 육류나 수산물, 곡류와 두류, 동식물 수입 시에는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와 함께 검역을 거친 후, 당해 수입허가서와 검역증명서를 수입신고 시에 세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함

나. 애로사례

- 아직 전산화가 완료되어 있지 않아 수출입 신고 관련 서류에 대하여 원본 종이서류 요구 등 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비용의 발생 및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수출입신고 관련 첨부 서류를 모두 원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따른 인력 필요 및 비용이 발생함
 - 수출입 신고를 하는 경우에 세관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지역별로 다른 경우가 있으며, 일부의 경우 수출입과 관련이 없는 생산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함
- 경우에 따라서는 베트남어로 된 서류 제출을 요구받게 될 수 있는데, 모든 선적 서류를 베트남어로 재작성하는 작업으로 인해 시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FTA 체결 등에 의한 특혜 관세(낮은 세율 또는 무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기재상의 사소한 실수 등으로 인해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음
 - ASEAN 국가 간 또는 한국, 중국과 ASEAN 간 자유무역협정 등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각 협정에서 정한 특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더라도, 불일치 사항 등이 있다면 이로 인해 특혜 관세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최근 한국에서 발급받은 FTA 원산지증명서(C/O)의 기재내용과 서명권자 확인을 문제 삼아 베트남세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받은 사례가 있음¹⁰¹⁾
 - 인천세관에서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베트남세관에서 발급담당자의 서명 색깔은 청색이어야 하나, 검정색으로 표기되어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하여 통관이

101)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FTA 통관애로 해소」, 2014, p.1.

지연된 사례가 있음¹⁰²⁾

- 한·ASEAN FTA 협정문 부록1 제5조에 의거하여, 증명서상 인장이나 서명의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음을 고지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임을 확인시키기 위해 관세청 영문홈페이지 안내 후 FTA특혜 적용으로 수입통관 완료¹⁰³⁾

□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전자인장 불인정으로 인한 베트남 통관 지연사례가 있음

- 부평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베트남 송콩세관에 제출하였으나, 전자인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특혜 적용을 거부당한 사례가 있음¹⁰⁴⁾
- 전자인장을 인정한다고 합의한 제8차 한·ASEAN FTA 관세원산지 소위 합의 발취문을 첨부하여 베트남 송콩세관에 제시 후 특혜 적용으로 통관 완료¹⁰⁵⁾

다. 업무상 유의점

- 통관 대행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고 평판이 좋은 통관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권장함
- 화물의 실제 사항과 선적 서류 등 구비 서류 상호 간 차이점 없이 모든 서류를 정확하게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함
 - 특히 물품 가격 작성에 있어 더 낮은 가격으로 상업송장을 작성하여 과세 가격을 낮추려는 행위(언더밸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확한 상업송장 금액을 작성하여야 함
- 원본이 요구되는 서류는 어떤 것인지, 또한 통관 예정 세관에서 주로 요구하는 서류의 종류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사전에 파악하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으며, 서류로 인해 통관

102) 관세청 제공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103) 관세청 제공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104) 관세청 제공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105) 관세청 제공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이 지체되지 않도록 서류 구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함

- 사전에 절차에 대한 대비와 서류 구비 등을 철저히 하지 못해 수입신고 기한(입항 후 15 일)을 넘기면 수입신고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수입신고가 기한 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함
-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한·ASEAN FTA의 협정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K FORM 원산지증명서’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함
 - 한·ASEAN FTA의 원산지증명서는 기관 발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와 세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http://cert.korcham.net>) 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유니패스(<http://portal.customs.go.kr>)에서 원산지증명 신청 및 증명 관련 각종 정보 취득이 가능함
-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는 HS 코드와 원산지 기준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발급받는 과정에서 베트남의 HS 코드와 원산지 기준을 철저히 확인한 후 발급 신청해야 함
 - 세관 총국 홈페이지를 통해 베트남의 HS 코드를 확인할 수 있음
(<http://www.customs.gov.vn/home.aspx?language=en-US> → 중앙 상단 ‘Public Services’의 ‘Tariff Search’ 클릭)
 - 우리나라 관세청 FTA 포털사이트에서 HS 코드 및 원산지 기준을 확인할 수 있음
(<http://fta.customs.go.kr> → 왼쪽 상단 ‘MY메뉴’의 ‘수출세율’ 또는 ‘수입세율’ 클릭)
 - 국제적으로 HS 코드 상위 6단위가 동일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HS 코드 10자리 중 앞의 6자리로 검색하면 됨
- 앞서 제시된 통관절차상 애로사항 사례 방지 및 효율적 대응을 위하여 베트남에 물품을 수출하기 전 사전에 관세법 및 수출입 세법 등을 비롯한 관련법과 하위 법령 등을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

- 베트남 관세총국 영문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령을 영문으로 확인할 수 있음
 - 관세총국 홈페이지 접속 후 'Public Services' 내 'Legal Documents'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¹⁰⁶⁾
 - 'Document Type' 입력으로 필요한 법령을 선택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여기서 Law는 법률, Decree는 시행령, Circular는 시행세칙, Decision은 총리(수상)령이며, Ordinance는 법령을 의미함
 - 동나이세관 홈페이지에서도 영문으로 번역된 법률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동나이세관 홈페이지 상단의 Documents메뉴 중 'Law documents'는 각종 관련 법령, 'Gov-documents'에는 시행령(Decree)과 총리령(Decision)을, 'Ministry documents'에서는 시행세칙(Circular)의 확인이 가능함¹⁰⁷⁾
- 베트남 관세총국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법령에 누락된 것이 있거나 영문 지원이 되지 않는 법령이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동나이세관 또는 빈두옹세관 홈페이지 등을 통한 번역본 확인이 가능하며, 이곳에서 기타 다양한 베트남 통상 정보도 얻을 수 있음
- 현행 법령인 시행세칙(Circular) No. 32/2011/TT-BCT의 개정내용은 동나이세관 홈페이지 상단의 Documents메뉴 중 'Ministry documents'에서 '시행세칙(Circular) No. 32/2011/TT-BCT'을 클릭하여 열리는 파일임¹⁰⁸⁾
 - 이전 법령인 시행세칙(Circular) No. 24/2010/TT-BCT의 내용을 원하는 경우 빈두옹세관 사이트 상단의 Documents 메뉴 중 'Legal documents' → 'Import and export procedure'에서 시행세칙(Circular) No. 24/2010/TT-BCT을 클릭하여 영문 번역본 확인이 가능함¹⁰⁹⁾

106) 베트남 관세총국 영문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vn/home.aspx?language=en-US>, 검색일자: 2015. 12. 3.

107) 동나이세관 홈페이지, http://www.dncustoms.gov.vn/web_english/index_english.htm, 검색일자: 2015. 12. 3.

108) 동나이세관 홈페이지, http://www.dncustoms.gov.vn/web_english/index_english.htm, 검색일자: 2015. 12. 3.

109) 빈두옹세관 홈페이지, <http://www.haiquanbinhduong.gov.vn/EN/Default.aspx>, 검색일자: 2015. 1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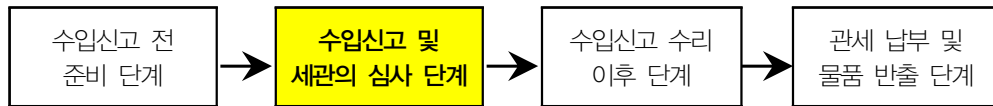
- 덤핑방지관세 등이 부과되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을 위해 예상치 못했던 많은 세금을 내야 하거나 현지 수입상이 수입을 거절할 경우 물품이 한국으로 반송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물품 수출 전 해당 품목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 규제 대상 품목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현재(2015년 8월 기준) 우리나라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물품 중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없음

-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수입규제 포털’에서는 세계 각국의 통상 현안을 비롯하여 국가별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정보 등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¹¹⁰⁾
 - 현재 베트남이 반덤핑관세 등 규제를 가하는 품목에 대한 확인은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수입규제 포털’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수입규제’ → ‘수입규제 현황’ → ‘국가별 수입규제 현황’에서 할 수 있음
 - 또한 ‘수입규제 현황’ → ‘국가별 현황’에서는 수입규제별 해당 국가를 클릭해서 규제 품목명, 한국 HS Code, 규제내용 및 조사 개시일 등 보다 세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 한국무역협회 기본 홈페이지의 하단 ‘사업별 사이트’ 메뉴 중 ‘통상수입규제’로도 접속 가능함¹¹¹⁾
 - 그 외에 WTO에서 반기별로 공개하는 국가별 규제 동향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수입규제 포털’ 사이트 상단 메뉴 중 ‘수입규제’ → ‘통상정보자료실’의 ‘WTO 수입규제보고서’에서 열람 가능함
 - 본 자료는 한국무역협회 웹사이트의 로그인 없이도 열람이 가능함

110)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수입규제 포털, <http://antidumping.kita.net/main.screen>, 검색일자: 2015. 12. 3.

111) 한국무역협회 홈페이지, www.kita.net, 검색일자: 2015. 12. 3.

2. 수입신고 및 세관의 심사단계¹¹²⁾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베트남의 세관도 한국처럼 중앙 통제하에 운용되고 있으나 업무의 진행은 각 성(省) 세관 별로 자율적으로 운용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따라서, 각 세관마다 적용하는 통관 요건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수입신고는 선박의 입항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전산신고와 서류신고가 모두 가능함
 - 전산상으로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종이서류 역시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절차가 있음
 - 관세사 제도가 존재하나 비활성화되어 있어 이로 인해 수입신고의 전문성이 다소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베트남은 중국으로부터 품질에 미달하는 중고 기계 및 설비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2013년 8월 기계장비 수입에 대한 규제를 담은 총리명령의 행정명령(Directive) No. 17/CT-TTg를 채택하였지만, 고품질의 한국·미국·EU산 제품의 수입마저 막는 부작용을 유발함¹¹³⁾
 - 이에 2014년 7월 15일 베트남 과학기술부(MOST)는 기업의 혼란과 부작용을 막고

11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p.53-58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113) 대한투자무역공사, 「베트남, 중고 기계설비 수입규제 가이드라인 공표」,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8502&ARTICLE_SE=20310, 2014, 검색일자: 2015. 12. 3.

자 시행세칙(Circular) No. 20/2014/TT-BKHCHN을 제정함으로써 기계설비 수입에 관한 지침을 명확히 함¹¹⁴⁾

- 새롭게 발표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용한 지 5년 미만의 제품 또는 신제품과 비교해 80%의 품질을 충족하는 경우 대부분의 중고 기계장비를 베트남으로 수출 가능하나, 의료 및 전자기기, 오토바이 및 자동차 부품 생산과 관련된 중고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입을 금지함¹¹⁵⁾
- 중고 생산라인의 경우 중고 기계설비와 동일한 지침이 적용되나, 수입자는 프로젝트를 승인한 투자기관이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승인받은 투자사업 서면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¹¹⁶⁾

□ 베트남은 관세법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탈로그 포함)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하며, 전시회 참가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일시수입 재수출 절차를 거쳐 면세가 되나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관련 수출신고를 해야 함

나. 애로사례

- 지역 세관별로 업무 방식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세관별로 관세율과 납부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동일한 HS 코드의 수입 품목에 대하여 세관별 각기 다른 관세율 적용 등 상이한 업무 행정 수속이 행해진 사례가 있음
 - 동일한 수입 품목에 대하여 담당세관이나 직원에 따라 다른 HS CODE로 분류되기도 함¹¹⁷⁾

114) 대한투자무역공사, 「베트남, 중고 기계설비 수입규제 가이드라인 공표」,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8502&ARTICLE_SE=20310, 2014, 검색일자: 2015. 12. 3.

115) 대한투자무역공사(2014)

116) 대한투자무역공사(2014)

117)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비관세장벽 사례 List』(2014)를 바탕으로 작성

- HS 품목표에 명확히 정의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문화적 관점이나 견해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HS 코드가 다르게 판정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한 업체는 업소용 조리기기(콤비오븐, 품목번호 8419.91, 한·ASEAN FTA 양허세율 5%)를 베트남 하노이 엑스포에 보세전시물품으로 반입하였고 전시 중 판매가 이루어져 수입신고를 하였으나, 하노이세관에서는 오븐 품목번호를 8516.72(토스터기)로 분류하여 세율을 25%로 적용한 사례가 있음¹¹⁸⁾

- 품목분류를 위해 베트남 검사기관에서 작성한 품목분석보고서를 첨부하여 관세총국에 HS 품목분류를 요청하였으나, 답변이 수개월간 지연된 사례가 있었음

- 베트남의 일부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HS 품목분류 체계로 인한 애로가 있으며, 베트남 HS 코드상에 특계(명시)되지 않은 기계류가 많아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있음
 - HS 품목분류가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비특혜 물품을 주로 ‘기타 품목(others)’으로 분류하게 되어 높은 관세를 부과 받는 사례가 있음
 - 특히 베트남으로 기계류를 수입함에 있어 우리나라 HS 코드에 비해 베트남 HS 코드에 기계류가 자세히 명시되지 않기 때문에 HS 분류에 애로가 있음
 - 우리 기업들은 시설재나 원부자재를 수입 시 일반적으로 HS 품목분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베트남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수입할 경우에 애로가 있음

- 베트남은 2003년부터 특정 품목에 대해 수입쿼터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관리대상 품목이 수시로 변경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관리대상 품목은 무역부(MOT)와 기획 투자부(MPI)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선발하고 정부의 최종 승인으로 결정됨

- 베트남에는 통관을 대행해 주는 관세사(Customs Agent) 제도가 존재하나 활성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통관 업무에 있어 전문성과 신속성이 다소 부족할 수 있음

118) 관세청 제공자료를 참조하여 작성

- 화주가 직접 또는 물류 업체 등을 통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화주가 직접 신고할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고, 원거리에 있는 세관을 직접 방문하여야 하는 등 업무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 베트남의 새로운 전자통관시스템이 2014년 4월 공식 가동됨에 따라 기존의 전자통관시스템의 결점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기존의 전자통관 절차는 비상업적 수입재와 샘플에는 적용되지 않아 복잡한 통관 절차를 유발함
 - 또한, 등록·신고·분류를 포함한 일부 단계에만 자동화가 적용되어 대부분 통관에 앞서 방대한 양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과 종이 낭비를 야기함
 - 세관과 기업시스템의 불일치 문제로 오류와 기능장애를 유발하고 시스템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세관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도 함
 - 관련 정부부처나 물류·통관업체, 항만, 은행 등은 정보열람이 불가해 수출입 관련 절차가 까다로운 상품은 시스템과 무관하게 행정 낭비를 초래함
 - 원활한 시스템 가동을 위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며 데이터 전송 및 네트워크 시스템도 매끄럽지 못함
- 베트남에는 중고 기계에 관한 수입금지 규정이 있으며, 기계가 신품 품질의 80%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서 수입이 가능함
 - 본래 중고 기계류에 대하여 베트남 정부기관에 의한 검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관할 검사 세관원이 품질 80% 기준 부합 여부를 판단하여 수입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음
 - 신품 품질의 80% 기준에 대한 객관적 판단이 어려움
- 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베트남 세관이 타 성(省)의 기관 또는 기타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다소 부족하여 통관이 보류되는 경우가 있으며, 매번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어려움을 겪기도 함

- 베트남의 조직 문화상 작업의 속도가 우리나라보다는 다소 늦은 편이므로 행정 처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가 있음
 - 업무 책임을 위한 검토 시간과 결재 절차가 다소 많고 복잡하여 시간이 지체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다. 업무상 유의점

- 물품이 베트남에 도착한 후 15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 수입신고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함
- 품목분류 및 세율 적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통관 예정 세관에 미리 제품 카탈로그 등을 제출하여 HS 코드를 부여받고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함
 - HS 코드는 베트남 관세총국 홈페이지의 ‘Tariff Search’ 메뉴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음¹¹⁹⁾
 - 전 세계적으로 HS 코드는 상위 6단위는 동일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 HS 코드 10자리 중 앞의 6자리를 입력하여 검색 가능함
 - FTA 적용 세율은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음¹²⁰⁾
 - 만약 상대국의 관세율을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관세율 FAX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¹²¹⁾
- 중고 기계 등은 베트남에서 수입금지 물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고 기계의 수입 기준(신품의 80% 이상)과 통관을 진행할 물품의 상태를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수입 가능 여부를 미리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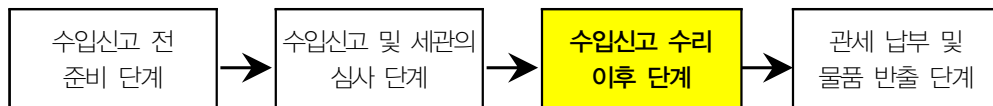
119) 베트남 관세총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vn/home.aspx?language=en-US>, 검색일자: 2015. 12. 3.

120)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검색일자: 2015. 12. 3.

12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관세율 FAX 서비스』,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info/tariff-fax-service.html?BBS_ID=0&MENU_CD=M10710&UPPER_MENU_CD=M10708&MENU_STEP=3, 검색일자: 2015. 12. 3.

- 베트남은 관세법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 책자 등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하므로, 홍보용 판촉물, 팸플릿 등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 납부 의무를 엄두에 두어야 함
- 통관에 있어 발생하는 애로가 수입자의 과실로 인한 기본적인 사항의 불일치 또는 업무 미숙으로 인한 경우도 있으므로(예: 통관 서류 간 불일치, FTA 원산지증명서 미구비, 원산지증명서상의 항목 오기재, 물품과 수입신고내용 간의 불일치 등) 작은 사항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
 - 현지의 전문가 및 유경험자들의 조력을 받는 것도 좋으며, 통관 관련 서류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모든 관련 서류들과 실제 물품이 정확히 일치하도록 철저를 기하여 논쟁의 요소를 만들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3. 수입신고 수리 이후 단계¹²²⁾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수입 물품은 통관이 완료된 이후에는 현지의 법규에 따라 관리받게 되며, 해당 물품에 대한 상대 국가의 규율은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특정 행정처분 이후에 일방적으로 당해 처분을 철회·취소하는 사례가 있어, 기업 활동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주기도 함

12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p.60-61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나. 애로사례

- 수입신고 수리 이후 단계에서의 애로사례들은 주로 관세법상 이상 없이 통관 절차가 진행된 후, 물품(차량 등)의 등록 및 운행에 있어서 다른 국내법과 상충되는 부분이 발견된 경우임
 - A사는 버스를 수입함에 있어 수송용 버스 용도로 면세 확인을 받아 수입을 진행했으나, 베트남 국내법상의 차량 등록 문제로 통관 후 차량 운행이 불가하였음
 - B사는 공장 설비 자재 중 대형화물(보일러 등)을 수입하게 되었으나 이는 중량과 높이, 넓이 등에서 베트남의 일반 도로운송 규정 조건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장 부근까지 내국 해상 운송해야 했음

- 또한, 수입신고 수리 이후 세금납부와 관련된 애로 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 수입신고 수리 시에 세관으로부터 분할 납부(주로 세금이 거액인 경우, 약속한 기간 동안 나누어 세금을 납부)를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당해 분할 납부 건에 대하여, 당해 분할 납부로 인한 추가 이자까지 추징된 사례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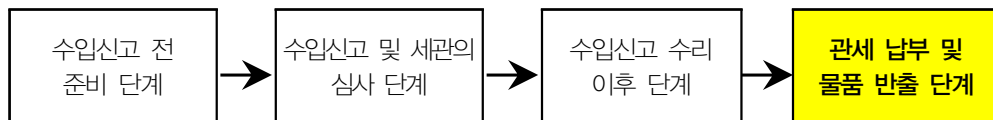
다. 업무상 유의점

- 현지에서 통관 진행을 계획할 경우에는, 수입 절차뿐 아니라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적용될 기타 국내 각종 제도와 절차에 대하여도 미리 알아볼 필요가 있음
 -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으로 인해 시간·금전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납품기일이 정해져 있는 수입 물품의 경우에는 더욱 큰 피해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함

- 대형 화물의 경우 상대국의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관할 경찰에서 중량 화물 신고 및 사전 운송 허가를 취득해 두도록 함

- 수입신고 수리와 관련하여, 의문이 드는 행정처분 등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묻고 답변을 얻도록 함

4.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단계¹²³⁾



가. 통관절차상 특이사항

- 베트남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를 위한 공장설비용 기계류인 고정자산’과 ‘투자기획부(DPI, Department of Planning and Investment)에서 승인받은 수입계획에 따라 수입하는 공장설비용 중고 기계류’에 대해서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¹²⁴⁾
 - 면세 수입을 위하여 외국계 투자기업은 사전에 베트남 투자기획부(MPI,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of Vietnam)로부터 투자허가서 취득 후, 투자허가서의 유효기간인 60일 이내에 수입 계획을 각 성(省)의 투자기획부(DPI)에 신청해야 함¹²⁵⁾
 - 수입계획을 신청받은 각 성의 투자기획부(DPI)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입계획을 승인하며, 이 투자기획부(DPI)의 승인이 있어야 기계류 및 장비를 면세 수입할 수 있음¹²⁶⁾
- 베트남의 관세법상 샘플과 광고 및 홍보물품(책자 및 카탈로그 포함)도 관세 납부 의무가 있음
- 박람회 및 전시회 등의 행사 참가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경우 면세가 적용되며, 이 경우

12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p.58-63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12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9.

125)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29.

1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29.

사후에 반드시 재반출 증명을 제출해야 함

- 이외에 다음의 물품 등에 대해서는 수출·입관세가 면제됨¹²⁷⁾
 - 가공계약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가공 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외국에서 가공을 위해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
 - 투자권고 또는 공적개발원조사업(ODA) 투자계획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 물품
 - 과학연구 및 기술발전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물품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물품
 - 석유가스 활동 업무를 위한 수입물품
 - 투자권고 특별 분야 영역 또는 경제·사회 조건이 특별히 열악한 지역목록에 속하는 사업계획의 생산을 위한 수입원료, 물자, 부품으로서 생산 시작일로부터 5년 동안 수입하는 물품 등
- 다음의 물품 등은 수출·입 관세 면제 검토 대상임¹²⁸⁾
 - 정부 규정한도 내에서 외국 기관 또는 개인이 베트남 기관 또는 개인에게 기증하는 선물, 기증품, 전품
 - 국방, 안보, 교육 및 훈련 업무에 직접 전용되는 수입물품
 - 출·입국하는 자의 면세기준 범위 내 휴대품 등

□ 베트남에서는 수출 제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를 수입하는 경우에 대하여 관세 환급 제도와 관세 징수유예 제도를 운영 중임

- 관세 환급 시 환급 대상 세금은 수출관세, 수입관세, 부가가치세이며, 관세는 관세국에, 부가가치세는 세무국에 신청하여야 함
- 환급 신청 시에는 수출신고서, 수입신고서, 소요량 정산서, 대금결제 확인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수입신고 시 수출용 물품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출이행 기한에 제한이 없으며, 수출

12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28.

128)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29.

후 1개월 이내에 수출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첨부하여 세관에 수출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수입 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음¹²⁹⁾

○ 관세 환급 신청 시 반드시 선입선출방식에 따라 소요량 증명서를 작성해야 함¹³⁰⁾

○ 수입된 원부자재를 수출용 원부자재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관세 환급 신청이 가능함¹³¹⁾

□ 베트남의 관세 환급은 환급 신청을 받은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일 지연된다고 하여도 그에 따른 이자 보상 등의 규정은 없음

나. 애로사례

□ 공장 기자재 화물에 대한 면세 규정에 대하여 그 범위를 서로 달리 해석할 소지가 있음

○ 베트남은 외국계 투자업체의 공장설비 이전 관련 법령상 '고정자산'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함. 그러나 실제 화물의 수입 시 어디까지를 고정자산으로 인정해 주느냐에 대하여 수입자와 세관 측의 이견이 빈번히 발생함

○ 투자업체의 경우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 고정자산으로 보아 면세 수입을 가정하지만, 실제 화물 수입 시 관할 세관에서는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음

– 일반적인 기계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이를 만들기 위한 부품, 연결품(배관 및 파이프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 논쟁의 소지가 있음

□ 최근 우리 기업이 베트남으로 대형 프로젝트 관련 물품을 운송하면서 관련 운송 장비를 수입 면세 통관하였으나, 사후에 베트남 세관에서 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규정을 달리 해석하여 면세금액 추징을 통보받은 사례가 있음¹³²⁾

1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p.131.

130)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31.

131) 한국환경산업기술원(2013), p.131.

132) 관세청, 「우리 기업 수입면세권 사후추징 철회」, 2014, p.1.

- 통일화된 면세신청서 양식이 없어 면세 신청 시 어려움을 겪음
 - 투자기업의 공장 이전 화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면세신청서(MASTER LIST)를 준비하여 사전에 관할 세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정형화된 양식이 없어 투자 업체가 자체적으로 준비해야 함

- 베트남은 샘플과 광고·홍보 물품(책자, 카탈로그 등)에 대하여도 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관측물 등을 한국으로부터 공수받아 사용 시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선물용 달력이나 회사 다이어리 등의 통관 시에도 관세를 납부하여야 함

- 특송업체를 통한 약식 수출면장으로 부가세를 환급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서 거액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었음
 - 이에 대해 지방세무서는 약식 수출면장(뒷면에 선적확인 도장을 찍는 난이 없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음
 - 베트남 세관이 발급한 약식 면장에 의해 수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국이 이를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관련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있음

- 임가공 수출의 경우 원자재 수입 시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가 복잡하고 시간이 다소 걸리는 편임

- 베트남의 관세 환급은 신청 후 15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나, 이 기간 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음

다. 업무상 유의점

- 대형 프로젝트 수출 건에 대해서는 수입세관당국의 사후검사를 대비하여 사전에 관련 규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대비가 필요함

- 투자 기업으로서 공장 설비 이전을 위해 고정자산의 베트남 수입을 준비한다면, 사전에

면세신청서를 자체적으로 준비해 둘 필요가 있으며, 통관 예정 세관에 미리 면세 적용 가능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둘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는 일정 금액 이하 소액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물품 및 물품 판매를 위한 상품 목록·가격표 등의 수입 시 관세 부과를 면제하고 있지만, 베트남은 샘플 및 광고·홍보용 물품의 수입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함에 유념해야 함
- 면세 원자재를 수입하여 1차 가공한 후 현지의 업체에 수출용 원부자재로 판매한 경우에는 환급 및 관세 유예 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함
 - 해외 바이어와의 계약에 따라 판매 대금을 외화로 받고 바이어의 지시에 따라 현지 업체에 공급한 경우는 지역(Local) 수출로 간주하여 면제 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현지 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한 경우에는 설사 그것이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었다 해도 지역(Local) 수출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지 못하게 됨에 유의하여야 함
- 관세 유예 규정에서 275일 이내에 수입 원부자재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된 수입 관세와 더불어 납세 지연에 따른 벌금을 함께 납부해야 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함
 - 납부유예 기간인 275일을 넘겨 원부자재의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납세지연에 따른 벌금과 수입관세를 납부해야 하며, 275일 이내에 수입된 모든 원부자재를 소진한 기업의 경우에는 수입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됨
- 신청일 이후 15일 이내 환급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세 환급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감안해 자금 계획에 반영하며 시간적 여유를 두고 기다리는 것이 좋음
- 관세 환급은 관세국에서 관할하나, 부가가치세 환급은 세무국의 업무이므로 세무국에서 따로 신청하도록 함

5. 요약

□ 통관절차별 고려사항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 IV-1>에 제시된 바와 같음

<표 IV-1> 베트남 통관절차별 유의사항

| 단계 | 유의 사항 |
|---------------------|---|
| 1. 수입신고 전 준비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수입허가(AIL) 대상 품목은 수입 전 산업무역부(MOIT)에 허가신청을 해야 함 ○ 일부 서류에 대하여 원본 또는 베트남어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여야 함 ○ 한·베트남 FTA는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조건을 기존 2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함에 따라 소액으로 수입을 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여부의 확인을 요함 |
| 2. 수입신고 및 세관심사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별로 업무 방식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동일 제품에 대하여 다른 관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사례가 종종 발생함 ○ 관세청과 다른 정부기관의 협조 부족으로 인해 통관이 지체되는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 전산시스템으로 수입신고 후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세관통관시스템상으로 통관 진행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 직접 세관 방문 등으로 인해 손실 발생의 가능성 있음 ○ 기계류의 HS코드 분류가 우리나라에 비해 명확하지 않아 품목분류가 어려움 ○ 수입쿼터 대상품목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을 요함 |
| 3. 수입신고 수리 이후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이후 물품은 관세법령 이외 현지의 관련 내국 법령에 의해 관리를 받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지 법령 및 규정을 면밀히 확인해야 함 ○ 특정 처분이 추후 일방적으로 변경 및 철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함 |
| 4.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단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가 적용되는 ‘투자 목적의 고정자산인 공장 설비’ 기준 판단에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짓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샘플과 광고 및 홍보 물품도 관세 납부의 대상임 ○ 관세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할 경우 규정상 275일 이내에 수입 원부자재를 소진하지 못하는 경우, 벌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유의해야 함 |

참고문헌

- 관세청, 「우리기업 수입면세권 사후추징 철회」, 2014, p.1.
- 관세청, 「원산지증명서 불인정, FTA 통관애로 해소」, 2014, p.1.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14.1.1일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 부담 완화」, 2013, pp.1-2.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 기발효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12, p.47.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최근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 증가 배경 분석과 시사점』, 2015, p.5.
- 대한상공회의소, 『아시아 주요국 진출 국내기업 애로 현황 보고서』, 2011.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정으로 수출기업의 자유무역협정 활용 쉬워진다」, 2015, p.8.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서명」, 2015, p.8.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 “실질타결”」, 2014, p.11.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1. 무역장벽 보고서』, 2014, p.62.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 2. 분야별 통상환경』, 2014, p.12.
- 손영환, 『베트남 AEO현황』, 2014.
- 외교부, 『베트남 개황』, 2013, p.22.
- 외교부, 『2013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2013.
- 외교부, 『2014 외국의 통상환경(아시아·대양주)』, 2014.
- 외교부, 『베트남 2014 경제성과 및 2015년 전망』, 2015, p.1.
- 주호치민 총영사관, 『베트남 통관관련 법령집』, 2011.
- 주호치민 총영사관, 『베트남 AEO현황』, 2015.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베트남 무역·투자 동향과 FTA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2014, p.8.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주요국 FTA 추진 현황과 2015년 전망』, 2015.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한·베트남 FTA의 기대효과: 한·아세안 FTA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2015, 요약, 8, pp.17-22.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4 베트남 수출입 동향』, 2015.
-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5년 베트남 경제 전망』, 2015.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외국의 원산지 표시제도 조사』, 2010, p.37.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비관세장벽 사례 List』, 2014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업을 위한 베트남 세무 및 수출입실무 가이드북』, 2013.

<웹사이트>

- PWC, *Vietnam Pocket Tax Book 2015*, 2015, p.20.
-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2014, pp.167-230.
- The World Bank, *Doing Business 2015 Economy Profile: Vietnam*, 2014, p.67.
- USTR, *National Trade Estimate Report on Foreign Trade Barriers*, 2015, pp.423-430.
- The World Bank, 『Data: Vietnam』, <http://data.worldbank.org/country/vietnam>, 검색일자: 2015. 11. 23.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5*,
<http://knoema.com/IMFWEO2015Apr/imf-world-economic-outlook-weo-april-2015?country=1001860-vietnam>, 검색일자: 2015. 11. 23.
- 관세청 FTA포털 홈페이지, <http://fta.customs.go.kr>, 검색일자: 2015. 12. 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관세율 FAX 서비스』,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info/tariff-fax-service.html?BBS_ID=0&MENU_CD=M10710&UPPER_MENU_CD=M10708&MENU_STEP=3,
검색일자: 2015. 12. 3.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베트남, 중고 기계설비 수입규제 가이드라인 공표』,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

D=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18502&ARTICLE_SE=20310, 2014, 검색일자: 2015. 12.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베트남 2015년 상반기 무역적자, 불황형 흑자에서 탈피?』,

http://www.globalwindow.org/gw/overmarket/GWOMAL020M.html?&BBS_ID=10&MENU_CD=&UPPER_MENU_CD=M10102&MENU_STEP=3&ARTICLE_ID=5029986&ARTICLE_SE=20301, 2015, 검색일자: 2015. 11. 3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베트남-비즈니스 에티켓』, pp.1-3,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info/tariff-fax-service.html?BBS_ID=0&MENU_CD=M10710&UPPER_MENU_CD=M10708&MENU_STEP=3, 검색일자: 2015. 12. 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베트남-수입규제제도』, p.2,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 검색일자: 2015. 12. 4.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베트남- 외국인투자동향』, pp.1-3.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 검색일자: 2015. 11. 2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베트남-통관절차 및 운송』, p.1,3.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vn/info/country.html>, 검색일자: 2015. 12. 2.

동나이세관 홈페이지,

http://www.dncustoms.gov.vn/web_english/index_english.htm, 검색일자: 2015. 12. 3.

베트남 관세청 영문홈페이지,

<http://www.customs.gov.vn/home.aspx?language=en-US>, 검색일자: 2015. 12. 3.

베트남 관세청 관세율 검색포털,

- <http://www.customs.gov.vn/SitePages/Tariff-Search.aspx?language=en-US>,
검색일자: 2015. 11. 23.
- 베트남 통계청(GSO), 『Thematic Data』,
https://www.gso.gov.vn/default_en.aspx?tabid=626&ItemID=14220, 검색일자:
2015. 11. 23.
- 빈두옹세관 홈페이지, <http://www.haiquanbinhduong.gov.vn/EN/Default.aspx>, 검색
일자: 2015. 12. 3.
-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베트남 관세법령 및 FTA 활용방법』,
http://www.fta.go.kr/webmodule/_PSD_FTA/asean/2/Vietnam2.pdf, 검색일
자: 2015. 11. 24.
-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전세계 FTA 체결현황』,
<http://fta.go.kr/main/situation/fta/world/>, 검색일자: 2015.11. 23.
- 산업통상자원부 FTA포털, 『한-베트남 FTA 개요』
<http://fta.go.kr/main/situation/kfta/lov3/vn/1/2/>, 검색일자: 2015. 11. 23.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2014년 베트남 경제동향』,
[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
p?typeID=24&boardid=11683&tableName=TYPE_KORBOARD&seqno=10198](http://www.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24&boardid=11683&tableName=TYPE_KORBOARD&seqno=10198),
2015, 검색일자: 2015. 11. 30.
-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2014년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 현황 및 베트남 FDI』, 2015.
- 주호치민총영사관, 『베트남 관세법 주요내용 안내』,
[http://vnm-hochimin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
oardread.jsp?typeID=15&boardid=12583&seqno=886082&c=&t=&pagenum=1
&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http://vnm-hochiminh.mofa.go.kr/webmodule/htsboard/template/read/korboardread.jsp?typeID=15&boardid=12583&seqno=886082&c=&t=&pagenum=1&tableName=TYPE_LEGATION&pc=&dc=&wc=&lu=&vu=&iu=&du=), 검색일
자: 2015. 11. 24.
- 한국무역협회 무역용어 검색포털, http://www.kita.net/dictionary/trade_dic.jsp, 검색
일자: 2015. 12. 2.
- 한국무역협회, 『베트남 경제무역현황』,
http://www.kita.net/WIKI006.R02.cmd?cmd_id=WIKI006.R02.cmd&country=

asia&countryEngName=vietnam&nationCatogory=economic, 검색일자: 2015.
11. 23.

한국무역협회, 『세계통계』, <http://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
검색일자: 2015. 11. 23.

한국무역협회 비관세장벽·수입규제 포털, 『베트남, TPP로 글로벌 섬유·의류 공급망
중심된다』,
http://ntb.kita.net/intro/weekly_fta_view.screen?menuid=ntb010301&seq=285&tab_seq=6&fix_yn=Np, 2015, 검색일자: 2015. 11. 23.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5년 1/4분기 베트남 경제 동향』,
http://www.kita.net/global_hcm/bizinfo/economy/view.jsp?n_index=1730196&n_boardidx=117000,117001,126005,120010&count=y, 2015, 검색일자: 2015.
11. 30.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2015년 3/4분기 베트남 경제 동향』,
http://www.kita.net/global_hcm/bizinfo/economy/view.jsp?n_index=1730196&n_boardidx=117000,117001,126005,120010&count=y, 2015, 검색일자: 2015.
11. 23.

한국무역협회 호치민지부, 『한·베트남 FTA 주요 내용』,
http://www.kita.net/global_hcm/bizinfo/economy/view.jsp?n_index=1713981&n_boardidx=117000,117001,126005,120010&count=y, 2015, 검색일자: 2015.
12. 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http://211.171.208.92/odisas.html>, 검색일자: 2015.
11. 23.

〈부록 I〉 비즈니스 팁¹³³⁾

- 베트남은 각종 법규가 수시로 변하며, 매매 당사자 간 계약도 변화 가능성이 많으므로 특별한 주의를 요함
 - 현행 법령 및 시행령 등을 미리 꼼꼼하게 살피도록 하며, 또한 구두 계약은 변화 가능성이 많으므로 구두 계약 시에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함

- 베트남인과 거래를 하려면 공식적인 절차 외에도 개별 접촉을 통한 비공식적 친분을 형성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함
 - 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현지 인맥을 통하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으며, 매우 효과적임

- 거래 업체를 방문하거나, 바이어 상담 시 작은 기념품이나 선물을 준비함으로써 친밀감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인맥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칼이나 가위 등 끝이 뾰족한 제품이나 넥타이, 스카프 등은 정서상 선물로 부적합하므로 선물이 문화적으로 적합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미팅은 매우 공식적인 절차로 간주되며, 미팅 전 파트너와 접촉하여 참석자 명단 및 직위 등 세부 사항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거래 상담을 위한 회의는 보통 편안한 분위기 아래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면담장소에서는 간단한 악수 및 인사말 후에 초청자 측의 환영인사 후 방문자

13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연구: 베트남』, 2011, pp.66-7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베트남-비즈니스 에티켓』, http://www.globalwindow.org/GW/global/trade/info/tariff-fax-service.html?BBS_ID=0&MENU_CD=M10710&UPPER_MENU_CD=M10708&MENU_STEP=3, 검색일자: 2015. 12. 3.를 직접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였음

측이 답사하는 것이 통상적 절차임

- 오찬 또는 만찬 시에는 초청자 측에서 대접하는 경우 방문자는 감사의 표시로 리턴초대를 하는 것이 예의이며, 초청자 측의 건배 제의를 시작으로 상호 건배를 제안함
 - 초청자 측이 건배를 제의할 때는 최고 선임자나 연장자를 보고 일어나서 양손으로 술잔을 들며 간단한 덕담을 하는 것이 좋으며, 헤어질 때는 모든 베트남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감사를 표시하도록 함

- 베트남에서 상대방의 이름을 부를 때에는 'Mr./Mrs + 이름' 대신에 직함도 붙여서 '직함 + full name' 형식으로 호칭하는 것이 예의임
 - Deputy, Vice, Assistant 등이 포함된 직함에 대해서는 상위자가 동석하지 않았다면 이를 생략하여 높여주는 것이 적절함

- 베트남의 이름 표기는 한국과 같이 성과 이름 삼음절로 '성-중간 이름-끝 이름' 으로 구성되나, 우리와 달리 끝 이름만 호칭함
 - 베트남 이름의 경우 보통 Vãn(반)은 남자에게, Thi(티)는 여자에게 사용되기 때문에 가운데 이름으로 성별을 파악할 수 있음

- 베트남 사람들은 약속시간에 대개 10~30분 정도 늦을 수 있는데, 상대방이 약속시간에 다소 늦게 나오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함
 - 최근 오토바이 수요 증가와 도로공사로 인해 교통체증이 상당히 심한 편임
 - 특히 출·퇴근시간대에 이동할 경우, 일찍 서두르는 것이 좋음

- 베트남인과 협상을 원한다면 비즈니스에 관한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는 것 보다 날씨, 음식, 베트남의 발전상 등 일반적인 주제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좋음
 - 베트남인들은 역사에 대한 민족적 자부심이 높으며 따라서 그들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대화로 협상을 시작하는 것은 긍정적인
 - 단,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베트남 기업의 대다수가 국영기업이며 따라서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업무 진행과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함

- 베트남은 각 지역마다 말과 억양이 다르고 메일을 통한 대화보다 전화를 통한 대화를 선호하며, 비즈니스 미팅 시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역을 대동하는 것이 편리하며 안전함

- 베트남은 여성의 지위를 존중하는 사회구조 및 인식이 매우 강하므로 여성에 대한 예절이 중시됨
 - 이는 베트남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에 따른 것이며, 특히 회의 또는 면담 시에 여성에 대한 예의가 매우 중요함

- 동류의식 자극으로 친밀한 분위기를 유도하는 것이 좋음
 - 베트남이 한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으로서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음을 화제로 삼으면 좋을 것임
 - 조상을 숭배하는 제사 문화나 음력 설 등이 대표적인 예라 될 수 있음

- 간단한 인사말이나 감사 표현 등 자주 쓰이는 베트남어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좋음
 - 간단한 인사말(신짜오: 안녕하세요, 캄언: 감사합니다, 콤꼬치: 천만에요, 콤사우: 감사합니다, 헨갑라이: 또 만나요 등) 정도는 사전에 준비하여 상담 시 적당한 기회에 사용하면 상담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음

- 베트남에서는 깨끗하지 않거나 구겨진 돈은 위폐 구분이 쉽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어 상점에서 잘 받지 않으며, 환전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지폐를 구기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만일 물건을 구입하고 거스름돈으로 많이 구겨진 지폐를 받게 되면 추후에 다른 상점에서 이용 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폐로 바꾸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좋음

- 베트남에는 원래 팁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최근 외국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팁을 주는 문화가 형성됨.
 - 호텔 포터와 침실 관리인에게는 1만~2만동, 레스토랑에서는 음식값의 5% 이내로 팁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함

〈부록 Ⅱ〉 주요 유관기관 정보

| ■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 |
|-----------------------------------|--|
| 웹페이지 | http://vnm-hanoi.mofa.go.kr |
| 이메일 | korembviet@mofa.go.kr |
| SNS | 한국어: https://twitter.com/#!/koremb_vietnam |
| 대사관 (정무, 경제, 총무, 무관부) | |
| 주소 | 28th Fl., Lotte Center Hanoi, 54 Lieu Giai St., Ba Dinh District, Hanoi, Vietnam |
| 전화번호 | 베트남에서 걸 때: 04) 3831-5110~6 한국 또는 해외에서 걸 때: +84-4) 3831-5110~6 |
| 팩스번호 | +84-4) 3831-5117 |
| 영사부 (한국방문 비자, 국제결혼, 재외국민등록, 영사확인) | |
| 주소 | 7th Fl.,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 Hanoi, Vietnam |
| 전화번호 | 베트남에서 걸 때: 04) 3771-0404 한국 또는 해외에서 걸 때: +84-4) 3771-0404 |
| 팩스번호 | +84-4) 3831-6834 |
| ■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 | |
| 웹페이지 | http://vnm-hochiminh.mofa.go.kr |
| 이메일 | hcm02@mofa.go.kr |
| 주소 | 107 Nguyen Du, Dist 1, HCMC |
| 전화번호 | 자동응답 대표전화 : 3822-5757 한국에서 전화를 걸때 : +84-8-3822-5757 |
| 팩스번호 | +84-4) 3822-5750 |

| ■ KOTRA 하노이 무역관 | |
|-----------------|--|
| 웹페이지 | http://www.kotra.or.kr/KBC/hanoi/ |
| 이메일 | kotrahanoikbc@gmail.com |
| 주소 | 13 Floor, Office Block of the Charmvit Tower, Grand Plaza, 117 Tran Duy Hung Street, Cau Giay District, Hanoi, Vietnam |
| 전화번호 | +84-4) 3946-0511~8 |
| 팩스번호 | +84-4) 3946-0519/20 |

| ■ KOTRA 호치민 무역관 | |
|-----------------|---|
| 웹페이지 | http://www.kotra.or.kr/KBC/hochiminh |
| 이메일 | kotrasgn@hanmail.net |
| 주소 | R.708B, Fl.7, Diamond Plaza, 34 Le Duan Street, Dist.1, HCMC, Vietnam |
| 전화번호 | +84-8) 3822-3941 |
| 팩스번호 | +84-8) 3822-5750 |

| ■ KORCHAM | |
|-----------|---|
| 웹페이지 | http://korchamvietnam.com/ |
| 이메일 | - |
| 주소 | 13F, Charmvit Tower 117, Tran Duy Hung Street, Hanoi, Vietnam |
| 전화번호 | +84-4) 3555-3341 |
| 팩스번호 | +84-4) 3555-3342 |

| ■ 베트남 재무부(Ministry of Finance) | |
|--------------------------------|---|
| 웹페이지 | http://www.mof.gov.vn |
| 이메일 | support@mof.gov.vn |
| 주소 | No. 28 Tran Hung Dao Street, Hoan Kiem District, Hanoi, Vietnam |
| 전화번호 | +84-4) 2220-2828 |
| 팩스번호 | +84-4) 2220-8091 |

| ■ 베트남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 |
|---|---|
| 웹페이지 | http://www.moit.gov.vn |
| 이메일 | bbt@moit.gov.vn |
| 주소 | 54 Hai Ba Trung Str, Hoan Kiem District, Hanoi, Vietnam |
| 전화번호 | +84-4) 2220-2222 |
| 팩스번호 | +84-4) 2220-2525 |

| ■ 베트남 기획투자부(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 |
|--|--|
| 웹페이지 | http://www.mpi.gov.vn |
| 이메일 | banbientap@mpi.gov.vn |
| 주소 | No. 6B, Hoang Dieu, Ba Dinh, Hanoi, Vietnam |
| 전화번호 | +84-80) 43485; +84-4) 3845-5298 (Ministry Office) |
| 팩스번호 | +84-4) 3823-4453 |

| ■ 베트남 관세청(Vietnam Customs) | |
|----------------------------|--|
| 웹페이지 | http://www.customs.gov.vn |
| 이메일 | webmaster@customs.gov.vn |
| 주소 | Block E3 - Duong Dinh Nghe street, Yen Hoa, Cau Giay, Hanoi, Vietnam |
| 전화번호 | +84-4) 3944-0833 |
| 팩스번호 | |

| ■ 베트남 통계청(General Statistics Office of Vietnam) | |
|---|--|
| 웹페이지 | http://www.gso.gov.vn |
| 이메일 | banbientap@gso.gov.vn |
| 주소 | 6B Hoang Dieu, Ba Dinh, Hanoi, Vietnam |
| 전화번호 | +84-4) 3733-2997 |
| 팩스번호 | +84-4) 3846-4921 |

| ■ 베트남 품질 및 표준규격위원회(Directorat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Quality) | |
|--|---|
| 웹페이지 | http://www.tcvn.gov.vn |
| 이메일 | tttt@tcvn.gov.vn |
| 주소 | No 8 Hoang Quoc Viet Str., Cau Giay Dist., Hanoi, Vietnam |
| 전화번호 | +84-4) 3756-3900 |
| 팩스번호 | +84-4) 3836-1556 |

〈부록 Ⅲ〉 베트남 관세청법

(제54/2014/QH13호, 2014.6.23. 공포, 2015 1.1 발효)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에 근거;
국회는 관세법을 공포한다.

제 I 장 일반 규정

제1조. 조정 범위

이 법은 관세영토 내에서의 국내 및 외국 조직/법인, 개인의 수출, 수입, 국경통과 (Transit)되는 물품과, 출국, 입국, 국경통과하는 운송수단에 관하여; 세관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하여 국가관리를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물품의 수출, 수입, 국경통과를,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 국경통과를 실행하는 조직/법인, 개인.
2. 물품의 수출, 수입,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 있는 조직/법인, 개인.
3. 관세기관, 관세공무원.
4. 세관에 관한 국가관리에 협조하는 기타 국가기관.

제3조. 관세에 관한 정책

1. 베트남 정부는 수출, 수입, 베트남 영토를 출국, 입국, 국경통과하는 활동에 있어서 원활한 통관환경을 조성한다.
2. 청렴하고, 강력하고, 전문적이고, 현대적인 베트남 세관을 건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동한다.

제4조. 용어 해설

이 법에서, 아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1. 세관변경(Chuyển cửa khẩu)이라 함은, 이 통관수속 장소에서 타 통관수속 장소로 세관 검사, 세관감시당하고 있는 물품, 운송수단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2. 전재(Chuyển tải)라 함은, 수출하기 위해 국내운송 운송수단, 입국 운송수단으로부터 출국 운송수단에, 또는 수출하기 위해 국내운송 운송수단, 입국 운송수단으로부터 세관 구역 내 창고, 장치장에 하역한 다음 타 운송수단에 적재하는 물품 이적(移積)이다.
3. 국가 싱글윈도우 체제(Cơ chế một cửa quốc gia)라 함은, 세관신고인이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통관절차 및 국가 관리기관 수속을 이행하기 위하여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정보,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가 관리기관은 통합 정보시스템 상에서 수출, 수입, 국경통과되는 물품에 대해 승인을 결정하고, 관세기관도 물품의 통관, 반출을 결정한다.
4.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Địa điểm thu gom hàng lẻ)라 함은, 다수 컨테이너 일반 운송 화주의 화물을 수집, 분할, 분리하는 여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창고, 장치장 구역이다.
5. 세관감시(Gám sát hải quan)라 함은, 세관관리 대상에 속하는 물품의 보관, 유치, 하역, 운송, 사용 중, 그리고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 국경통과 중 물품의 원상태, 법률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관세기관이 적용하는 업무상 조치이다.
6. 물품(Hàng hóa)은, 수출, 수입, 국경통과되는 또는 세관의 활동지역 내 유치되는 베트남 수출입 물품 리스트(HS 편람)에 따른 품명 및 HS 코드가 있는 동산을 포함한다.

7. 출국자 및 입국자 수화물(Hành lý của dịch vụ người xuất cảnh, nhập cảnh)이라 함은 출국자 및 입국자의 생활여건 또는 여행목적에 필요한 용품이며, 여행자 휴대 수화물, 여행 전후 탁송하는 수화물을 포함한다.
8. 통관서류(Hồ sơ hải quan)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에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할 세관신고서, 각종 입증서류를 포함한다.
9. 자가 보세창고(Kho bảo thuế)라 함은, 자가 보세창고주의 수출물품 제조를 위해 통관되었으나 아직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수입 원료, 물자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창고이다.
10. 영업용 보세창고(Kho ngoài quan)라 함은, 수출 대기상태로 통관절차가 끝난 물품, 외국으로의 수출 또는 베트남으로의 수입을 대기하면서 반입된 외국으로부터의 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장치장 구역이다.
11. 세관감시(Kiểm soát hải quan)라 함은, 관세기관이 국경을 통한 물품 밀수, 불법운반 예방, 기타 관세에 관한 위반행위 예방을 위하여 적용하는 순찰, 조사, 확인 조치, 기타 업무상 조치이다.
12. 세관검사(Kiểm tra hải quan)라 함은, 관세기관이 관련 통관서류, 입증서류, 문서를 검사하고, 실제 물품, 운송수단을 검사하는 것이다.
13. 관세영토(Lãnh thổ hải quan)는 관세법이 적용되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영토,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내의 구역을 포함한다.
14. 세관신고인(Người khai hải quan)은 화주, 운송수단주, 운송수단 운전자, 기타 화주, 운송수단주가 통관절차를 수행하도록 위임한 통관수속 대리인, 사람을 포함한다.
15. 세관봉인(Niêm phong hải quan)이라 함은, 물품의 원상태성을 식별 및 보장하기 위한 기술도구 또는 표식을 사용하는 것이다.
16. 물품 품목분류(Phân loại hàng hóa)라 함은, 베트남 수출입 물품 리스트(HS 편람)에 따라 물품의 특성, 성분, 구조, 물리화학적 성질, 용도, 포장규격 및 기타 속성에 근거하여 물품의 품명, HS 코드를 확정하는 것이다.
17. 운송수단(Phương tiện vận tải)은 출국, 입국, 국경통과하는 육로, 철로, 항공로, 해로, 내륙 수로를 포함한다.
18. 위험관리(Quản lý rủi ro)라 함은, 관세기관이 위험수준을 확정, 평가, 분류하기 위하여, 효과성 있는 검사, 감시 및 기타 관세업무를 지원하도록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 배정하

는 데 각종 업무상 조치, 프로세스에 전산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다.

19. 위험(Rủi ro)이라 함은, 물품의 수출, 수입,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 국경통과 시에 관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을 위태로운 상태이다.
20. 이사화물(Tài sản di chuyển)라 함은,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 거주 중단, 활동 종료에 따라 발생된, 개인, 가족, 조직/법인의 생활서비스의 직장 가구, 용품이다.
21. 통관(Thông quan)이라 함은, 물품이 수입, 수출 되도록, 또는 기타 세관 업무관리 제도 하에 놓이도록 세관절차를 완성하는 것이다.
22. 관세정보(Thông tin hải quan)라 함은,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에 참가하는 조직/법인, 개인에 관한 정보, 데이터 및 관세 활동과 관련된 기타 정보이다.
23. 통관절차(Thủ tục hải quan)라 함은, 세관신고인 및 관세공무원이 물품, 운송수단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각종 공적 업무이다.
24. 관세가격(Trị giá hải quan)이라 함은, 세액 계산, 관세통계 목적을 위한 수출입물품의 가격이다.
25. 운송수단 용품(Vật dụng trên phương tiện vận tải)은 운송수단에서 사용하는 재산, 운송수단의 활동을 위한 원료, 연료, 운송수단 종사자의 생활에 그리고 승객에 직접 사용되는 식량, 식품 및 기타 용구를 포함한다.
26.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 사전확정(Xác định trước mã số, xuất xứ, trị giá hải quan)이라 함은, 관세기관이 통관 수속하기 전에 물품의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을 확정하는 것이다.

제5조. 관세관련 국제조약, 국제 관습 및 통례의 적용

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이 법, 베트남의 타 법률 본문,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이 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세관관련 국제 관습 및 통례의 적용이 베트남 법률의 기본 원칙과 어긋나지 않으면, 관세관련 그 관습 및 통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6조. 관세에 관한 국제협력 활동

1. 관세에 관한 국제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관세에 관한 국제조약 및 국제협약의 협상, 체결, 이행 실천;
 - b) 각국 세관, 관세와 관련 있는 기구와의 정보 개발 및 교환, 업무협력의 추진;
 - c) 각종 관세 업무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세에 관한 법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또는 기체결한 국제협약의 규정에 따라 베트남 관세공무원을 외국으로 파견하고, 외국 관세공무원을 베트남으로 받아들임;
 - d) 세계관세기구(WCO), 관세관련 국제기구, 각 국가 및 각 영토에서 베트남의 권리, 의무 및 이익을 이행함.
2. 베트남 세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 조 제1항에서 제기하는 각 활동을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7조. 세관의 활동지역

1. 세관의 활동지역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육로,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국제공항의 세관구역; 수출, 수입, 출국, 입국 활동이 있는 해양, 내륙수로항; 세관감시 대상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구역, 제조수출구(EPZ), 관세 우대구역; 통관수속 장소, 국제우체국, 통관 후 세무조사 시 세관신고인 주소지; 관세영토 내의 수출입 물품검사 장소;
 - b) 국가의 관리 필요성에 따른,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라 물품의 수출, 수입,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 국경통과 허가를 충족하는 기타 구역, 지점.
2. 세관 활동지역에서, 관세기관은 물품, 운송수단에 대하여 세관검사, 세관감시, 세관통제, 그리고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에 부합하게 관세관련 법률위반을 처리할 책임을 진다.
3. 정부는 세관의 활동지역의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8조. 세관관리의 현대화

1. 국가는 세관관리의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술장비, 현대장비,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조직/법인, 개인이 현대적 세관관리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첨단기술 공업 및 장비의 발전에 참여하도록 장려한다. 수출, 수입 활동하는 조직/법인, 개인은 전자무역 및 전자통관절차의 구축, 이행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
2. 전자통관절차 이행 시 전자데이터 교환 기술표준 시스템, 전자 첨부서류 법적 유효성은 전자무역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 관세에 관한 법률 이행을 위한 협력

1. 관세기관은 관세에 관한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 각급 국가기관, 유관 조직, 인민 무장단위(군대)를 주관하고, 긴밀히 협력한다.
2. 국가기관, 유관 조직, 인민 무장단위는 스스로의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관세기관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환경을 조성할 책임이 있다.

제10조. 관세영역 내에서 금지되는 행위

1. 관세공무원의 경우;
 - a) 통관수속을 함에 있어 문제, 애로를 야기하는 행위;
 - b)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무역사기, 조세탈루의 은폐, 공모;
 - c) 뇌물수수, 일시 보관중인 물품의 점용, 횡령 또는 사익 목적의 기타 행위;
 - d)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2. 물품의 수출, 수입,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과 관련된 권리, 의무가 있는 세관신고인, 조직/법인, 개인의 경우;
 - a) 통관수속을 함에 있어서 허위로 하는 행위;
 - b)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 c) 무역사기, 조세탈루;

- d) 뇌물 제공, 기타 부정한 이익취득을 목적으로 한 행위;
- ㄷ) 관세공무원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 e) 관세정보시스템에의 불법 접속, 에러 야기, 훼손;
- g)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제11조. 관세에 관한 법률 이행의 감독

1. 국회, 각급 인민의회(지방정부 의회)는 각각의 기능, 임무, 권한 범위 내에서 관세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감독한다.
2. 베트남 조국전선, 각 인민 동원전선 회원조직은 엄격히 관세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관세에 관한 법률 시행을 감시한다.
3.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부여된 임무,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법률을 준수하고, 인민에 근거하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Ⅱ장 관세청의 임무, 조직

제12조. 관세청의 임무

베트남 관세청은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 감시;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의 예방;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의 집행; 이 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물품통계;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에 대한 제안, 지침, 국가 관리 조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조세정책을 임무로 한다.

제13조. 관세청의 조직 및 활동의 원칙

1. 베트남 관세청은 집중, 통일의 원칙에 따라 조직되고, 활동한다.
2. 관세총국 총국장은 각급 세관의 활동을 통일적으로 관리, 조정한다; 하급 세관은 상급 세관의 관리, 지도를 받는다.

제14조. 관세청의 조직체계

1. 베트남 관세청의 조직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a) 관세청 (관세총국);
 - b) 관세국 - 省級, 성 연합, 정부 직속 직할시;
 - c) 관세지국, 세관단속팀 및 동급 단위부서.
2. 정부는 각 지방의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의 업무량, 규모, 특징, 경제- 사회적 특수성, 여건에 근거하여 관세국 설치 기준을 규정하고, 각급 세관의 조직, 임무,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15조. 관세공무원

1. 관세공무원은 간부, 직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선발, 해당 계급에 보임, 직위, 직명을 받을, 그리고 교육, 훈련 및 관리, 사용될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자이다.
2. 복무제도, 직명, 표준, 급여, 연공 수당, 기타 관세공무원, 세관마크, 세관기, 계급장, 유니폼, 세관 증명서에 관한 우대제도는 정부의 규정에 따른다.

제III장 통관절차, 검사제도, 세관감시

제1목 총 칙

제16조.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의 진행원칙

1. 물품, 운송수단은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고,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아야 한다; 세관을 통한 적정 운송 경로, 시간 또는 기타 지점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세관검사, 세관감시는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의 효과성,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험관리기법 적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3. 통관절차가 완료된 다음 물품은 통관되고, 운송수단은 출국, 입국된다.
4. 통관절차는 공개적이고, 신속하고, 편리하고, 해당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5. 인력 배치, 근무 시간은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한다.

제17조. 관세청 임무 활동의 위험관리

1. 관세기관은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리고 국경을 통한 밀수 및 불법운반 차단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위험관리를 적용한다.
2. 관세청의 임무 활동의 위험관리는 통관정보 수집, 처리; 세관신고인 범규준수 평가, 위험수준 평가의 기준 수립 및 조직 구성; 적정 세관관리 조치방안 마련을 포함한다.
3. 관세기관은 관세업무 활동 중에 위험관리를 적용하는 업무데이터 통합처리를 자동화하기 위하여 업무정보시스템을 관리하고, 응용한다.
4. 재정부 장관은 관세업무 활동 중 세관신고인의 법률준수도, 위험수준 분류 및 위험관리 적용 평가기준을 규정한다.

제18조. 세관신고인의 권리와 의무

1. 세관신고인은 다음 권리를 갖는다:
 - a) 관세기관으로 하여금 물품, 운송수단에 관한 세관신고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통관절차, 관세관련 통상적인 법률을 안내하게 할 수 있다;
 - b) 관세기관에 정보를 충분하고, 정확하게 공급한 다음, 관세기관에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 사전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 c) 세관신고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세관신고 전에 관세공무원의 입회 감시하에 물품을 사전 열람하고, 물품 샘플을 채취할 수 있다;
 - d) 아직 통관되지 아니한 물품의 경우, 관세기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면, 이미 검사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기관에 실물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 e) 물품 통관, 운송, 기타 기관들과 관련 있는 절차의 수행을 위한 통관서류의 사용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 e)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의 법률위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수 있다;
- g)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이 야기한 손해를 국가 보상책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화주, 운송수단주인 세관신고인은 다음 의무를 진다:

- a) 세관신고 및 통관절차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다;
- b) 관세기관이 물품에 대하여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c) 신고한 내용 및 제공, 제시한 각종 첨부서류의 정확성에 대하여, 업체에 보관중인 서류와 관세기관에 보관중인 서류 사이의 정보 내용의 통일성에 대하여 법률 앞에 책임을 진다;
- d)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진행 중에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의 결정 및 요구를 이행한다;
- ㄸ) 통관된 물품에 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법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신고서 등록 일로부터 5년 동안 통관서류를 보관한다; 법률이 규정하는 동안, 통관된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장부, 회계서류 및 기타 첨부서류를 보관한다; 관세기관이 이 법 제32조, 제79조 및 제80조에서 규정에 따라 세관검사하는 때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정보, 입증서류를 제공한다;
- e) 관세공무원이 물품, 운송수단 실물검사하는 관련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 수단을 배치한다;
- g) 조세, 수수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세하고 기타 각종 금전적 의무를 이행한다.

3. 세관신고인은 통관수속을 하는 대리인, 기타 화주, 운송수단주가 권한 위임되는 범위 내에서 이 조 제2항 제a호, 제b호, 제c호, 제d호, 제e호 및 제g호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임받은 자이다. 세관신고인은 이 조 제2항 제a호, 제b호, 제c호, 제d호, 제e호 및 제g호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운송수단 운전자이다.

제19조. 관세공무원의 임무와 권한

1. 관세 법률, 업무 프로세스를 엄정히 집행하고, 본인의 임무, 권한 수행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세관신고인, 조직/법인, 개인에게 안내한다.
3.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수행한다; 이 법 및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물품 통관수속 장소 및 검사 장소에서의 개장, 포장, 전재, 하역에 대하여 감시하고, 관세에 관한 법률위반 징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화주, 운송수단주, 관리자, 운송수단 운전자 또는 물품, 운송수단 검사, 분석·조사를 위한 각종 요구 이행에 관하여 권한위임받은 자에게 요구한다.
4. 세관신고인의 입회하에 관세기관이 관세검사서비스 기관에 분석 또는 감정을 요구하기 위해 물품 샘플을 채취한다.
5. 세관신고인이 물품의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물품과 관련된 정보, 입증서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6. 운송수단의 관리자, 운전자에게 규정하는 적당한 경로, 적당한 시간, 적당한 계류장소로 이동하도록 요구한다.
7.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기타 임무 및 권한.

제20조. 통관절차의 대리인

1.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요건:
 - a) 물품 포워딩서비스 또는 통관절차 수행 대리 사업분야를 포함하는 사업등록 증명서 또는 영업등록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 b) 통관절차 수행을 대리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
 - c) 전자통관신고를 할 수 있는 요건 및 기타 법률이 정하는 각종 요건을 충족시키는 정보 기술 인프라가 있어야 한다.
2.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은 다음 각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베트남 국민이어야 한다:
 - a) 경제, 법률, 기술 전문대학 수준 이상의 학위가 있어야 한다;
 - b) 세관신고업무 전문자격증이 있어야 한다;
 - c) 관세기관은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번호를 발급한다.
3. 관세총국 총국장은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활동을 공인, 일시 정지, 종료를 결정

한다; 세관신고업무 전문자격증을 발급한다;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번호표를 발급 및 회수한다.

4. 통관절차 수행 대리인 및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은 이 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세관신고인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한다.
5. 재정부 장관은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공인 및 활동 프로세스, 절차; 세관신고업무 전문자격증 발급절차,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대리인의 직원 번호표 발급 및 회수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21조. 통관절차

1. 통관수속 시, 세관신고인은 다음 책임이 있다:
 - a) 세관신고서 신고 및 제출; 이 법의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통관서류에 속하는 입증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다;
 - b) 물품, 운송수단을 실제 물품, 운송수단을 검사하기 위한 곳으로 정해지는 곳으로 운반한다;
 - c) 조세, 수수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기타 관련 있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를 납부하고 기타 금전적 의무를 이행한다.
2. 통관수속 시,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다음 책임이 있다:
 - a) 통관서류를 접수 및 등록한다;
 - b) 통관서류를 검사하고, 물품, 운송수단의 실물을 검사한다;
 - c) 조세, 수수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기타 관련 있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조세 및 기타 수입금 수납을 추진한다;
 - d) 통관절차를 완료한 물품의 통관, 물품의 반출하고, 운송수단을 확인한다.

제22조. 통관절차 수행 장소

1. 통관절차 수행장소는, 관세기관이 통관서류를 접수, 등록 및 검사하고, 물품, 운송수단 실물을 검사하는 곳이다.

2. 통관서류 접수, 등록 및 검사 장소는 관세국 주소지, 관세지국 주소지이다.
3. 물품 실물검사 장소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육로,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민영 국제공항; 국제 우체국;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 통과 활동이 있는 바다 항구, 내륙수로항; 내륙에 설치된 물품 수출, 수입 관문항의 세관구역의 검사장소;
 - b) 관세지국 주소지;
 - c) 관세총국 총국장의 결정에 따른 집중 검사장소;
 - d) 생산기지, 공사장의 검사장소; 박람회, 전시회 개최 장소;
 - e)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 보세창고 구역의 검사장소,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
 - f) 육로 (국경) 세관구역의 베트남 세관과 상대국 세관간의 공동검사 장소;
 - g) 기타 관세총국 총국장이 필요한 경우라고 결정한 장소.
4. 기관, 조직/법인, 개인은 육로,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민영 국제공항;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이 있는 바다 항구, 내륙수로항; 내륙에 설치된 물품 수출, 수입 관문항을 기획, 설계할 경우 권한을 갖는다. 경제구, 공업구, 비관세구(Non-Tariff Area) 및 기타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장소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검사, 세관감시 요구를 충족시키는 통관수속 장소, 수출입 물품 보관장소를 배치할 책임이 있다.

제23조. 관세기관의 통관절차 수행시간

1.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인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통관서류를 제출, 제시한 다음, 즉시 통관서류를 접수, 등록, 검사한다.
2. 세관신고인이 이 법의 제21조 제1항 제a호 및 제b호에서 규정하는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각 요구사항을 충분히 이행한 후, 관세공무원의 물품, 운송수단의 서류검사 및 실물검사 완료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서류검사 완료는 관세기관이 통관서류를 충분히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근무시간이다;
 - b) 물품 실물검사 완료는 세관신고인이 관세기관에 물품을 충분히 제시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8근무시간이다. 물품이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질, 의료, 문화, 동물 및 식

물 검역, 식품 안전에 관한 전문분야 검사대상에 속하는 경우, 물품 실물검사 완료기한은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검사결과를 입수한 시점으로부터 계산된다.

물품이 대량, 많은 종류이거나 검사가 복잡한 경우, 통관절차를 수행하는 관세기관 의장이 물품 실물검사 기한의 연장을 결정하나, 기간연장 기간은 최대 2일을 넘지 않는다;

c) 운송수단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 하역, 승객의 출국, 입국의 적시성과,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보장하여야 한다.

3. 물품의 통관은 이 법의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4. 관세기관은 수출입 물품의 하역, 승객, 운송수단의 출국, 입국의 적시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명절,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또는 세관신고인의 신청을 근거로 세관 활동지역의 실제 상황에 맞게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제24조. 통관서류

1. 통관서류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를 대체할 수 있는 입증서류;
- b) 관련 첨부서류.

각 경우에 따라, 세관신고인은 물품 매매계약서, 상업송장(인보이스), 운송장(B/L, AWB), 물품 원산지증명서류, 수출 및 수입 허가서, 검사결과 통보서 또는 전문검사면제 통보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과 관련된 각종 입증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2. 통관서류에 속하는 입증서류는 종이서류 또는 전자서류이다. 전자서류는 전자무역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완결성 및 형식성을 갖춰야 한다.

3. 통관서류는 관세기관의 주소지에서 관세기관에 제출, 제시된다.

국가 싱글윈도우 체제를 적용하는 경우, 전문분야 (담당) 국가 관리기관은 통합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전자 양식으로 수출 및 수입 허가서, 전문 검사결과, 검사면제 통보문서를 송부한다.

4. 재정부 장관은 세관신고서 양식, 세관신고서 사용 및 세관신고서 대체 입증서류, 이 조 제

1항에서 규정하는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 제시하여야 하는 각 경우에 대하여 규정한다.

제25조. 통관서류 제출기한

1. 세관신고서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수출물품의 경우, 세관신고인이 통보한 장소에 물품을 집결한 다음 제출하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늦어도 4시간 전이다; 꾸리어 서비스로 내보내는 수출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늦어도 2시간 전이다;
- b) 수입물품의 경우,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날 이전, 또는 물품이 세관에 도착하는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제출한다;
- c) 운송수단의 세관신고서 제출기한은 이 법의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2. 세관신고서는 등록된 날로부터 15일 기한 내에만 통관수속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다.

3. 통관서류에 속하는 관련 첨부서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전자 세관신고의 경우, 관세기관이 통관서류 검사, 물품 실물검사 진행 시, 세관신고인은 통관서류에 속하는 각종 종이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국가 싱글윈도우 정보시스템에 있는 입증서류들은 제외한다;
- b) 종이 세관신고서 신고의 경우,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하는 때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물품 품목분류

- 1. 물품의 HS 코드를 확정하기 위한 물품 품목분류는 세액계산 및 화물관리 정책 수행의 기초이다. 베트남 수출입 물품 리스트(HS 편람)에 따른 품명, HS 코드를 확정하기 위한 물품 품목분류 시, 수출입 물품과 관련된 통관서류, 기술문서 및 기타 각종 정보에 근거하여야 한다.
- 2. 베트남 수출입 물품 리스트는 HS 코드, 품명, 물품 설명, 계산 단위 및 각종 붙임 해설 내용을 포함한다.
- 3. 베트남 수출입 물품 리스트는 물품 설명 및 코드화 조화에 관한 국제협약의 완전한 적용

을 기초로 작성된다.

재정부 장관은 베트남 수출입 물품 리스트(HS 편람)를 전국에 걸쳐 통일적으로 발행한다.

4. 수출금지 및 수입금지 물품리스트,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서에 따라 수출 및 수입하는 물품리스트, 정부가 규정하는 전문분야 검사대상에 속하는 물품리스트에 입각하여, 재정부 장관은 베트남 수출입 물품 리스트에 속하는 HS 코드와 통일되는 물품 HS코드를 발행한다.
5. 세관검사 진행 시, 관세기관은 통관서류, 물품 실물검사 결과 또는 물품 분석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물품의 HS 코드를 확정한다. 세관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HS 코드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관세기관은 그 물품에 대한 분석, 감정 및 HS 코드 결정 징구를 위해 세관신고인의 견해와 함께 물품 샘플을 채취할 권한이 있다. 세관신고인이 관세기관의 분류결과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또는 소송제기할 권한이 있다.

제27조. 물품의 원산지 확인

1. 수출물품의 경우:

- a)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인의 신고내용 검사, 통관서류에 속하는 첨부서류 및 물품 실물검사결과를 기초로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확정한다;
- b)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인이 수출물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입증서류,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수출물품의 생산현장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검사 진행하고, 검증한다. 물품의 원산지 검사결과, 검증을 기다리는 동안, 수출물품은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된다.

2. 수입물품의 경우:

- a)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인의 신고내용, 원산지증명 입증서류, 통관서류에 속하는 첨부서류 및 물품 실물검사 결과를 기초로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검사, 확인한다. 입증서류는 수출국의 권한 있는 기관, 또는 제조자, 수출자 또는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에 따라 자율 증명 수입자가 발행하는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한다;
- b)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관세기관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국에서 물품의 원산지를 검사 진행하고, 검

증한다. 검사 결과, 수입물품의 원산지 확정을 위한 법적 유효성 있는 원산지를 검증한다.

물품의 원산지 검사,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수입물품은 이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되나, 특별 우대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납부하여야 하는 공식 세액은 물품의 원산지 검사, 검증 결과에 근거한다.

3. 재정부 장관은 물품의 원산지 확정 절차, 권한, 기한을 규정한다.

제28조.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의 사전확인

1. 세관신고인이 수출, 수입 예상물품에 대하여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의 사전확인을 관세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세관신고인은 관세기관이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을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관세기관에 수출, 수입 예상물품에 대한 정보, 관련 입증서류, 샘플을 제공한다.

수출, 수입 예상물품의 샘플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세관신고인은 그 물품과 관련된 기술 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2. 관세기관은 물품 품목분류, 원산지, 관세가격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세관신고인이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을 사전 확인하도록 제공한 각종 관련 정보, 입증서류에 근거하여야 하고, 문서로 세관신고인이 사전확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통보한다. 세관신고인의 요구에 따른 확인에 기초 또는 정보가 불충분한 경우,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인에게 정보, 관련 입증서류의 보충을 요청한다.

3. 사전확인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기한 내에, 세관신고인이 사전확인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사전확인 결과를 관세기관이 재검토해줄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관세기관은 규정 기한 내에 세관신고인에게 결과를 검토하고 답변할 책임이 있다.

4. 사전확인 결과통보 문서는, 물품이 세관신고인이 제공한 정보, 관련 입증서류, 물품 샘플과 부합하는 실제 수출, 수입일 때, 관세기관이 통관수속을 하는 데 법적 유효성을 갖는다.

5. 정부는 HS 코드, 원산지, 관세가격의 사전확인의 요건, 절차, 기한; 사전확인 결과 재검토 요구 처리기한; 이 조에서 규정하는 사전확인 문서의 효력기한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29조. 관세 신고

1. 세관신고인은 세관신고서상의 각 정보기준들을 충분하고, 정확, 명확히 신고하여야 한다.
2. 관세 신고는, 정부 규정에 따라 종이 세관신고서상에 신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 방식에 따라 수행된다.
3. 등록된 세관신고서는 통관수속을 처리할 효력을 갖는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 정책, 조세정책은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법률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신고서 등록시점에서 적용된다.
4. 세관신고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한 세관신고인은 다음 각 경우 보충신고를 할 수 있다:
 - a) 통관수속하고 있는 물품의 경우: 관세기관이 통관서류 직접 검사를 통보하는 시점이전;
 - b) 통관된 물품의 경우: 수출, 수입 허가서; 물품 품질, 의료, 문화, 동물, 식물 검역, 식품 안전과 관련되는 보충신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관일로부터 60일 기한 이내 및 관세기관이 통관 후 세무조사, 감사를 결정하는 시점 이전.

이 항 제a호 및 제b호에서 규정하는 기한을 경과하여, 세관신고인이 새로 세관신고에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조세에 관한 법률,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충신고 및 처리한다.
5. 세관신고인은 통관하기 위하여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신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의 제43조 및 제50조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세관신고서를 완전하게 할 수 있으며, 특정 물품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러 번 수출, 수입하는 경우 한 번 신고로 할 수 있다.
6. 통관절차 진행 중에 있는 물품, 또는 통관절차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세관감시하에 있는 물품은 세관신고인이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출, 수입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세관신고서의 등록

1. 세관신고서의 등록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전자 세관신고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다;
 - b) 종이 세관신고서는 관세기관에서 직접 등록된다.

2. 세관신고서는 세관신고인의 신고를 접수한 다음 등록된다. 등록시점은 세관신고서상에 기재된다.

세관신고서 등록을 접수하지 않은 경우, 관세기관은 종이문서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세관신고인에게 이유를 통보한다.

제31조. 세관검사 결정의 근거, 권한

분석 결과, 위험평가 및 물품과 관련된 각종 정보에 근거하여, 통관서류 처리 관세기관의 장은 통관서류 검사, 물품 실물검사를 결정한다.

제32조. 통관서류 검사

통관서류 검사 시, 관세기관은 세관신고 내용의 정확성, 충분성과 통관서류에 속하는 첨부 서류와의 부합성을 검사하고, 수출입 물품에 대한 물품관리 정책, 조세정책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의 준수 여부를 검사한다.

통관서류 검사는 전자 데이터처리시스템을 통하거나, 관세공무원에 의해서 직접 이루어진다.

제33조. 물품 실물검사

1. 아래 각 경우의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실물검사 면제:

- a) 긴급 요구물품;
- b) 국방, 안보 업무 전용 물품;
- c) 정부 수사의 결정에 따른 기타 특별한 경우에 속하는 물품.

2. 법률위반 징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이 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물품.

3.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물품. 실물검사는 위험관리 적용을 토대로 수행.

4. 살아 있는, 보관하기 어려운 동물, 식물인 물품, 기타 사전검사 대상 특별물품.

5. 물품 실물검사는 관세공무원이 직접 또는 기계, 기술 설비, 기타 업무상 수단에 의해서 수행.

물품 실물검사는 세관신고서를 등록하고 물품이 검사장소에 반입된 다음, 이 법 제34조에

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신고인 또는 그의 합법적 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6. 인접국과의 공동검사 장소에서의 물품 실물검사는 각 측간의 합의에 따라 수행.
7. 재정부 장관은 물품 실물검사를 세부적으로 규정.

제34조. 세관신고인 부재하의 물품 실물검사

1. 세관신고인이 없는 물품 실물검사는 물품 보관중인 곳의 관세기관의 장이 결정하고, 다음 각 경우에 책임을 진다:
 - a) 안녕질서 보호;
 - b) 위생, 환경 보호;
 - c) 법률 위반 징후;
 - d) 수입물품이 세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었음에도, 세관신고인이 통관절차를 수행하지 않음;
 - e)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우.
2. 세관신고인 부재하의 물품 실물검사는 다음 각 형식으로 진행된다:
 - a) 검색기를 통한 비파괴 검사;
 - b) 기술장비, 관세기관의 기타 업무상 수단에 의한 검사;
 - c) 세관구역 내 국가기관 대표, 운송사업자 및 공항만, 창고, 장치장 운영사업자 대표의 입회하여 직접 검사하기 위한 물품 개장. 검사는 관련 각 측의 서명이 있는 문건이 작성되어야 한다.

제35조. 세관활동 지역내 물품, 운송수단 검사의 책임

1. 세관활동 지역범위 내에서, 관세기관은 물품, 운송수단의 검사 책임을 진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 운송수단에 대하여 품질, 의료, 문화, 동물, 식물 검역, 식품 안전에 관한 전문분야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관세기관은 통관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문분야 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근거한다.
2. 전문분야 검사대상에 속하는 물품은 통관될 때까지 세관에 유치되어야 한다. 법률 규정이

물품을 전문분야 검사 진행을 위해 타 장소로 옮기도록 하고 있거나, 화주의 요구로 물품 보관을 위해 옮길 경우, 유치장소는 세관감시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그 물품은 통관될 때까지 관세기관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

화주는 관세기관이 통관 결정할 때까지 전문분야 검사장소에서, 또는 화주의 유치장소에서 물품을 보관하고 유지할 책임을 진다.

3. 물품에 대한 전문분야 검사기한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분야 검사기관은 검사 결과를 얻은 날로부터 2근무일 기한 내에 관세기관에 검사 결과를 통보할 책임이 있다.
4. 관세지국 지국장은 물품, 운송수단의 신속한 통관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관에서 각 전문분야 검사기관을 선도하고, 조정 협력한다.

제36조. 물품의 반출

1. 물품 반출이라 함은 다음 요건을 충분히 충족시키는 때 관세기관이 물품의 수출, 수입을 허용해 주는 것이다:
 - a) 수출, 수입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은 갖추었으나 아직 납부하여야 할 공식 세액을 확정할 수 없는 물품;
 - b) 세관신고인 자율로 신고, 세액계산한 세액을 납부했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보증하도록 한 세관신고인.
2. 납부하여야 할 공식 세액 확정기한은 물품을 반출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다. 감정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이 기한은 감정 결과를 얻은 날로부터 계산한다.
3. 세관신고인이 관세기관의 납부하여야 할 세액 확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 권한이 있다. 이의제기 및 이의제기 처리는 이의제기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37조. 물품의 통관

1. 물품은 통관절차를 완료한 다음 통관된다.
2. 세관신고인이 통관절차를 완료하였으나 규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충분히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품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세액에 대하여 보증

하게 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납세 기한이 적용되는 때 통관된다.

3. 화주가 벌금 형식으로 관세에 관한 행정위반 처벌을 받고 그 물품이 수출, 수입을 허용받은 경우, 물품은 관세기관 또는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처벌 결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벌금을 납부하였거나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보증하게 하였으면 통관될 수 있다.
4. 수출, 수입될 수 있는 충분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분석, 감정하여야 하는 물품의 경우, 관세기관은 검사, 분석, 감정 결론, 또는 법률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검사기관의 검사면제 통보를 기초로 수출, 수입될 물품을 확정하는 다음, 물품을 통관하여야만 한다.
5. 긴급 요구물품; 안보 및 국방 전용물품; 외교행낭, 영사행낭, 우대 및 면제 권한 있는 기관, 기구, 개인의 수화물은 이 법의 제50조 및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된다.

제38조. 세관감시의 대상, 방법 및 시간

1. 세관감시 대상은 물품, 운송수단, 세관감시하의 물품 내륙운송을 포함한다.
2. 세관감시는 다음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 a) 세관봉인;
 - b) 관세공무원에 의해 이루어지는 직접 감시;
 - c) 기술적 방법, 장비의 사용.
3. 관세기관은 분석 결과, 위험 평가 및 세관감시 대상과 관련 있는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적합한 감시방법을 결정한다.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세기관은 물품 실물검사를 진행한다.
4. 세관감시의 기간:
 - a) 수입물품은 세관 활동지역에 도착한 때부터 통관될 때, 물품 반출될 때, 그리고 세관 활동지역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세관감시를 받는다;
 - b) 물품 실물검사 면제 수출물품은 통관 시부터 세관 활동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세관감시를 받는다. 실물검사 하여야 할 경우, 수출물품은 물품 실물검사 시작할 때부터 세관 활동지역을 벗어날 때까지 세관감시를 받는다;

- c) 국경통과 물품은 제일 먼저 들어오는 수입세관에 도착하는 때부터 최종 수출세관을 벗어날 때까지 세관감시를 받는다;
- d)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감시 기간은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9조. 세관감시 활동 중 관세기관의 책임

1. 감시방법의 실행은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를 원활히 하는 데 부합하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물품에 대한 세관관리를 보장.
2.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감시를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장비의 사용.
3. 세관신고인, 공항만, 창고, 장치장, 수출물품 제조기지 운영사업자 및 관련 각 측의 세관감시에 관한 각 규정 준수를 안내하고 검사한다.

제40조. 세관감시 활동 중 세관신고인, 운송수단 관리자 또는 운전자의 책임

1. 관세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이행하고 환경을 조성한다.
2. 물품 및 세관봉인의 원상태를 보존한다; 물품을 관세기관이 인정하기에 적합한 선로, 항로, 시간에 따라 운반한다. 물품이 분실, 유실 또는 못쓰게 된 경우, 세관신고인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3. 관세기관에 신고한 목적에 맞게 물품을 사용한다.
4. 관세기관이 적합한 세관감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에 따른 충분한 요건의 물품 운송수단을 사용한다.
5. 요구될 경우, 검사하는 관세기관에 서류 및 물품을 제시한다.
6. 물품의 원상태, 세관봉인을 보장할 수 없는, 또는 적합한 선로, 노선, 시간에 따라 물품을 운송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경우, 발생할 손실을 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각종 조치를 적용한 다음, 처리를 위하여 관세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관세기관에 즉시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곳에 따라 적절히 공안기관, 변방부대, 해양경찰에 확인하도록 통보한다.

제41조. 세관감시 활동 중 공항만, 창고, 장치장 운영사업자의 책임

1. 관세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관감시업무 기술 시설, 장비를 설치할 장소를 배치한다.
2. 세관감시를 받는 화물이 공항만, 창고, 장치장 구역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관리될 수 있도록 업체 화물관리 정보시스템과 관세기관 전자통관시스템을 연결한다.
3.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공항만, 창고, 장치장 구역에 보관, 들어오고 나가는 물품의 관리제도, 통계, 보관, 입증서류, 장부, 데이터를 충분히 이행하고, 그리고 요구가 있는 경우 관세기관에 제시, 제공한다.
4. 공항만, 창고, 장치장 구역에서 나고, 들고, 유지되는 물품을 모니터링, 검사, 감시하는 데 있어서 관세기관에 정보 제공하고, 협력한다.
5. 관세기관의 감시, 관리 요구에 따라 공항만, 창고, 장치장 구역 내에서 물품의 원상을 보관, 정리, 유지한다.
6. 관세기관의 입증서류를 가진 때에만, 공항만, 창고, 장치장 구역으로 나고, 들고하는 물품 운반 허가를 내준다.
7. 위반물품 처리에 관하여, 권한 있는 기관의 결정을 이행한다.

제2목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제42조. 우대제도(AEO) 적용요건

1. 업체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 a) 연속 2년 동안 관세에 관한 법률, 조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 b) 매년도 규정하는 수준에 달하는 수출, 수입 금액을 가지고 있다;
 - c) 전자 통관절차, 전자 국세절차를 이행한다; 관세기관과 연결되는 업체 수출입활동 관리정보기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 d) 은행을 통하여 지급한다;
 - e)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 f) 회계, 회계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잘 집행한다.

2. 베트남과 우대기업에 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가, 지역(Territories)에 속하는 우대기업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우대제도가 적용된다.
3. 정부는 요건, 공인절차, 연장, 일시 정지, 정지, 우대제도, 우대제도 적용되는 업체에 대한 관리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43조. 기업에 대한 우대제도

1. 법률위반 징후가 있는 경우 또는 법률준수 평가를 위한 랜덤검사를 제외하고는, 통관수속 수행과정 중에 통관서류에 속하는 관련 입증서류 검사 면제, 물품 실물검사 면제.
2.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신하는 입증서류로도 통관수속 가능. 세관신고인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신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전한 세관신고서 및 통관서류에 속하는 관련 각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조세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에 대한 조세 수속 수행 시 우대된다.

제44조. 우대제도 시행중 관세기관의 책임

1. 관세총국 총국장은 업체에 대하여 우대제도의 적용을 검토, 공인, 기간 연장, 일시 정지, 정지한다.
2. 각급 관세기관은 다음 책임이 있다:
 - a) 업체의 법률준수를 검사, 감시, 평가한다;
 - b) 국세 및 관세에 관한 정책, 규정에 관하여 업체에 안내한다.

제45조. 우대제도 적용기업의 책임

1. 매년 정기적으로 관세기관에 회계감사 보고서, 재무보고서를 제공한다.
2. 관세기관의 검사, 감시에 관한 각 규정을 집행한다.
3. 권한 있는 기관의 업체에 대한 조세, 회계 관련 법률위반 처리 결정내용을 관세기관에 통보.

제3목 물품, 이산화물, 수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제46조. 일시수입 재수출 사업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일시수입 통관절차 및 재수출 통관절차는 국경관문 세관지국에서 이루어진다.
2. 일시수입 재수출 사업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일시수입 재수출 사업물품은 국경관문 세관구역에, 또는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을 수 있는 곳에 장치되어야 한다.
 - b) 일시수입 재수출 사업물품은 일시수입 통관수속을 하는 때부터 베트남 영토를 벗어나 재수출할 때까지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는다; 물품의 일시수입 재수출 세관신고인 또는 사업운영자는 베트남에서 머무르는 전 과정에서 일시수입 물품을 보관하고, 일시수입한 물품을 완전히 재수출할 책임을 진다.
3. 일시수입 물품은 규정 기간 내에 재수출하여야 한다; 국내소비에 전용되어 재수출하지 않는 경우, 수입물품에 대하여와 마찬가지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면세점 판매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면세점을 관리하는 관세지국에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2.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세관감시 요구를 충족하는 면세점, 면세품 판매업체의 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 물품의 보관기한은 통관절차를 완료한 날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면세점을 관리하는 관세지국 지국장은 12개월을 넘지 않게 한 번 연장한다;
 - b)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통관수속하는 때부터 판매될 때, 수출될 때,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될 때까지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는다.
3. 면세점에서 판매할 일시수입 물품이 국내소비에 전용되려면, 수입물품과 마찬가지로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48조. 일시수입, 일시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일시수입, 일시수출 물품유형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물품을 적재하기 위해 회송되어온 용기;
 - b) 일정기간 동안 작업수행을 위한 기계류, 장비, 작업용구;
 - c) 제조, 시공을 위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기계류, 장비, 시공 용구, 거푸집(주형), 샘플;
 - d) 외국 선박, 항공기의 부품교환, 수리를 위한 수입 船機의 부품, 부속;
 - e) 전시회, 전람회, 제품소개 행사를 위한 참여 물품;
 - f)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물품.
2. 일시수출 물품은 규정기한 내에 재수입되어야 하고, 일시수입 물품은 규정기한 내에 재수출되어야 하며, 통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3. 하나의 세관신고서로 이루어진 일시수출 물품, 일시수입 물품은, 다수의 재수입, 재수출 세관신고서로 나뉘는 다수 물품항차로 재수입, 재수출할 수 있다.
4. 재수입하지 않은 일시수출 물품, 재수출하지 않은 일시수입 물품이 판매, 기증, 교환되었으면, 수출입 물품과 같이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이 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49조. 기증품, 선물인 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기증품, 선물인 물품은 통관수속되어야 한다; 만약 조건부 (요건확인) 수출입 물품이면, 조건부 수출입 물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수출금지, 수입금지 물품리스트에 속하는 기증품, 선물인 물품의 수출, 수입은 엄격히 금지한다.
2. 면세되는 기증품, 선물 물품기준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50조. 긴급요구 서비스물품, 안보 및 국방 업무 전용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긴급요구 서비스물품은 자연재해, 역병의 피해 극복 서비스 용품 또는 긴급 구조요구 서비

스용품인 물품이다.

긴급요구 서비스물품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확인문서가 있어야 한다.

세관신고인은 통관수속을 하기 위해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신하는 입증서류를 사용할 수 있다. 관세기관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신하는 입증서류를 기초로 물품의 통관을 결정한다.

세관신고인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또는 세관신고서를 대신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완전한 세관신고서 및 통관서류에 속하는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안보 및 국방 업무 전용물품:

a) 안보 및 국방 업무 전용물품은 국방부 부장 또는 공안부 부장의 확인문서에 따르고, 세관신고인은 통관수속을 진행하기 위하여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를 사용할 수 있다. 관세기관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를 기초로 물품의 통관을 결정한다.

세관신고인은, 아직 완전하지 않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완전한 세관신고서 및 통관서류에 속하는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b) 국방부 부장 또는 공안부 부장의 확인문서로 비밀유지 요구가 있는 안보 및 국방 업무 전용물품은 세관신고가 면제되고, 실물검사도 면제된다.

제51조. 국경주민의 매매, 교환 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국경주민의 매매, 교환 물품이라 함은 베트남 국경주민과, 베트남과 공동 국경도로가 있는 나라의 국경주민 간의 통상적 생활, 생산 서비스물품이다.
2. 국경주민의 매매, 교환 물품은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한다; 관세기관이 없는 곳인 경우,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변방부대의 검사, 감시를 받는다.

제52조. 우편 및 특송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우편 및 특송 서비스를 통한 수출입 물품은 통관수속을 하여야 하고,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한다.

2. 세관신고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우편서비스 공급사업자, 국제 꾸리어 서비스 운영사업자인 경우,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세관신고인의 책임을 이행하여야 한다; 통관된 다음에만 운송, 전달된다.

제53조. 이사회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개인, 가족, 조직/법인의 이사회물은 통관수속하여야 하며,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는다.

이사회물인 물품을 수출, 수입하는 개인, 조직/법인은 베트남 또는 외국에서의 거주,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제54조. 출국자 및 입국자의 수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출국자 및 입국자 서비스 수화물은 국경관문 세관에서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아야 한다.
2.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출국자, 입국자 서비스 수화물은 수출입 물품과 같이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출국자 및 입국자 서비스는 입구, 출국 시 수화물을 국경관문 세관창고에 맡기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3. 수화물 표준, 면세되는 수화물 기준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55조. 출국자 및 입국자의 외화현금, 베트남 동화, 지급수단, 금, 귀금속, 보석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외화 현금, 베트남 동화현금, 지급수단, 금, 귀금속, 귀석을 휴대하는 출국자 및 입국자는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 한다.
2. 베트남 국가은행 (중앙은행)의 규정 수준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 베트남 동화현금, 지급수단, 금, 귀금속, 귀석을 휴대하는 입국자는 국경관문 세관에서 통관신고하여야 한다.
3. 베트남 국가은행의 규정 수준을 초과하는 외화 현금, 베트남 동화현금, 지급수단, 금, 귀금속, 귀석을 휴대하는 출국자는 국경관문 세관에서 베트남 국가은행의 규정에 따라 통관신

고하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6조. 운송수단 적재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운송수단내 용품인 물품은 통관수속을 할 필요가 없으나,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는다.
2. 입국하는 운송수단에서 구매한 물품은 수입물품과 같이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출국, 국경통과하는 운송수단 서비스공급 물품은 수출물품과 같이 통관수속하여야 한다.

제57조. 우대 및 면제 권한 있는 기관, 조직/법인, 개인의 외교행낭, 영사행낭, 수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1. 이 법에서 규정하는 우대, 면제 제도는 통관신고, 세관검사에 대한 우대, 면제를 포함한다.
2. 외교행낭, 영사행낭은 통관신고 면제, 세관검사 면제된다.

베트남 주재 외교 대표기관, 영사기관 및 국제기구 대표기관을 위한 우대, 면제 특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우대 및 면제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대상물품인 수화물, 운송수단은 세관검사가 면제된다.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당사자인 외교관계, 영사관계에 관한 국제조약과 다른 목적으로 남용되는, 또는 수화물, 운송수단에 수출금지, 수입금지 물품리스트에 포함되는 물품, 우대, 면제제도 특권을 향유할 수 있는 종류에 속하지 않는 물품이 들어 있는 외교행낭, 영사행낭이라는 확신적 근거가 있을 경우, 관세총국 총국장은 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결정한다.

제58조. 체화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처리

1. 세관 활동지역에 속하는 공항만, 창고, 장치장의 구역에 적치되는 체화물품은 다음을 포함한다:

a) 화주가 포기를 선언하거나 포기를 입증하는 행위를 하는 물품.

법률위반의 징후가 있는 경우, 화주의 포기 또는 포기 입증행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 b) 세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였으나 수하인이 없는 물품;
 - c) 공항만, 창고, 장치장의 운영사업자가 화물 하역과정 중에 모아둔 물품;
 - d) 선하증권(B/L), 통관신고 문서 외의 수하인이 없는 수입물품.
2. 관세기관이 이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물품이 밀수품이라는 확신할 만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3. 수하인이 없는, 이 조 제1항 제b호, 제c호 및 제d호에 규정하는 물품이면, 관세기관은 대중 정보미디어로 공개 통보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기한 내에 화주가 나타나면, 통관 수속을 할 수 있고,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나타나는 자가 없으면, 이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4. 이 조 제1항에 규정하는 물품이 부패하기 쉽고, 냉동물품, 유해, 위험 화학물질, 유효사용기간이 임박한 물품일 경우, 이 법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적시에 처리하여야 한다.
 5. 공항만, 창고, 장치장의 운영사업자는 체화물품을 장치할, 세관감시 요건을 충족하는 공항만, 창고, 장치장 내 장소를 배정할 책임이 있고, 이 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체화물품을 적절히 처리할 책임이 있다.
 6. 체화물품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a) 체화물품의 경우, 관세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체화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물품판매 대금은 물품판매 제비용 항목 및 공항만, 창고, 장치장 운영사업자의 공항만, 창고, 장치장 보관비용을 공제한 다음, 국가예산(국가금고)에 납부된다;
 - b)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물품의 경우, 운송수단주, 운송수단 운전자, 또는 운송수단주가 권한위임한 자는 베트남 영토에서 일어나는 그 물품 운송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운송수단주, 운송수단 운전자, 또는 운송수단주가 권한위임한 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관세기관이 주관하고, 공항만, 창고, 장치장 운영사업자, 지방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멸각(제거)한다.

제4목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를 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제59조.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를 위한 수입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중의 관세기관의 책임

1. 수출물품 임가공,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물자인 물품은 수입 시부터, 제품생산 과정, 제품이 수출 또는 사용목적 변경(국내판매 등)된 때까지 세관의 검사, 감시를 받아야한다.
2. 관세기관은 다음 책임이 있다:
 - a) 수출물품을 임가공, 제조할 원료, 물자를 수입하는 법인, 개인의 임가공, 제조작업장; 임가공, 제조 능력을 검사한다;
 - b) 수출물품을 임가공, 제조하는 과정중의 수입 원료, 물자 사용을 검사하고, 수출물품을 임가공, 제조하는 법인, 개인의 재고물품의 수량을 검사한다;
 - c) 수출물품을 임가공, 제조하기 위해 원료, 물자를 수입하는 법인, 개인의 원료, 물자 결산, 관리, 사용을 검사한다.
3. 이 조에서 규정하는 세관검사, 세관감시는 위험관리 원칙에 따라 수행한다.

제60조. 수출물품을 임가공, 제조하는 조직/법인, 개인의 책임

1.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 작업장을 관세기관에 통보한다.
2. 수입 원료, 물자는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 목적에 사용한다. 사용 목적 변경 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수출물품, 수출물품 임가공, 제조를 위해 사용하는 원료, 물자는 제조구역 내에 보관한다; 제조구역 밖에 보관하는 경우, 관세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임가공, 제조 작업장에 반입,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관리, 회계, 통계, 보관, 입증서류, 장부, 데이터 등 제도를 충분하게 이행한다; 관세기관이 검사하는 때, 장부, 입증서류, 물품을 제시해야 한다.
5. 관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입 원료, 물자 관리, 사용, 수출물품 결산을 보고 이행한다.

제5목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 보세창고,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 내 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 감시

제61조.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 보세창고,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 내 물품

1. 영업용 보세창고에 입고하는 물품은 입고된 날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장치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업용 보세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관세국 국장은 1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12개월을 넘지 않는다.
2. 자가 보세창고에 장치되는 수출물품 제조용 원료, 물자는 입고된 날로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보관된다; 제조 사이클상 요구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가 보세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관세지국 지국장이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 기간연장 기간은 제조 사이클과 부합하여야 한다.
3.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에 반입된 물품은 아직 통관수속을 하지 않은 수입물품, 통관수속을 완료한 수출물품, 또는 세관신고서를 등록하였으나 물품 실물검사가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예정된 수출물품을 포함한다.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에서는 물품이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에 반입된 날로부터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서 장치될 수 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를 관리하고 있는 관세지국 지국장은 1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90일을 넘지 않는다.

제62조.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 보세창고,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의 설립요건

1. 영업용 보세창고,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는 다음 각 구역이 있는 지방에서 설치될 수 있다:
 - a) 바다 항구, 민영 국제공항, 내륙에 설치되는 수출수입항, 육로 국경관문 세관,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
 - b) 공업구, 첨단공업구 (Hi-Tech Zone), 非관세구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구역.
2. 자가 보세창고는 수출물품 제조업체의 공장구역 내에 설치된다.
3. 관세총국 총국장은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 보세창고,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의 설치, 활

동기간 연장, 활동의 일시정지 및 종료를 결정한다.

4. 정부는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 보세창고, CFS·컨테이너화물기지의 설치 및 활동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63조.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 CFS·컨테이너화물기지 운영사업자, 컨테이너서비스 운영사업자, 화주, 자가 보세창고주의 권리와 의무

1.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 영업용 보세창고를 이용하는 화주는 다음 권리 및 의무가 있다:
 - a)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는 영업용 보세창고에 보관될 물품 수탁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 화주와의 합의하에 영업용 보세창고 내에서 물품을 이동시킬 수 있다;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는 관세기관의 물품검사 요구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매 3개월마다 1회 영업용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관세국에 문서로 영업용 보세창고의 물품현황 및 활동상황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b) 화주는 관세공무원의 감시 아래 재포장, 물품 품목분류, 물품샘플 채취 및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물품 소유권을 양도할 수 있다. 한 영업용 보세창고에서 타 영업용 보세창고로의 이동은 그 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영업용 보세창고를 관리하고 있는 관세국 국장의 동의를 문서로 받아야 한다.
2. 자가 보세창고주는 다음 권리 및 의무가 있다:
 - a) 수출물품 제조를 위한 수입 원료, 물자인 물품을 장치한다;
 - b) 자가 보세창고 내에서 물품을 분류, 재포장, 이동시킬 수 있다;
 - c) 자가 보세창고내 원료, 물자를 제조에 투입하는 예상계획을 관세기관에 사전 통보한다;
 - d) 정기적으로 매 3개월마다 1회 자가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관세국에 문서로 자가 보세창고의 물품현황 및 활동상황에 관하여 통보한다;
 - ㄸ) 늦어도 매년 1월 31일까지, 지난해 동안의 자가 보세창고로 반입한 수입 세관신고서 및 원료, 물자 수량 종합명세서를, 수출 세관신고서 및 수출 수량 종합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자가 보세창고를 관리하는 관세국에 송부한다.

3. 화주,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 운영사업자 및 화물수집서비스 사업자는 다음 권리 및 의무를 갖는다:
 - a) 화주는 물품의 소유권 양도, 물품의 포장, 재포장, 포장 강화, 수리, 보관을 할 수 있다;
 - b) 화물수집서비스 사업자는 하나의 컨테이너로 모아서 운송하는 많은 화주의 화물들을 분할, 합병할 수 있고, 보관주인 물품을 분류, 재분류할 수 있다;
 - c)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 운영사업자는 정기적으로 매 3개월마다 1회,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를 관리하는 관세국에 문서로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 운영사업자의 물품현황 및 활동상황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4.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 운영사업자, 자가 보세창고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자적 방식으로 회계제도, 통계, 운수 장비, 전자적 방식으로 물품을 관리하는 기술장비를 이행하고, 관세기관과 망 연결(네트워킹)할 책임이 있다.
5. 영업용 보세창고 운영사업자,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 운영사업자, 화물수집서비스사업자, 자가 보세창고주, 화주는 영업용 보세창고, 자가 보세창고, CFS · 컨테이너화물기지의 활동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을 바르게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6목 세관 감시대상 운송물품에 대한 세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

제64조. 세관 감시대상 운송물품에 대한 세관절차

1. 세관 감시대상 운송물품은 국경통과 물품 및 국경관문 세관변경 물품을 포함한다.
2. 물품의 운송이 세관감시를 받는 때, 세관신고인은 물품운송신고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법 제24조 제1항 제b호의 규정에 따른 입증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다.
3. 관세기관은, 물품운송신고서를 접수하고, 세관신고인이 세관감시를 받는 물품의 운송허가를 결정해 주도록 제시하는 각 입증서류 및 물품을 검사한다.
4. 세관감시를 받고 있는 물품의 운송기간 중, 세관신고인이 환적, 전재, 창고 보관, 화물분할, 운송방법 변경 또는 기타 각종 작업을 수행할 경우, 실시 전에 관세기관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관세기관은 세관신고인의 통보를 받은 때로부터 2시간 내에 답변할

책임이 있다.

제65조. 운송 경로 및 기간

1. 세관감시 대상물품은 정확한 노선, 정확한 국경관문 세관, 정확한 시간에 운송되어야 한다.
2. 국경통과 물품 운송경로는 교통운수부 부장의 결정에 따른다.
3. 국경관문 세관변경 물품의 운송경로는 세관신고인이 등록하고, 서류를 접수하고 처리한 곳의 관세기관이 승인하도록 한다.

제7목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수속, 세관검사, 세관감시

제66조. 운송수단 정보의 통지

운송수단주, 운송수단 운전자, 운송수단주가 권한 위임한 자, 또는 운송서류를 발행한 자는 관세기관에 직접, 또는 수출입 물품, 출국, 입국하기 전에 운송수단으로 출국, 입국하는 승객에 관한 국가 싱글윈도우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정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67조.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수속 장소

운송수단은 출국, 입국 시, 국경관문 세관을 통과하여야 한다.

입국 운송수단은 최초 입국 국경관문 세관에서 통관수속되어야 한다. 출국 운송수단은 최종 출국 국경관문 세관에서 통관수속되어야 한다.

제68조.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 감시대상 경로 및 기간

1. 입국, 출국, 국경통과하는 외국무역 운송수단은, 규정된 정확한 노선에 따라 이동해야 하고, 세관 활동지역에 도착 시부터 베트남 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이동 과정에서 세관감시를 받는다.
2. 입국하는 베트남 무역 운송수단은 세관 활동지역에 도착하는 때부터 수입물품 전부가 수

입수속하기 위해 완전히 비워진 운송수단에 적재할 때까지 세관감시를 받는다.

출국하는 베트남 무역 운송수단은 수출물품을 적재하기 시작하는 때부터 베트남 영토를 벗어날 때까지 세관감시를 받는다.

3. 입국, 출국, 국경통과 무역목적 없는(Non-commercial purpose) 운송수단은 입국, 출국하는 국경관문 세관에서,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장소에서 통관수속하는 때부터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받는다.
4. 운송수단에 불법물품이 은닉되어 있다는 주장에 근거가 있을 때, 기타 법률 위반의 징후가 있을 때, 운송수단에 대하여 통관수속하는 곳 관세기관의 장, 세관감시대 대장은 수색을 위해 출발을 지연시키거나, 운송수단의 정지를 결정한다. 수색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결정을 내리는 자는 스스로의 결정에 관하여 법률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69조.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수속

1.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수속 시, 운송수단주, 운송수단 운전자, 또는 운송수단주가 권한 위임한 자는 통관신고하여야 한다; 통관수속을 위해 입증서류를 제출, 제시하여야 한다; 운송수단에 실려 있는 화물, 용품에 관한 정보, 입증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 입증서류가 과거에 세관검사 요구를 충족했으면, 운송수단주, 운송수단 운전자, 또는 운송수단주가 권한 위임한 자는, 출국자 및 입국자서비스의 운송수단상 수출입 물품, 수화물을 제외하고는, 통관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2. 세관신고서, 관련 입증서류를 신고 및 제출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국경통과 운송수단의 경우, 최초 입국하는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하는 즉시, 그리고 운송수단이 최종 출국하는 국경관문 세관을 지나가기 전에 수행된다;
 - b) 입국 해상 운송수단의 경우, 항무사무소가 입국 운송수단이 도선사 마중 위치에 도착했다는 통보한 후, 늦어도 2시간 내에 수행된다; 출국 해상 운송수단의 경우, 운송수단이 출국하기 전, 늦어도 1시간 내에 수행된다;
 - c) 출입국 항공 운송수단의 경우, 입국 운송수단이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하는 즉시, 그리고 운송회사가 수출화물, 출국승객 승기 절차를 종료하기 전에 수행된다;
 - d) 출입국 철도, 육로 및 수로 운송수단의 경우, 운송수단이 최초 입국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한 후 즉시, 그리고 운송수단이 국경관문 세관에서 최종 출국하기 전에 수행된다;

3. 국방, 안보 목적에 사용되는 군수 운송수단, 기타 운송수단은 통관수속하여야 하고, 세관 검사, 세관감시를 받아야 한다.
4. 정부는 운송수단에 대한 통관절차,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규정한다.

제70조. 운송수단 적재 물품 및 수화물의 전재, 차량연결, 차량분리, 하역

세관감시를 받고 있는 운송수단에 있어서의 화물 및 수화물 전재, 차량연결, 하역은 관세 기관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진행된다.

전재, 차량연결, 차량분리 화물은 포장, 통, 베일의 원상이 유지되어야 한다.

제71조. 국내운송과 결합된 국제운송, 수출입 물품의 운송과 결합된 국내운송

1. 운송수단이 국제운송 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를 얻으면, 그리고 재정부 부장의 규정에 따른 세관감시에 관한 각 요건을 충족하면, 국내물품 운송과 결합될 수 있다.
2. 운송수단이 국내운송 시,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허가를 얻으면, 그리고 재정부 부장의 규정에 따른 세관감시에 관한 각 요건을 충족하면, 세관감시를 받고 있는 수출입 물품의 운송과 결합될 수 있다.

제72조. 국제 화물환적 공항, 항만, 철도역

공항, 바다 항구, 국제 화물환적 철도역의 권한 있는 기관, 조직의 장은 국제환적 선박, 항공기, 열차의 도착 및 출발 시간, 정박 장소; 국제환적 선박, 항공기, 열차의 화물 적재, 화물 하역 작업시간과 관련된 정보를 관세기관에 통보할 책임이 있다.

제8목 지적재산소유권 보호 요구가 있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 통관절차 일시중지

제73조. 세관검사, 세관감시, 통관절차 일시중지의 원칙

1. 지적재산 소유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지적재산권자는 지적재산권 침해 징후가 있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검사, 감시 또는 통관절차 일시중지의 각 조치를 적용해 주도록 관세기관에 신청할 권한이 있다.
2. 관세기관은, 지적재산 소유권자 또는 합법적 권한 위임받은 자가 신청서, 지적재산권의 합법적 소유에 관한 증거, 지적소유권 위반에 관한 증거, 그리고 통관절차 일시중시가 부적절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및 각종 수수료를 보장하기 위한 예치금 증서 또는 금융기관 보증 입증서류를 가지고 있는 때에만,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일시중지를 결정한다.
3. 이 법에서 규정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징후 수출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일시중지에 관한 각 규정은, 인도적 원조물품, 이산화물, 우대 및 면제 권한 있는 물품, 수화물, 기증품, 면세기준 범위 내 선물 및 국경통과 (Transit) 물품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74조. 세관검사, 세관감시, 통관절차 일시중지의 신청절차

1. 지적재산 소유권자는 직접 또는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자를 통하여 관세기관에 지적재산 소유권 침해 징후가 있는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세관검사, 세관감시, 통관절차 일시중지를 해주도록 신청서를 제출한다.
2. 세관검사, 세관감시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재산 소유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권한위임 받은 자는 수수료 및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다음 각 서류를 충분히 관세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 a) 신청서; 신청서 제출 권한위임의 경우, 권한위임 문서;
 - b) 공업소유권 보호증서 사본, 또는 베트남에서 보호받고 있는 공업소유권 증명 기타 서류, 또는 공업소유대상 사용권 양도계약서 등록증명서 사본; 저작권, 저작권관련 권리,

식물종에 관한 권리 등록증명서 사본, 또는 저작권, 저작권관련 권리, 식물종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기타 서류;

c) 지적재산 소유권 침해물품에 대한 상세설명, 촬영 사진, 정품과 지적재산 소유권 침해 물품을 구분하는 특징;

d) 감시요구 물품을 합법적으로 수출, 수입하는 자들의 명단; 지적재산 소유권 침해 물품의 수출, 수입이 가능한 자들의 명단.

지적재산 소유권의 보호 요구가 있는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 조치 적용기한은, 관세기관이 지적재산 소유권자의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2년이다. 이 기한은 2년 더 추가연장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 소유권의 규정에 따른 관련 지적재산 소유권 대상 보호기한을 넘을 수 없다.

3. 통관절차 일시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적재산 소유권자, 또는 합법적으로 권한위임 받은 자는 관세기관에 이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서류들을 제공하여야 하고, 통관절차 일시중지 신청이 부적절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 및 각종 수수료를 보상하기 위하여 계약서상 기재한 가격에 따른 화물가격의 20% 또는 침해 의심 화물의 가격을 알 수 없으면 최소 2,000만 베트남동의 금액 또는 금융기관의 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 세관검사, 세관감시, 통관절차 일시중지의 신청서 접수, 처리

1. 신청서 접수처:

- a) 통관절차 일시중지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세지국;
- b) 세관검사, 세관감시 신청서를 접수하는 관세총국.

2. 관세기관은 다음 기한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할지 또는 접수하지 아니할지에 대하여 신청서 제출한 자에게 문서로 통보할 책임이 있다:

- a) 이 법의 제7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서류를 충분히 입수한 날로부터 늦어도 20일;
- b) 이 법의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각종 서류를 충분히 입수한 시점으로부터 늦어도 2 근무시간.

신청서를 거절하는 경우, 문서로 회신하고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76조. 통관절차 일시중지의 절차

1. 관세기관이 세관검사, 세관감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요구한 자에 대하여 통관절차 일시중지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 a) 지적재산 소유권 침범 징후가 있는 화물 발견 시, 관세기관은 통관절차 진행을 일시중지하고, 즉시 문서로 요구자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한다;
 - b) 관세기관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근무일 기한 내에, 신청서에 있는 요구자가 통관절차 일시중지 요구를 하지 않으면, 관세기관은 규정에 따라 통관절차를 계속 한다.

신청서 제출자가 신청문서로 일시중지를 요구하고, 동시에 이 법의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일정 금액 또는 보증서류를 제출하면, 관세기관은 통관절차 일시중지를 결정한다.
2. 지적재산 소유권자가 지적재산 소유권 침범 징후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절차 일시중지 요구서를 가지고 있으나, 아직 세관검사, 세관감시 요구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관세기관은 이 법 제74조 제3항의 각 규정을 충족하면, 통관절차 일시중지를 결정한다.
3. 통관절차 일시중지 기한은 관세기관이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10근무일이다. 일시중지 요구자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이 법 제7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추가 금액 또는 보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통관절차 일시중지 요구자 요건과 함께 20근무일을 넘지 않는다.
4. 이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일시중지 기한이 종료되었음에도, 통관절차 일시중지 요구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관세기관이 행정위반 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을 수리 결정하지 않으면, 관세기관은 화물에 대한 통관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한다.

통관절차 일시중지 요구자가 일시중지 기한 종료 이전에 요구서를 철회하고 관세기관이 행정위반 처리절차에 따라 사건수리를 결정하지 않는 경우, 관세기관은 화물에 대하여 즉시 통관절차를 계속한다.
5. 지적재산 소유권자 또는 합법적 권한 위임받은 자는 부적절한 통관절차 일시중지가 화주에게 야기할 수 있는 물품의 창고, 장치장, 하역, 보관비용을 포함하는 각종 발생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6. 관세기관은, 지적재산 소유권자 또는 합법적 권한 위임받은 자가 관세기관 또는 권한 있는

기관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비용 및 손해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를 이행한 다음, 지적재산 소유권자 또는 합법적 권한 위임받은 자에게 각종 담보금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7. 납세기한(있다면)은 관세기관이 화물에 대하여 통관절차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계산된다.

제9목 통관 후 세무조사

제77조. 통관 후 세무조사

1. 통관 후 세무조사라 함은, 통관서류, 회계장부, 회계 입증서류 및 기타 각종 입증서류, 물품과 관련된 문서, 데이터에 대한 관세기관의 검사활동이며, 물품이 통관된 다음에 필요한 경우 물품 실물과 아직 이행되지 않은 요건을 검사한다.

통관 후 세무조사는, 세관신고인이 관세기관에 신고, 제출, 제시한 각종 서류, 입증서류 내용의 정확성, 진실성 평가; 관세 법률의 준수 및 세관신고인의 수출, 수입 관리와 관련된 기타 각 규정의 준수도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2. 통관 후 세무조사는 관세기관의 주소지, 세관신고인의 주소지에서 실시된다.

세관신고인의 주소지는 본사, 지사, 물품의 영업장소, 제조장소, 보관장소를 포함한다.

3. 통관 후 세무조사 대상기한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5년이다.

제78조. 통관 후 세무조사의 경우

1. 관세 법률 및 수출, 수입 관리와 관련된 기타 규정의 위반 징후가 있는 때 검사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 대하여는, 위험관리 적용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3. 세관신고인의 법규 준수도를 검사한다.

제79조. 관세기관 주소지에서의 통관 후 세무조사

1. 관세국 국장, 관세지국 지국장은 통관 후 세무조사 결정을 발행하고, 세관신고인에게 물품

에 대한 상업송장, 선하증권 (B/L), 물품 매매계약서, 원산지증명서, 지급 입증서류, 세무 조사되고 있는 서류와 관련된 물품의 기술 서류, 문서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관련 내용들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한다.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조사 결정 시에 확정되지만, 최대 5근무일이다.

2. 통관 후 세무조사 결정은, 서명한 날로부터 3근무일내 그리고 늦어도 세무조사 진행일 5근무일 전에 세관신고인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세관신고인은, 관세기관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서류와 관련된 서류, 입증서류에 대하여 설명하고, 제공할 책임이 있다.

세관신고인은, 세무조사 기간 중 통관서류와 관련된 해명, 정보 및 문서 보충의 권리가 있다.

3. 세무조사 결과의 처리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제공된 정보, 입증서류, 문서 및 세관신고 내용 증빙에 대한 해명 내용이 적정하면, 통관서류는 인정된다;
- b) 세관신고 내용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세관신고인이 세무조사 요구에 따라 서류, 입증서류, 문서를 제공하지 않고, 해명하지 못하는 경우, 관세기관은 조세에 관한 법률,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를 결정한다.

4. 세무조사 결정자는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5 근무일 기한 내에 세무조사 결과통보에 서명하고, 세관신고인에게 송부한다.

제80조. 세관신고인 주소지에서의 통관 후 세무조사

1. 통관 후 세무조사 결정권한:

- a) 관세총국 총국장, 통관 후 세무조사국 국장이 전국 범위에서 통관 후 세무조사를 결정한다;
- b) 관세국 국장은 해당국의 관리지역 내에서 통관 후 세무조사를 결정한다.

분장된 관리지역 (관할지역) 범위에 속하지 않는 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경우, 관세국은 관세총국에 보고하여, 세무조사 시행단위의 분장을 검토하게 한다.

세관신고인의 법규 준수도 평가에 대한 검사는 관세총국 총국장이 발행하는 연도별

통관 후 세무조사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2. 통관 후 세무조사 기간:

- a) 통관 후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조사 결정 시에 확정되나, 최대 10근무일이다. 세무조사 기간은 세무조사 진행이 시작하는 날로부터 계산된다; 세무조사 범위가 넓고, 내용이 복잡한 경우, 세무조사 결정자는 10근무일을 넘지 않도록 1회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b) 통관 후 세무조사 결정은, 이 법 제7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한 날로부터 3근무일 내에 그리고 늦어도 세무조사 진행일 5근무일 전에 세관신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3. 통관 후 세무조사의 프로세스, 절차:

- a) 세무조사 진행을 시작한 때, 통관 후 세무조사 결정을 공표한다;
- b) 신고내용을 회계장부, 회계 입증서류, 재무보고서, 관련 각 문서, 통관 후 세무조사 결정의 범위, 내용에 해당하는 수출입 물품의 실물성상과 대조한다;
- c)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5근무일 기한 내에 통관 후 세무조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 d) 세무조사 결정자는 세무조사 종결일로부터 15일 기한 내에 세무조사 결론서에 서명하여 세관신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결론서에 권한 있는 기관의 전문분야에 관한 의견이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결론서 서명 기한은 권한 있는 기관의 의견이 있는 날로부터 계산된다. 권한 있는 전문기관은 관세기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기한 내에 의견을 제시한다;
- e) 권한에 따라 처리하거나, 권한 있는 (간부) 담당관이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하도록 이첩한다.

4. 세관신고인이 세무조사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관세기관에 적절한 시한에 설명하지 못하고, 서류,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관세기관은 조세에 관한 법률,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집, 검증한 서류, 문서에 근거하여 처리 결정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제81조. 세관신고인 주소지에서의 통관 후 세무조사 중 관세공무원의 임무와 권한

1. 관세총국 총국장, 통관 후 세무조사국 국장, 관세국 국장은 다음 임무와 권한을 갖는다:

- a) 세무조사 결정을 발행하고, 세무조사단을 구성한다;
 - b)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기한을 연장한다;
 - c) 세무조사 결론서를 발행한다; 세무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조세에 관한 법률, 권한에 따른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른 처리의 결정권한 있는 자의 건의에 따라 처리를 결정한다;
 - d) 이의제기를 해결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고발한다.
2. 세무조사 단장은 다음 임무, 권한을 갖는다:
- a) 세무조사 결정서에 기재할 세무조사 내용, 대상, 기간을 적절히 이행할 세무조사단 구성원을 구성하고, 지도한다;
 - b) 세관신고인에게 정보, 문서를 제공하고, 검사 내용과 관련되는 문제들에 관한 설명을 문서로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하고 아직 이행되지 않은 요건이 있는 경우 검사하기 위해 물품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 c) 세관신고인의 세무조사 결정 이행 불이행, 방해, 지연 행위에 대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권한 있는 간부에게 처리해 주도록 보고한다;
 - d) 세관신고인이 법률위반 행위와 관련된 문서, 증거를 은닉, 파기할 징후가 있는 경우, 문서, 증거를 일시보관, 봉인한다;
 - e) 세무조사 보고서를 작성, 서명한다;
 - f) 세무조사 결정을 발행한 자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하고, 그 보고의 정확성, 진실성, 객관성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세무조사단 구성원은 다음 임무, 권한을 갖는다:
- a) 세무조사단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
 - b) 할당된 임무의 수행 결과를 세무조사단장에게 보고한다; 법률 및 세무조사단장 앞에 보고의 정확성, 진실성, 객관성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 c) 세무조사단장의 업무분장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한다.

제82조. 통관 후 세무조사 중 세관신고인의 권리와 의무

1. 이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한다.

2. 요구에 따라 서류, 입증서류를 적시에, 충분히, 정확히 제공하고, 그 서류, 입증서류의 정확성, 진실성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3. 세무조사 내용과 관계없는 정보, 문서, 국가비밀에 속하는 정보, 문서의 제공을, 기타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절할 수 있다.
4. 세무조사 결론서를 받고, 세무조사 결론서 내용 설명을 요구한다; 세무조사 결론서에 의견을 기재한다.
5. 세관신고인 주소지에서의 통관 후 세무조사의 경우, 세무조사단장에게 세무조사 결정서, 세관증명서의 제시를 요구한다.
6. 통관 후 세무조사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관세기관과 일할 권한 있는 직원을 지정한다.
7. 관세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 문제들을 설명한다.
8. 세무조사 보고서에 서명한다.
9. 관세기관 및 권한 있는 각 기관의 처리 결정을 이행한다.

제IV장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국세 및 기타 각종 수익금 납부

제83조. 납세신고, 세액계산, 국세 및 기타 각종 수익금 수납에 있어서의 세관신고인의 책임

1. 정확, 정직, 충분, 적시에 납세신고하고, 세액계산하며, 스스로의 납세신고, 세액계산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2. 조세, 수수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세액 및 기타 수익금을 충분히, 적시에 납부한다.
3. 조세, 수수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세 및 기타 수익금에 관한 관세기관의 결정을 시행한다.

제84조. 국세 및 기타 각종 수익금의 수납에 있어서의 관세기관의 책임

1. 관세총국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조세 및 기타 수익금 징수의 통일을 기한다; 조세, 수수료

료, 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 및 기타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세 및 각종 수익금의 정확하고, 충분한 징수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 조치의 적용을 조직한다.

2. 물품의 수출입 수속을 하는 곳의 관세기관은 기능 및 권한에 따라 납세신고, 세액계산검사를 나눌 수 있다; 세관신고인에 대하여 면세, 감세, 환급, 징수유예, 세액 확정, 기간연장, 조세채무 탕감, 지연납부 금액, 벌금 조치를 시행한다; 조세, 기타 수익금을 징수하고, 납세를 관리한다.

제85조.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 세액계산 시점, 납세 기한

수출입 물품에 대한 세율 확정은 HS 코드 및 세액계산 시점에서 효력 있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조세정책에 근거한다.

수출입 물품의 세액계산 시점, 납세 기한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제86조. 관세가격

1. 관세가격은 수출입 세액계산 및 수출입 물품 통계의 기초로 사용된다.
2.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가격은 수출항구에 도달하기까지 계산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이며, 보험료 및 국제운송 비용을 포함하지 않는다.
3.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가격은 최초 들어오는 국경관문 세관에 도착하기까지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실제가격이며,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인 국제조약과 부합하여야 한다.
4. 세액계산 환율은 세액계산 시점에서 베트남 국가은행이 공표하는 베트남 동화와 외국화폐간의 교환비율이다. 베트남 국가은행이 교환비율을 공표하지 않는 세액계산 시점일 경우, 가장 최근 공표한 교환비율을 적용한다.
5. 정부는 이 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 V 장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

제 87 조.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에 있어서의 세관의 임무

1. 관세기관 각급 조직은 본연의 임무, 권한으로서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 임무를 수행한다.
2. 각급 관세기관은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 임무를 수행할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 88 조.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의 책임범위

1. 세관의 활동지역 범위 내에서, 관세기관은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물품, 운송수단에 대한 세관검사, 세관감시, 세관단속의 책임을 진다.

기관, 조직, 개인이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물품, 운송수단이 세관의 활동지역 범위를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경우, 그 기관, 조직, 개인은 관세기관이 검사, 처리하도록 즉시 알린다.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반 물품이라는, 한 세관 활동지역으로부터 타 세관 활동지역으로 이동해 나가는 국경을 통한 밀수, 불법운반 물품을 실은 운송수단이라는 확정적 근거가 있을 경우, 관세기관은 계속 추적하고, 공안기관, 변방부대, 해양경비대, 지방 시장관리자들이 협력하도록 통보하며, 동시에 예방조치를 적용하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베트남 해역 내로 이동하는 외국 운송수단의 정지, 추적은 베트남 해양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유관 국가기관이 국경을 통한 물품 밀수, 불법운반 행위라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세관 활동지역 범위 밖으로 벗어나 버린 물품, 운송수단일 경우, 권한에 따라, 그 기관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사, 처리를 수행한다; 관세기관은 유관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국경을 통한 물품 밀수, 불법운반 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3. 여러 경로로 운반되고 있는, 세관감시를 받는 물품의 경우, 관세기관은 관세업무상 조치로

- 서 감시의 책임이 있다; 법률위반 행위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관세기관은 주도하여 유관 국가기관과 협력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검사, 처리한다.
4. 내수면 지역, 영해, 영해 접속수역에서, 관세기관은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방지를 위한 순찰, 감시를 실시, 협력하여 실시한다; 베트남 해양법의 규정에 맞추어 내수면 지역, 영해에서 권한에 따라 위반을 차단 및 처리하기 위한 조치를 수행한다.
 5. 각급 인민위원회는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을 예방하는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세기관과 지방 타 유관기관의 협력활동을 지도한다.
 6. 정부는 세관감시의 업무상 조치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예방에 있어서 각 기관의 관세기관과의 협력 책임이 있다.

제89조.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조치 적용에 있어서의 관세기관의 권한

1.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차단, 물품의 통관업무 및 통관 후 세무조사를 주도하는 관세활동과 관련된 역량을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세관감시 업무상 조치를 적용하고, 국내 및 외국 정보를 수집한다;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사건 정보를 제공하는 자에 관한 비밀을 지켜주도록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2. 물품, 운송수단에 대하여 세관감시를 수행한다; 세관 활동지역 내의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의 각 차단활동 수행을 주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한다.
세관의 활동지역내에서 물품, 운송수단에 대하여 세관감시를 진행할 때, 관세기관은 순찰, 조사, 검증 또는 기타 이 법, 행정위반 처리법률, 형사소송법 및 형사조사조직법의 규정에 따른 업무상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3. 관련 기관, 조직, 개인에 대하여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행위 검사, 조사, 검증 업무를 위한 정보, 자료를 제공해 주도록 요구한다.
4. 우편 및 특송 서비스 업체에 소포, 물품이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과 관련된 문서, 물품을 포함하고 있다고 여기는 근거가 있는 때, 검사하기 위하여 우편, 특송 경로를 통해 수출입되는 그 소포, 물품을 개장하도록 요구한다.
5. 기신호, 등신호, 신호탄, 경적, 화성기를 사용한다; 무기, 폭발물 및 호신용구의 관리,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기, 폭발물 및 지원용구를 사용한다.

6. 세관의 활동지역 밖에서, 관세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예방을 위한 세관감시 활동을 협력, 추진한다.

제90조.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행위처리에 있어서의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의 권한

1. 행정위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위반을 처리하고, 행정위반 예방대책을 추진하며, 행정위반 처리를 보장한다.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있는 경우, 관세지국 지국장, 관세국 소속 감시대 대장, 밀수조사단속국 소속 밀수방지감시대 대장 및 해양감시대 대장은 운송수단을 정지시키고, 사람을 일시 구속하며, 위반자를 압송할 권한이 있다. 위반자를 일시 구속하고, 압송하는 프로세스, 절차는 행정위반 처리법의 규정에 따른다.
2. 관세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가 형사책임을 물을 수준에 있다는 것을 발견한 때,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형사소송법 및 형사조직조사법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기소하고, 혐의자를 기소하며, 각종 조사활동을 수행할 권한을 갖는다.
3.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이 조에 규정된 각종 활동을 진행할 때 스스로의 결정에 관하여 법률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91조.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에 있어 관련 조직/법인 및 개인의 권리와 의무

1.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방지에 있어서, 관련 조직/법인, 개인은 다음 권리를 갖는다;
 - a) 관세기관에 위반사건과 관련된 정보, 서류문서 및 증거를 제공한다; 스스로의 합법적 권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하여 관세기관에 감정평가 해줄 것을 요청한다;
 - b)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행위에 관하여 정보 제공, 고발, 고소하는 때, 비밀, 생명을 보호받고, 법률의 규정에 따른 각종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2.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방지에 있어서, 관련 조직/법인 및 개인은 다음 의무

가 있다:

- a) 운송수단의 운전자, 탑승자들은 차량 정지, 수색 명령을 이행하여야 하고, 관세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서류, 입증서류, 문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운송수단의 운전자는 관세공무원이 수색할 수 있도록 화물창 지도를 제공하고, 운송수단위에 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곳으로 안내, 개장하여야 한다;
- b) 금융기관, 보험기관은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행위에 대한 조사, 검증 및 처리 활동업무를 위하여 관세기관이 요구하는 무역지급, 무역보험과 관련된 서류,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c)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 출국, 입국, 국경통과 운송수단과 관련된 조직/법인 및 개인은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행위의 조사, 검증 및 처리 활동업무와 관련된 정보, 서류, 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요구가 있는 때, 관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관세기관 주소지에 출두하여야 한다.

제92조.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을 위한 기술장비, 서비스시설의 구비 및 사용

- 1.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방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각종 업무기술 수단, 무기, 호신용구, 기 신호, 신호탄, 등 신호, 관찰장비, 스캐너, 생화학기술 장비, 기계장비, 전기장비, 전자장비 및 기타 각종 수단을 장비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무기, 호신용구의 장비, 사용은 무기, 폭발물 및 호신용구의 관리, 사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 2. 필요한 경우,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단속임무를 직접 수행하는 관세기관, 관세공무원은 기관, 조직/법인, 개인에게 인력 협력, 장비 지원,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지원된 장비가 손상될 경우, 관세기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VI장 관세정보와 수출입 물품 통계

제1목 관세정보

제93조. 관세정보

관세정보는 통관수속 수행; 수출, 수입 물품 통계; 관세업무 활동에 위협관리 적용; 통관 후 세무조사;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예방단속 업무 및 관세기관의 기타 업무 활동을 위하여 수집, 보관, 관리, 사용된다.

제94조. 관세정보 시스템

1. 관세정보시스템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정보시스템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 b)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인프라.
2. 관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에 관한 정보;
 - b) 수출, 수입, 국경통과 운송수단에 관한 정보;
 - c)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에 참여하는 조직/법인, 개인에 관한 정보;
 - d) 기타 관세기관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정보.
3. 관세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집중, 통일적으로 관리된다. 관세총국은 관세 전 분야의 정보, 데이터 업데이트, 통합을 기초로 관세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기술인프라를 구축, 관리 및 발전시킬 책임이 있다; 관세기관 밖의 조직/법인, 개인과의, 베트남 법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른 각국 관세기관 및 국제 조직/기구의 정보시스템과의 정보, 데이터 연결, 공유할 책임이 있다.

관세기관은 정보보안, 관세정보시스템에의 불법적 접근(Access) 행위차단 조치를 적용한다.

제95조. 국내 관세정보의 수집 및 제공

1. 관세기관은 다음 각 정보출처로부터의 정보 수집을 조직화한다:
 - a) 관세업무 활동;
 - b) 관련 부처, 부급 중앙기관;
 - c) 제조 및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조직/법인, 개인;
 - d) 기타 정보원(源).
2. 관세정보 수집 및 제공에 있어서 관세기관의 책임 및 권한:
 - a) 세관신고인을 위하여 정보를 접수하고, 제공한다;
 - b) 부처, 관련 부급 중앙기관에 속하는 업무 직능기관과 정보를 교환, 제공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시행한다;
 - c)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방법, 기술을 적용한다;
 - d) 조직/법인, 개인에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 a) 기타 관련 정보원(源)을 개발한다.
3. 관세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기관, 조직/법인, 개인의 권리와 책임:
 - a) 조직/법인, 개인은 관세기관에 본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관세정보를 제공해 주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 b) 관련 부처, 부급 중앙기관은 관세기관에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 c)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에 참여 또는 관련된 조직/법인, 개인은 이 법의 규정 및 관련 법률의 기타 규정에 따라 관세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4. 정부는 이 조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제96조. 외국 관세정보의 수집

1. 외국에서 수집되는 관세정보의 정보원은 다음을 포함한다:
 - a) 관세기관, 국가 및 영역(Territories)내 타 기관이 정보 교환 및 제공 지원 협력협정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 b)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에 따라 관련 국제기구가 제공하는 정보;
- c) 베트남 법률 및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회원국인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관세기관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물품 제조 및 물품 수출, 수입 활동에 참여하는, 또는 관련된 조직/법인, 개인의 정보.

2. 관세기관은 다음 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외국에서 정보를 수집한다:

- a) 수입물품의 원산지, 거래가격, 기준, 품질 확인;
- b) 수출, 수입 물품과 관련된 입증서류, 거래의 합법성 확인;
- c)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및 불법운반 행위, 또는 관세에 관한 법률 위반 기타 행위의 검증;
- d) 수출, 수입, 출국, 입국, 국경통과 활동에 참여하거나 관련된 자; 수출, 수입, 국경통과 물품; 수출, 수입, 국경통과 운송수단과 관련 있는 기타 정보의 검증.

제2목 수출입 물품 통계

제97조. 수출입 물품 통계활동

1. 수출입 물품 통계활동이라 함은 관세총국이 수행하는 수출, 수입 물품통계 정보를 수집, 처리, 종합, 분석, 예측, 보고, 보급, 보관하는 프로세스이다.
2. 수출입 물품 통계정보라 함은 통계활동의 산물이며, 수출입 물품 통계데이터와 그 통계데이터 분석보고서를 포함한다.
3. 관세총국은 각종 수출입 물품 통계책자를 출판한다.

제98조. 수출입 물품 통계보고

관세총국은 재정부, 정부에 매달 정기적으로 규정된 표 양식 체계에 따라 수출입 물품 통계정보를 보고하고, 물품 수출, 수입 상황에 대한 분석, 평가를 보고한다.

제Ⅶ장 관세에 대한 국가관리

제99조. 관세에 대한 국가관리 내용

관세에 대한 국가관리의 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1. 베트남 관세청 발전 전략, 기획,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한다;
2. 관세청에 관한 법률규범 문서를 발행하고 이행을 조직화한다;
3. 관세청에 관한 법률을 안내하고, 이행하며 홍보한다;
4. 관세청의 조직 및 활동에 관하여 규정한다;
5. 관세공무원을 교육, 훈련, 팀 빌딩시킨다;
6. 현대적 관세관리 연구, 과학응용 및 기술, 방법을 조직화한다;
7. 관세에 관한 국가통계를 작성한다;
8. 관세에 관한 법률위반을 감사, 검사, 이의제기 해결, 고발 및 처리한다;
9. 관세에 관한 국제협력을 한다.

제100조. 관세에 대한 국가관리기관

1. 정부는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의 통일을 기한다.
2. 재정부는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의 통일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정부 앞에 책임진다.
3. 부처, 부급 중앙기관은 해당 임무, 권한 범위에 있어서 관세에 관한 국가관리와 관련 재정 부와 협력할 책임이 있다.
4. 각급 인민위원회는 해당 임무, 권한 범위에 있어서 지방에서 관세에 관한 법률의 이행을 조직화할 책임이 있다.

제Ⅷ장 시행 조항

제101조. 제21/2012/QH13호 법률에 따라 일부 조항이 수정, 보충된 제78/2006/QH11호 조세관리법의 일부 조항 수정, 보충

1. 제4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납세자가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 우대제도 (AEO) 적용요건을 충분히 충족하면,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조세(국세)에 관한 각 절차 수행 시 우대제도를 적용한다.”
2. 제32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수출입 물품의 경우, 납세신고 서류제출 기한은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3. 제3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2. 수출입 물품의 경우, 납세신고의 보충신고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4. 제78조 제1항 제b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b) 통관 후 세무조사의 경우는 관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통관 후 세무조사 시, 탈세, 조세사기 징후가 있음을 발견하면, 통관 후 세무조사국 국장, 관세국 국장, 통관 후 세무조사지국 지국장은 이 법의 제X장 제4목에서 규정하는 각 조치의 적용을 결정할 권한이 있다;”
5. 제77조 제3항 제d호를 삭제한다; 제78조 제1항 제a호에서 “및 제d호”를 삭제한다; 제107조 제2항 제a호에서 “이 법의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주소지에서”를 삭제한다.
6. 제107조 제2항 제a호에서 “신고서 등록일로부터”를 수정하여, “통관일로부터”로 한다.

제102조. 제15/2012/QH13호 행정위반 처리법의 일부 조항 수정, 보충

1. 제122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행정절차에 따른 사람의 일시구금은 공공질서를 해하는,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또는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행위를 즉시 방지, 정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2. 제123조 제1항 전단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1. 공공질서를 해할, 타인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또는 이 법 제1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국경을 통한 물품의 밀수, 불법운반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근거가 있는 행위가 있을 경우, 권한 있는 아래 당사자가 행정절차에 따라 사람의 일시구금을 결정한다.”

제103조. 시행 효력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효력을 갖는다.

제29/2001/QH10호 관세법 및 관세법 중 일부를 수정, 보충하는 제42/2005/QH11호 법은, 이 법이 효력을 갖는 날로부터 효력이 종료된다.

제104조. 세부 규정

정부는 법에서 위임한 각 조, 각 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이 법은 2014년 6월 23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제XIII기 국회 제7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국회의장
응웬 싱 흥

〈부록 IV〉 베트남 수출·수입 세법

(제45/2005/QH11호, 2005. 6. 14)

1992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헌법 (2001년 12월 25일 제 10차 국회 제10회 의에서 51/2001/QH10호 의결에 따라 수정, 보완 됨)에 의거;
이 법률은 수출세, 수입세에 관해 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조정범위

이 법률은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규정이다. 국경지대 거주민의 국경을 통한 매매, 교환물품 및 기타 교환물품은 수출입물품으로 간주된다.

제2조. 과세대상

이 법률 제3조에 규정된 물품을 제외한 다음의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과세대상이다.

1. 베트남 국경을 통한 수출, 수입 물품
2. 국내시장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반입되는 물품

제3조. 비과세대상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비과세대상이다.

1. 베트남 국경, 국경관문을 빌려 이동되는 물품, 정부 규정에 따라 이전되는 물품
2. 인도적 원조물품, 무상 원조물품
3. 보세구역에서 외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외국에서 보세구역으로 수입되어 보세구역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보세구역에서 보세구역으로 반입되는 물품
4. 수출 시 국가자원세 과세대상에 속하는 석유가스 물품

제4조. 납세대상

이 법률의 제2조 규정에 따른 과세대상에 속한 수출, 수입 물품이 있는 법인, 개인은 수출세, 수입세 납세대상이다.

제5조. 용어 해석

이 법률에서, 아래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1. ‘보세구역’은 베트남 영토 내에 위치한 경제구역으로 지리적인 구역이 규정되어 있고 정부 수상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다. 보세구역과 외부구역 간의 매매, 교환 관계는 수출입 관계로 간주된다.
2. ‘자위를 위한 관세조치’는 국내생산에 심각한 피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기 위해 베트남에 과잉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조치이다.
3. ‘과잉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물품의 수량 또는 가액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또는 유사한 물품 또는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직접 경쟁물품과 비교하여 급격히 증가한 물품이다.
4. ‘종량세’는 수출, 수입 물품 단위당 일정한 금액으로 적용되는 세액이다.
5. ‘이동재산(이사화물)’은 베트남 내 또는 외국에서 거주를 종료하고 가져가거나 가져오는 개인, 가정, 법인의 생활, 업무에 필요한 용품을 칭한다.
6.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은 국경지대 거주민의 일상생활과 생산에 필요한 물품

이다.

제6조. 국제조약의 적용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이 이 법률에 규정된 수출세, 수입세에 관한 조항과 상치되는 경우, 해당 국제조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에 대한 세액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는 시기별로 국경지대 거주민의 매매, 교환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적용을 규정한다.

제2장 과세표준 및 세율

제8조. 과세표준, 과세방법 및 과세통화

1. 수출세, 수입세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물품의 실제 수출, 수입 수량, 과세가격, 백분율에 따른 세율이며, 종량세가 적용되는 물품의 과세표준은 세관신고서에 명시된 수출, 수입 물품의 실제 수량 및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종량세액이다.
2. 과세방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가격 및 과세시점 세율표에 기재된 품목별 세율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b) 종량세 적용 물품의 경우 수출세, 수입세 세액은 세관신고서에 기재된 품목별 실제 수출, 수입 수량을 과세시점에 물품 한 단위당 규정된 절대세액과 곱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통화는 베트남 동화(貨)이며, 외화납부가 허가된 경우 교환이 자유로운 외화로 납부해야 한다.

제9조. 과세가격 및 과세환율

1. 수출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계약에 따라 수출 국경관문에서 판매되는 가격이다.
2.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국제협약에 부합하고 계약에 따라 최초 수입 국경관문에서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이다.
3. 과세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베트남 동화(貨)와 외국통화 간 환율은 베트남 중앙은행이 과세 시점에 발표한 교환환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과세가격의 확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10조. 세율

1. 수출물품에 대한 세율은 수출세율표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2. 수입물품에 대한 세율은 우대세율, 특별우대세율, 일반세율을 포함한다.
 - a) 우대세율은 무역관계에서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 b) 특별우대세율은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 c) 일반세율은 베트남에 최혜국 지위를 부여하지 않거나 베트남에 대해 특별우대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 국가연합,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는 수입물품에 적용된다. 일반세율은 정부 규정에 상응하여 각 품목별 우대세율에 비해 그 70%를 넘지 않도록 규정된다.

제11조. 물품수입 시 자위, 반덤핑, 반보조금, 반차별을 위한 관세조치

이 법률 제10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과세 외에도, 수입물품에는 다음의 관세조치 가운데 하나가 적용되어야 한다.

1. 베트남으로 과도하게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세의 가중은 베트남으로의 외국물품 수입에 대한 자위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2. 베트남에 수입되는 덤핑물품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덤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3. 보조금이 지급되어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보조금 관세는 베트남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보조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4. 수입세에 차별대우가 있거나 기타 차별대우가 있는 국가, 국가연합 또는 영토지역으로부터 연원하여 베트남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반차별대우 관세는 국제무역상 최혜국대우 및 국가대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따른다.

제12조. 세율표, 세율에 대한 공포 권한

1. 정부는 과세물품 목록 및 각 물품에 대한 세율에 관한 수출세율표, 각 물품에 대한 과세물품 목록 및 우대세율에 관한 수입세율표; 자위를 위한 관세,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반차별대우를 국회 상무위원회에 제출하여 공포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 수상은 필요한 경우, 절대세액과 절대세액 수준을 적용하는 물품들을 결정한다.

2. 국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과세물품 목록 및 각 물품에 대한 세율에 관한 수출세율표, 각 물품에 대한 과세물품 목록 및 우대세율에 관한 수입세율표에 의거, 재무부장관은 정부가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각 물품에 관한 수출세, 수입세 세율적용 수준을 규정하며, 다음 각 원칙을 보장한다.

- a) 국회 상무위원회가 공포한 과세항목 목록 및 세율 범위에 부합한다.
- b) 국가예산 확충과 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 c)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선택, 조건, 기한 있는 국내 생산을 보호한다.

제3장 세액 신고 및 납세

제13조. 납세자의 책임

수출세, 수입세 납세자는 충실, 정확, 명백한 납세신고의 책임이 있으며 신고내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다. 세관신고서를 관세기관에 제출하고, 세액을 계산하고, 국가예산에 세액을 납부한다.

제14조. 과세 시점

수출세, 수입세 과세 시점은 납세자가 관세기관에 세관신고서를 등록하는 시점이다. 수출세, 수입세는 세율, 과세가격 및 과세시점에 베트남 국가은행이 고시하는 교환환율에 따른 과세환율에 의해 산정된다.

제15조. 납부 기한

1. 수출세, 수입세 납부 기한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a) 수출물품에 대한 납부 기한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다.
 - b) 수입물품이 소비물품인 경우 물품을 인수하기 전 세액을 완납해야 하며,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한 보증이 있는 경우 납부기한은 보증기한이나,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을 넘지 않는다. 보증인의 책임규정은 이 조 제2항 제b호에 따른다.
 - c) 수입물품이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물자, 원료인 경우, 납부기한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275일이다. 특별한 경우, 정부 규정에 따라 기업의 생산주기, 물자-원료 비축에 부합하여 275일보다 길어질 수 있다.
 - d) 일시수입-재수출 물품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의 경우, 납부기한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의 규정에 따른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기한 만료일로부터 15일이다.

d) 이 조 제1항 제c호 및 제d 호에 규정된 경우 외에 수입물품의 납부 기한은 납세자가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30일이다.

2. 다음의 두 가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납세자는 이 조 제1항 제c호, 제d호 및 제 a 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기한을 적용받는다.

a)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까지 최소 365일 이상 수출, 수입 활동을 영위하고 있으며 관세기관으로부터 무역사기, 탈세 행위가 없고, 미납세액 또는 미납벌금이 없으며, 법률 규정에 따라 재정보고 제도를 잘 집행하고 있다고 확인받은 경우

b) 신용기관 또는 신용기관법 규정에 따라 활동하고 있는 기타 기관이 납세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보증한 경우. 보증될 경우 납부 기한은 보증기간과 동일하나, 이 조 제1항 제c호, 제d호 및 제 a 호에서 규정한 각 기한을 넘지 못한다. 보증기간이 만료되거나 납부기한을 초과하는 경우, 보증기관은 납세자를 대신하여 미납세액 및 벌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납세자가 이 항에서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물품을 인수하기 전에 세액을 완납해야 한다.

제4장 면세, 감세, 환급 및 세액추징

제16조. 면세

다음 수출, 수입 물품의 경우, 수출세, 수입세가 면세된다.

1. 박람회, 전시회, 상품소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한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 일정기간 동안 업무 수행에 사용하기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되는 기계, 설비, 작업용구
2. 정부 규정에 따른 이동재산(이사화물)
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가입한 국제조약에 부합하는 정부 규정 한도에 따라 베트남 내에서 우대권, 외교면제를 향유하는 외국기관, 개인의 수출, 수입 물품.
4. 가공 계약에 따라 외국을 위해 가공 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베트남을 위

한 가공을 위해 외국에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

5. 출경, 입경하는 자에 대한 정부 규정에 따른 휴대품 면세기준에 속하는 수출, 수입 물품
6. 투자권고사업, 공적개발원조사업 투자계획의 고정자산 형성을 위한 수입물품. 다음을 포함한다:
 - a) 설비, 기계
 - b) 공장라인의 전용 운송수단 및 근로자 출퇴근용 운송수단
 - c) 이 항 제a호 및 제b호에 규정된 설비, 기계, 전용 운송수단와 함께 수입되는 부품, 부속 설비, 부분품, 예비부품, 비품, 금형, 악세서리
 - d) 이 항 제a호에 규정된 설비, 기계와 관계 있는 공장라인에 설치되는 설비, 기계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또는 부품, 부속설비, 부분품, 예비부품, 비품, 금형, 액세서리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물자
 - e)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건설물자
 - f) 호텔, 사무실, 임대아파트, 주택, 상업센터, 기술용역, 슈퍼마켓, 골프장, 여행단지, 체육단지, 오락여가단지, 진료병원시설, 교육, 문화, 금융, 은행, 보험, 회계, 자문용역 분야 투자사업계획을 위한 정부 규정 목록에 따른 최초 수입 설비물품.
이 항 제a호, 제b호, 제c호, 제d호 및 제 e 호에 각각 규정된 수입물품에 관한 수입세 면세는 투자규모 확장, 기술교체, 기술혁신의 경우에도 모두 적용된다.
7. 석유가스 활동 업무를 위한 수입물품. 다음을 포함한다.
 - a) 석유가스 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설비, 기계, 교체 부분품, 전용운송수단
 - b)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석유가스 활동에 필요한 물자
8. 과학연구 및 기술발전에 직접 사용되는 수입물품으로 국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기계, 설비, 부분품, 물자, 운송수단, 국내에서 아직 제공되지 않는 기술-재료, 과학 서적을 포함한다.
9. 투자권고 특별분야 영역목록 또는 경제-사회 조건이 특별히 열악한 지역목록에 속하는 사업계획의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물자, 부품은 생산 시작일로부터 5년 안에서 수입세가 면제된다.
10. 외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할 때 수입 원료, 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보세구역에서 생산, 가공, 재활용, 조립된 물품. 외국에서 수입 원료, 부품을 사용한 경우, 외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 시 그 물품을 구성하는 수입 원료, 부품에 대한 비율에 따라 수입세를 납부해

야 한다.

11. 정부 수상이 결정하는 기타 구체적인 경우

제17조. 면세 검토

다음의 경우에 속하는 수출, 수입 물품은 수출세, 수입세 면세 검토대상이다.

1. 국방, 안보, 교육 및 훈련 업무에 직접 전용되는 수입물품. 이 법률 제16조 제8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한 과학연구 업무에 직접 전용되는 수입물품.
2. 정부 규정 한도 내에서 외국 기관, 개인이 베트남 기관, 개인에게 기증하는 선물, 기증품, 견본, 또는 그 반대의 경우

제18조. 감세

관세기관의 감시 과정에서 수출, 수입 물품이 훼손, 분실되었으며 심사기관, 법인의 감정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감세가 검토된다.

감세비율은 물품의 실제 손상비율에 상응한다.

제19조. 환급

1. 다음의 각각 경우 납세자는 환급받을 수 있다.
 - a) 수입세를 납부한 수입물품이 세관의 감시하에 국경관문의 창고 및 보관 장소에 보관되어 있다가 외국으로 재수출되는 경우
 - b)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수출, 수입 물품이 실제로 수입, 수출되지 않은 경우
 - c) 수출세, 수입세를 납부한 물품보다 실제 수출, 수입이 적은 경우
 - d) 수출물품 생산을 위한 수입 원료, 물자가 수입세를 기납부한 경우
 - d) 이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된 면세대상에 속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시수입-재수출 또는 일시수출-재수입 물품으로 수출세, 수입세를 기납부한 경우
 - e) 수출세를 납부하고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해야 하는 경우

- g) 수입세를 납부하고 수입한 물품을 재수출해야 하는 경우
 - h) 수입물품이 투자사업 실현을 위해 일시수입-재수출 허가를 받은 법인, 개인의 기계, 설비, 용구, 운송수단으로서 건설, 조립공정, 생산 업무에 사용되거나, 기타 목적으로 수입세를 기납부한 경우
2. 세관신고, 세액계산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 오류가 발생한 날로부터 오류를 검사 발견한 날까지 365일을 넘지 않으면 과납세액에 대해 환급된다.

제20조. 환급 책임 및 기한

1. 환급심사 국가기관은 충분한 환급신청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대상자에게 환급할 책임이 있다. 서류가 충분하지 않거나 환급 관련 법률에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 환급대상자의 환급신청 서류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환급심사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서류보완 요청문서를 송부해야 한다.
2. 이 조 제1항의 규정된 기한을 초과하도록 환급이 지체되는 사유가 환급심사 담당 국가기관의 실수에 있으면, 환급하여야 할 금액 외에 환급 지연되는 날로부터 환급되는 날까지 환급시점 무역은행 대출이자율 수준에 따라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제21조. 세액 추징

이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규정된 면세, 면세 검토된 물품이 있는 납세자가 나중에 면세, 면세검토의 근거가 된 목적과 다르게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적정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이 조에 규정된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경우, 추징세액 계산의 근거 및 추징액의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제5장 민원제기 및 위반처리

제22조. 민원제기 및 민원해결

납세자는 관세기관의 세액, 벌금액, 처벌형식에 관한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세액, 벌금을 납부하고 처벌형식을 따라야 하나 동시에 민원, 고소에 관한 법률규정에 따라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고소할 수 있다.

제23조. 납세자에 대한 세액관련 위반처리

납세자가 이 법률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1. 규정된 납부 기한 만료일 또는 세액관련 위반처리결정에 명시된 기한 만료일을 지나 세액,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 그 세액과 벌금 납부이외에도 연체된 금액의 0.1%(1,000분의 1)가 연체일자에 따라 매일 가산된다. 연체일이 90일을 넘는 경우, 이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조치를 당한다.
2. 이 법률의 규정에 맞는 세관신고, 납세를 하지 않는 경우, 사안의 성질과 위반 정도에 따라 조세에 관한 행정위반으로 처리된다.
3. 허위 납세신고, 탈세의 경우, 이 법률 규정에 따라 그 세액의 납부 외에도 사안의 성질과 위반 정도에 따라 사기세액의 1 내지 5배에 상응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4. 조세에 관한 처리결정에 따른 세액,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조치의 시행이 강제된다.
 - a) 세액,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의 은행, 신용기관, 국고기관에서 인출하여 송금한다. 은행, 신용기관, 국고기관은 관세기관 또는 국가심의회기관의 조세에 관한 처리결정에 따라 국고에 세액,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의 계좌에서 금액을 출금할 책임이 있다.
 - b) 세관신고서가 등록된 관세기관은 미납된 세액, 벌금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물품을 임시 압류하거나 재산을 유치할 수 있다. 관세기관이 물품을 임시 압류하거나 재산을 유치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도 납세자가 세액,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세기관은 세액, 벌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 또는 재

산을 경매할 수 있다.

c) 관세기관은 납세자가 해당 세액, 벌금을 납부할 때까지 납세대상자의 물품에 대한 수 입수속을 하지 않는다.

5. 사기 또는 탈세 행위가 발견된 경우, 관세기관은 사기, 탈세가 발견된 시점부터 이전 5년 간 해당 행위에 대한 세액을 추징할 책임이 있다. 오류가 있었던 경우, 관세기관은 오류가 확인된 시점으로부터 이전 365일간 해당 사안에 대한 세액을 추징 또는 환급할 책임이 있다. 세관신고서를 등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세자가 작은 오류들을 발견하여 자발적으로 부족세액을 국고에 납부하는 경우, 각종 처벌이 적용 면제된다.
6. 고액 탈세 또는 탈세 행위로 행정위반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자가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이 뒤따른다.

제24조. 세관공무원의 위법 또는 관련 있는 기타 개인에 대한 처리

1. 세관공무원 또는 관련 있는 기타 개인이 직무, 권한을 이용하여 세액을 점용하거나 탈취한 경우, 점용하거나 탈취한 세액을 전부 국고에 배상하고, 위법의 성질과 정도를 감안하여 법률 규정에 따라 규율처리, 행정처벌 또는 형사책임이 수반된다.
2. 세관공무원의 책임정신이 부족하여 고의적으로 이 법률의 위반 행위자를 묵과하거나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기타 행위가 있는 경우, 위반의 성질, 정도에 따라 규율처리, 행정처벌, 또는 형사책임이 수반된다. 사안의 성질과 정도를 감안하여 경고, 행정처벌, 형사처벌 될 수 있다.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률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제6장 실행조직

제25조. 정부의 권한 및 책임

정부는 수출세, 수입세 징수업무의 관리를 통일하고, 이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및 제 23조의 각 조에 규정된 면세, 면세검토, 감세검토, 환급, 추징세

및 조세관련 위반처리의 권한과 절차를 규정한다.

제26조. 재무부장관 및 성, 중앙직할시 인민위원장의 책임

1. 재무부장관은 수출, 수입 물품에 대한 수출세, 수입세 징수의 조직, 관리를 지도할 책임이 있다.
2. 성, 중앙직할시 인민위원장은 지방의 수출세, 수입세 징수업무 조직을 조정 지도할 책임이 있다.

제27조. 관세기관의 책임

관세기관은 이 법률과 관세청법의 규정에 따라 세액을 검사 및 징수할 책임이 있다.

제7장 시행 조항

제28조. 시행효력

1.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효력을 갖는다.
2. 1991년 수출세, 수입세법, 1993년 수출세, 수입세법 수정법, 1998년 수출세, 수입세법 일부 조항 수정법을 폐지한다. 국내투자권고법 제25조 수출세, 수입세관련규정, 베트남 외 국민투자법 제47조, 과학기술법 제42조 제 2항 및 석유가스법 제34조를 폐지한다.
3. 기발급받은 투자허가서, 투자우대증명서의 권고에 따라 이 법률의 수출세, 수입세 우대세율보다 높은 우대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투자사업의 경우, 해당 우대세율을 계속 적용한다. 투자허가서, 투자우대증명서에 따른 우대세율이 이 법률의 수출세, 수입세 우대세율보다 낮은 경우 이 법률의 우대세율을 남은 우대기간 동안 적용받을 수 있다.

제29조. 상세규정 및 시행안내

정부는 이 법률을 상세히 규정하고 시행을 안내한다.

〈부록 V〉 베트남 소비세법

Law on Excise Tax (No. 27/2008/QH12)

Pursuant to the 1992 Constitution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which was amended and supplemented under Resolution No. 51/2001/QH10;

The National Assembly promulgates the Law on Excise Tax.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

This Law provides for taxable and non-taxable objects, and payers, bases, refund, deduction and reduction of excise tax.

Article 2. Taxable objects

1. Goods:

- (a) Cigarettes, cigars and other tobacco preparations used for smoking, inhaling, chewing, sniffing or keeping in mouth;
- (b) Liquor;
- (c) Beer;
- (d) Under-24 seat cars, including cars for both passenger and cargo transportation with two or more rows of seats and fixed partitions between

passenger holds and cargo holds;

- (e) Two- and three-wheeled motorcycles of a cylinder capacity of over 125 cm³;
- (f) Aircraft and yachts;
- (g) Gasoline of all kinds, naphtha, reformed components and other components for mixing gasoline;
- (h) Air-conditioners of 90,000 BTU or less;
- (i) Playing cards;
- (j) Votive gilt papers and votive objects.

2. Services:

- (a) Dance halls;
- (b) Massage parlors and karaoke bars;
- (c) Casinos; prize-winning video games, including jackpot and slot games and games on similar machines;
- (d) Betting;
- (e) Golf business, including the sale of membership cards and golf playing tickets;
- (f) Lottery business.

Article 3. Non-taxable objects

Goods specified in Clause 1, Article 2 of this Law are not subject to excise tax in the following cases:

- 1. Goods which are directly exported by producers or processors, or which are sold or entrusted by these producers or processors to other business establishments for export;
- 2. Imported goods, including:
 - (a) Goods as humanitarian aid or non-refundable aid; gifts for state agencies, political organizations, socio-political organizations, socio-political-professional organizations, social organizations, socio-professional organizations or people's armed forces units; and donations or gifts for individuals in Vietnam within the quotas prescribed by the Government;

- (b) Goods transited or transported via Vietnamese border gates or borders, and goods transported to and from border gates under the Government's regulations;
 - (c) Goods temporarily imported for re-export and temporarily exported for re-import which are not subject to import duty or export duty within the time limit specified in the law on import duty and export duty;
 - (d) Personal effects of foreign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within diplomatic immunity quotas; personal belongings within duty-free luggage quotas; and goods imported for duty-free sale under law;
3. Aircraft and yachts used for commercial transportation of cargos, passengers and tourists;
 4. Ambulances; prison vans; hearses; cars designed with both seats and standing places for transporting 24 or more people; cars running in recreation, entertainment and sports areas which neither are registered for circulation nor move on roads;
 5. Goods imported from abroad into non-tariff areas, goods sold from the inland into non-tariff areas for use only in non-tariff areas, and goods traded between non-tariff areas, except under-24 seat cars.

Article 4. Taxpayers

Excise taxpayers include producers and importers of goods and providers of services which are subject to excise tax.

Exporters that purchase excise tax-liable goods from producers for export and do not export but sell them domestically shall pay excise tax.

Chapter II TAX BASES

Article 5. Tax bases

Excise tax bases include the taxed price of a taxable goods or service and the tax rate. The payable excise tax amount is the excise taxed price multiplied by the excise tax rate.

Article 6. Taxed price

The excise taxed price of a goods or service is the goods selling price or the service charge, exclusive of excise tax and value-added tax.

Specifically:

1. For domestically produced goods, it is the selling price set by the producer;
2. For imported goods, it is the import-duty calculation price plus the import duty.
For imported goods eligible for import duty exemption or reduction, it is exclusive of the exempted or reduced import duty amount;
3. For processed goods, it is the taxed price of the goods sold by processing-ordering establishment or the selling price of the product of the same or similar kind at the same time with the time of goods sale;
4. For goods sold on installment or deferred payment, it is the one-off selling price of such goods, exclusive of the installment or deferred payment interest;
5. For services, it is the service charge set by the service provider. The service provision in a number of cases is specified as follows:
 - (a) For golf business, it is the selling price of the membership card or golf-playing ticket, inclusive of the golf playing charge and deposit (if any);
 - (b) For casino, prize-winning video game and betting business, it is the turnover from such business minus the prize already paid to customers;
 - (c) For dance hall, massage parlor and karaoke bar business, it is the turnover from such business.
6. For goods and services used for barter, internal consumption or donation, it is

the excise taxed price of the goods or service of the same or similar kind at the time of barter, internal consumption or donation,

Excise taxed prices of goods and services specified in this Article are inclusive of additional charges and revenues (if any) enjoyed by business establishments.

Taxed prices are calculated in Vietnam dong. In case taxpayers have foreign-currency turnover, foreign-currency amounts must be converted into Vietnam dong at the average exchange rate on the inter-bank foreign currency market, announced by the State Bank of Vietnam at the time of turnover generation, for determination of taxed prices.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is Article.

Article 7. Tax rates

Excise tax rates for goods and services are specified in the Excise Tariff below:

EXCISE TARIFF

| No. | Goods or Services | Tax rate(%) |
|-----|---|--|
| 1 | Goods | |
| 1 | Cigarettes, Cigars and other tobacco preparations | 65 |
| 2 | Liquor | |
| | (a) Of 20° proof or higher | |
| | - From January 1, 2010, through December 31, 2012 | 45 |
| | - From January 1, 2013 | 50 |
| | (b) Of under 20° proof | 25 |
| 3 | Beer | |
| | From January 1, 2010, through December 31, 2012 | 45 |
| | From January 1, 2013 | 50 |
| 4 | Under-24 seat cars | |
| | (a) Passenger cars of 9 seats or fewer, except those specified at Points 4e, 4f and 4g of this Article | |
| | - Of a cylinder capacity of 2,000cm ³ or less | 45 |
| | - Of a cylinder capacity of between over 2,000cm ³ and 3,000cm ³ | 50 |
| | - Of a cylinder capacity of over 3,000cm ³ | 60 |
| | (b) Passenger cars of between 10 seats and under 16 seats, except those specified at Points 4e, 4f and 4g of this Article | 30 |
| | (c) Passenger cars of between 16 seats and under 24 seats, except those specified at Points 4e, 4f and 4g of this Article | 15 |
| | (d) Cars for both passenger and cargo transportation, except those specified at Points 4e, 4f and 4g of this Article | 15 |
| | (e) Cars running on gasoline in combination with electricity or bio-fuel, with gasoline accounting for not more than 70% of the used fuel | 70% of the tax rate for cars of the same kind as specified at Points 4a, 4b, 4c and 4d of this Article |
| | (f) Cars running on bio-fuel | 50% of the tax rate for cars of the same type as specified at Points 4a, 4b, 4c and 4d of this Article |

| | | |
|----|---|----|
| | (g) Electrically-operated cars | |
| | - Passenger cars of 9 seats or fewer | 25 |
| | - Passenger cars of between 10 seats and under 16 seats | 15 |
| | - Passenger cars of between 16 seats and under 24 seats | 10 |
| | - Cars for both passenger and cargo transportation | 10 |
| 5 | Two-and three-wheeled motorcycles of a cylinder capacity of over 125cm ³ | 20 |
| 6 | Aircraft | 30 |
| 7 | Yachts | 30 |
| 8 | Gasoline of all kinds, naphtha, reformade components and other components for mixing gasoline | 10 |
| 9 | Air conditioners of 90,000 BTU or less | 10 |
| 10 | Playing cards | 40 |
| 11 | Votive gilt papers and votive objects | 70 |
| II | Services | |
| 1 | Dancehalls | 40 |
| 2 | Massage parlors and karaoke bars | 30 |
| 3 | Casinos and prize - winning video games | 30 |
| 4 | Betting | 30 |
| 5 | Golf business | 20 |
| 6 | Lottery business | 15 |

Chapter III

TAX REFUND, DEDUCTION AND REDUCTION

Article 8. Tax refund and deduction

1. Excise taxpayers may have the paid tax amounts refunded in the following cases:
 - (a) Goods temporarily imported for re-export;
 - (b) Goods which are raw materials imported for export production and processing;
 - (c) Finalization of overpaid tax amounts upon merger, consolidation, separation, split-up, dissolution, bankruptcy, ownership change, enterprise transformation or operation termination;

(d) Upon issuance of tax refund decisions by competent agencies under law, and cases of excise tax refund under treaties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The excise tax refund under Points a and b of this Clause is applicable only to actually exported goods.

2. Taxpayers that produce excise taxable goods from raw materials for which excise tax has been paid and that can produce lawful documents on tax payment may have the tax amounts paid for raw materials deducted upon the determination of payable excise tax amounts at the stage of production.

The Government shall specify this Article.

Article 9. Tax reduction

Taxpayers that produce excise taxable goods and face difficulties caused by natural disasters or unexpected accidents are entitled to tax reduction.

The tax reduction level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actual extent of damage caused by natural disasters or unexpected accidents but must neither exceed 30% of the payable tax amount in the year the damage occurs nor exceed the balance between the value of damaged assets and the received compensation (if any).

Chapter IV

IMPLEMENTATION PROVISIONS

Article 10. Effect

1. This Law takes effect on April 1, 2009;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liquor and beer will take effect on January 1, 2010.
2. To annul Excise Tax Law No. 05/1998/QH10; Law No. 08/2003/QH11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Excise Tax Law; and Article 1 of Law No. 57/2005/QH11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Excise Tax Law and Value-Added Tax Law, except the provisions applicable to liquor and beer which continue to be effective through December 31, 2009.

Article 11. Implementation guidance

The Government shall detail and guide the articles and clauses of this Law as assigned, and guide other necessary provisions of this Law to meet state management requirements.

This Law was passed on November 14, 2008, by the XIIth National Assembly of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t its 4th session.

Chairman of the National Assembly
NGUYEN PHU TRONG

〈부록 VI〉 물품 라벨링 규정¹³⁴⁾

DECREE No. 89/2006/ND-CP OF AUGUST 30, 2006,
ON LABELING OF GOODS

THE GOVERNMENT

Pursuant to the December 25, 2001 Law on 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Pursuant to the June 14, 2005 Commercial Law;

Pursuant to the April 27, 1999 Ordinance on Protection of Consumer Interests;

Pursuant to the December 24, 1999 Ordinance on Goods Quality;

At the proposal of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DECREES: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Article 1. Scope of regulation

1. This Decree provides for contents, ways of presentation and state management of labels of goods circulated in Vietnam, exported and imported goods.
2. The following goods shall not be regulated by this Decree:
 - (a) Immovables;
 - (b) Goods temporarily imported for re-export; goods temporarily imported for re-export after participation in fairs or exhibitions; transited goods, goods transported from border gate to border gate;

134) 베트남 관세청(www.customs.gov.vn)에서 발췌한 영문 해석본임. 본 영문 본은 참조용일 뿐 법적 효력이 없고, 언제든 원 법령에 개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현행 법령 재확인 및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함

(c) Gifts, presents; personal effects of persons on entry and exit; moving property.

Apart from the objects specified at Points a, b and c of this Clause, depending on the market development, the state management agency in charge of goods labeling shall propose additional ones.

Article 2. Subjects of application

This Decree shall apply to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manufacturing and trading in goods in Vietnam;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exporting and importing goods.

Article 3. Interpretation of terms

1. Goods label means written, printed, drawn or photocopied words, drawings or images which are stuck, printed, pinned, cast, embossed or carved directly on goods or their commercial packings or on other materials attached to goods or their commercial packings.
2. Labeling of goods means the presentation of necessary and principal contents about goods on their labels in order to help consumers identify the goods and serve as the basis for purchasers to select, consume and use such goods, and for manufacturers and traders to advertise their goods, and for functional agencies to conduct inspection and supervision.
3. Original label of goods means the initial label attached to goods.
4. Supplementary label means a label showing compulsory contents of the original label of goods translated from a foreign language into Vietnamese and additional compulsory contents in Vietnamese as required by law which do not yet appear on the original label.
5. Commercial packing of goods means packing containing goods and circulated together with such goods.

Commercial packings of goods include holding packings and exterior packings:

- (a) Holding packing means packing in direct contact with and directly holding goods, forming the shape of goods, or tightly covering goods by their shape;

- (b) Exterior packing means packing used to cover one or several units of goods contained in holding packings.
6. Circulation of goods means activities of displaying, transporting or storing goods in the process of goods sale and purchase, except the transport of goods by import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from the border gate to a storehouse.
 7. Name and address of organization or individual responsible for goods means name and address of manufacturing or import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or agent according to the business registration of the subjects stipulated in Article 14 of this Decree.
 8. Quantity of goods means the quantity of goods expressed in net weight, net volume, actual size or the count of goods.
 9. Date of manufacture means the point of time by which the manufacture, processing, assembly, bottling, packaging or another activity is completed as the last finishing stage of the goods.
 10. Expiry date means the point of time beyond which the goods shall not be permitted for circulation.
 11. Preservation period means the duration beyond which the goods shall not assure its original quality and usage value.
 12. Origin of goods means the country or territory where the whole goods is manufactured or the final processing stage is carried out for goods the manufacturing process of which involves the participation of many countries and/or territories.
 13. Ingredients of goods means materials, including also additive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goods and existing in finished products, even when the form of such materials has been altered.
 14. Ingredient quantity means the quantity of each kind of material, including additives, used for the manufacture of the goods.
 15. Instructions on use, preservation means information about the use, necessary conditions for use and preservation of the goods; hazard warnings; and ways of dealing with hazardous incidents.

Article 4. Application of treaties

In case treaties to whic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contain provisions different from those of this Decree, the provisions of such treaties shall apply.

Article 5. Goods which require labels

1. Domestically circulated goods, imported and exported goods must have labels presented under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except for cases specified in Clauses 2, 3 and 4 of this Article.
2. Goods which do not require labels:
 - (a) Goods which are raw and fresh foodstuffs, unpacked processed foodstuffs for sale directly to consumers;
 - (b) Goods which are unpacked fuels or materials (agricultural, aquatic or mineral), construction materials (bricks, tiles, lime, sand, rock, cement, colored earth, mortar, commercial concrete mixtures), scraps (discharge from production and business) for direct sale to consumers as agreed upon.
3. In case foreign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that import Vietnamese goods request the labeling of goods as stipulated in contracts for goods sale and purchas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ir requests, export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shall comply with such requests as contracted, provided that such requests do not lead to misunderstanding of the substance of the goods and violate the laws of Vietnam and importing countries.
4. Goods in the domains of security and defense; goods which are radioactive substances, goods used in emergency circumstances to overcome disaster consequences, epidemics; means of transport by rail, water or air; and goods which are confiscated by state agencies and put up for auction or liquidation shall be subject to separate regulations.

Specialized management ministries shall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coordinate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issuing

regulations on labeling of goods specified in this Clause.

Article 6. Position of goods labels

1. Goods labels must be attached to goods or commercial packings thereof in a position where the compulsory contents of goods labels can be easily and fully noticeable without requiring detachment of the goods' details or components.
2. In case it is disallowed or impossible to open exterior packings, labels containing all compulsory contents must be attached to exterior packings.
3. If compulsory contents cannot be fully presented on a label, then:
 - (a) Contents, including name of goods; name of organization or individual responsible for goods; quantity; date of manufacture; and origin of goods, must be shown on the label;
 - (b) Other compulsory contents must be presented in documents supplied together with the goods and the place where such information is presented must be indicated on the goods labels.

Article 7. Size of goods label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sponsible for labeling goods shall determine by themselves the size of goods labels and, however, must ensure that such labels show all compulsory contents specified in Articles 11 and 12 of this Decree, which are easily readable by naked eyes.

Article 8. Colors of letters, signs and images shown on goods labels

Colors of letters, numerals, drawings, images, marks and signs shown on goods labels must be clear. For compulsory contents as required, the color of letters and numerals must contrast with the label's background color.

Article 9. Languages used on goods labels

1. Compulsory contents of goods labels must be in Vietnamese, except the case specified in Clause 4 of this Article.
2. For goods domestically manufactured and circulated, their labels, apart from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1 of this Article, may contain information in another language. Contents in another language must be similar to those in Vietnamese. The size of letters in another language must not be bigger than that of contents in Vietnamese.
3. If labels of goods imported into Vietnam do not contain or fully contain compulsory contents in Vietnamese, they shall be kept together with supplementary labels showing compulsory information in Vietnamese. Contents in Vietnamese must be similar to those of the original label.
4. The following contents may be presented in other languages of Latin origin:
 - (a) International names or scientific names of medicines for humane use, in case there are no corresponding Vietnamese names;
 - (b) International names or scientific names enclosed with chemical formulas or chemical composition formulas;
 - (c) International names or scientific names of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of goods, in case they cannot be translated into Vietnamese or their Vietnamese translations are meaningless;
 - (d) Names and addresses of foreign manufacturing or franchising enterprises.

Article 10. Responsibility for goods labeling

Contents shown on goods labels, including supplementary labels, must be truthful, clear, precise and correctly reflect the substance of the goods.

1. For goods manufactured, assembled, processed or packaged in Vietnam for domestic circulation, their manufactur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be responsible for goods labeling.
2. For goods manufactured or processed in Vietnam for export, expor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be responsible for goods labeling.

In case goods cannot be exported and are returned for circulation in the countr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before putting such goods into circulation, label them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3. For goods imported into Vietnam with original labels unconformabl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Decree, impor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make supplementary labels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 3, Article 9 of this Decree before putting such goods into circulation together with their original labels.

Chapter II

CONTENTS AND WAYS OF LABELING OF GOODS

Article 11. Compulsory contents which must be shown on goods labels

1. Goods labels must show the following information:
 - (a) Name of goods;
 - (b)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zation or individual responsible for the goods;
 - (c) Origin of goods.
2. Apart from the information specifi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depending on the substance of each kind of goods, compulsory contents stipulated in Article 12 of this Decree and relevant specialized laws must be shown on labels.

Article 12. Contents which must be shown on label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goods:

1. Food: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2. Foodstuff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and safety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 Drinks (excluding alcohol):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and safety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4. Alcohol:

- (a) Volume;
- (b) Ethanol content;
- (c) Instructions on preservation (for wines).

5. Cigarette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6. Food additive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7. Medicines for human use: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conditions).
8. Vaccines, biologicals for human use: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conditions).
9. Pharmaceutical material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Instructions on preservation (conditions).
10. Medical supplies and equipment: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Composition or technical specifications;
 - (e)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conditions).
11. Cosmetic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2. Chemicals for domestic human use: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and health information,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3. Feed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4. Veterinary drugs, vaccines and biologicals for animal health: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5. Veterinary drugs, biologicals for use in fishery: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6. Plant protection drug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gredient quantities;
 - (e)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7. Plant seed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8. Animal seed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19. Aquatic seed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20. Children's toys: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d) Instructions on use.
21. Textile, garment, leather and footwear products:
- (a) Composition or quantitative compositions;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22. Plastic and rubber products: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Composition;
 - (d) Technical specifications;
 - (e)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23. Paper, cardboard, carton: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Technical specifications.
24. Teaching and learning aids:
- (a) Quantity;
 - (b) Technical specifications.
25. Political, economic, cultural, scientific, educational and art publications:
- (a) Publisher (manufacturer), printer;
 - (b) Name of author or translator;
 - (c) Publishing permit;
 - (d) Technical specifications (size, number of pages).
26. Musical instruments:
- Technical specifications.
27. Sport and physical training tools: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Composition;
 - (d) Technical specifications;
 - (e) Use instructions.
28. Wood furniture: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29. Porcelain, ceramic and glass products: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Use instructions, preservation instructions.

30. Fine arts and handicrafts: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1. Domestic metal appliances: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2. Gold, silver, gems:

- (a) Quantity;
- (b) Quantitative composition or technical specifications.

33. Labor protection, fire prevention and fight equipment: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Composition;
- (e) Technical specifications;
- (f)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g)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4. Electric and electronic products: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Technical specifications;
- (d)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e)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5. Informatic, communication, pos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 (a) Year of manufacture;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6. Machines, mechanical equipment: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Technical specifications;
 - (d)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e)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7. Measuring and testing machines, equipment and devices: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Technical specifications;
 - (d)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e)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38. Metallurgical products:
- (a) Quantity;
 - (b) Component quantities;
 - (c) Technical specifications.
39. Fishing gear:
- (a) Composition;
 - (b) Technical specifications.
40. Cars:
- (a) Model;
 - (b) Self weight;
 - (c) Tonnage;
 - (d) Vehicle identification number;
 - (e) Number of certificate of type approved;
 - (f) Year of manufacture.
41. Mopeds, motorcycles:
- (a) Model;
 - (b) Self weight;
 - (c) Cylinder capacity;
 - (d) Number of certificate of type approved;
 - (e) Year of manufacture.
42. Special-use vehicles:

- (a) Model;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Year of manufacture.
43. Bicycles:
- (a) Year of manufacture;
 - (b) Technical specifications.
44. Spare parts of means of transport:
- (a) Year of manufacture;
 - (b) Technical specifications.
45. Construction and interior decoration materials:
- (a) Quantity;
 - (b) Technical specifications;
 - (c) Month of manufacture;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46. Petroleum products:
- (a) Quantity;
 - (b) Composition;
 - (c)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d)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47. Detergents:
- (a) Quantity;
 - (b) Month of manufacture;
 - (c)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 (d) Hygien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e) Instruction on use.
48. Chemical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Composition or composition quantities;
 - (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49. Fertilizer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Composition or composition quantities;
- (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50. Industrial explosives:

- (a) Quantity;
- (b) Date of manufacture;
- (c) Expiry date;
- (d) Composition or quantitative composition;
- (e)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 (f) Instructions on use and preservation.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assume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and coordinate with specialized management ministries in, amending and supplementing compulsory contents of goods labels.

Article 13. Names of goods

Names of goods shown on labels shall be given by goods manufacturing or trading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Names of goods must not lead to misunderstanding about the substance and uses of goods.

In case the name of an ingredient is used as the name or part of the name of the goods, the quantity of such ingredient must be shown, except for the case specified in Clause 4, Article 18 of this Decree.

Article 14. Names and addresse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sponsible for goods

Names and addresses of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sponsible for goods shall

be shown specifically as follows:

1. For domestically manufactured goods, their labels must show the name of the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the address of the manufacturing establishment.
2. For goods imported for circulation in Vietnam, their labels must show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mport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3. For goods imported into Vietnam by organizations or individuals acting as sale agents directly for foreign traders, their labels must show the name and address of the manufactur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the name and address of the organization or individual acting as agents to sell such goods.
4. For goods franchised or permitted by another organization or individual, their labels must, apart from complying with the provisions of Clauses 1, 2 and 3 of this Article, additionally show the name and address of the franchising or permitting organization or individual.

Article 15. Quantity of goods

1. For goods with their quantities expressed in units of measurement, such units of measurement must comply with the provisions of the Vietnamese law on measurement.
2. For goods with their quantities expressed in quantity, such quantity must be expressed in cardinal numbers.
3. In case there are different units of goods contained in a commercial packing, the quantity of each unit of goods and the aggregate quantity of all units of goods or the quantity of each unit of goods and the number of units of goods must be shown.
4. The ways of presenting goods quantities are stipulated in Appendix I to this Decree.

Article 16. Date of manufacture, expiry date and preservation period

1. The date of manufacture, expiry date and preservation period of goods shall be presented in the order of date, month and year according to the calendar year.

Each number indicating the date, month or year shall consist of two numerals; the number indicating the year may consist of four numerals. The numbers indicating the date, month and year of a point of time must be presented on the same line.

In case the month of manufacture is required to be shown, it shall be shown in the order of month and year according to the calendar year.

In case the year of manufacture is required to be shown, the number indicating the year shall consist of four numerals indicating the year according to the calendar year.

2. For goods the labels of which must contain such compulsory contents as date of manufacture and expiry date or date of manufacture and preservation period as stipulated in Article 12 of this Decree, if such labels have shown the date of manufacture as stipul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the expiry date and preservation period shall be permitted to be expressed in a length of time starting from the date of manufacture.

3. Goods with their points of time shown in ways different from those stipulated in Clause 1 of this Article are listed in Appendix II to this Decree.

Article 17. Origin of goods

Origin of goods shall be shown as follows: The words “Produced at” or “Manufactured at” or the word “origin” shall be followed by the name of the country or territory where the goods are made.

For goods manufactured in Vietnam for domestic circulation, if the address of the place where the goods are manufactured has been shown, the origin of goods shall not be required to be shown.

Article 18. Ingredients, ingredient quantities

1. Ingredients to be shown shall include names of materials, including additives which a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goods and exist in finished products, even when the form of such materials has been altered.

If names of ingredients are shown on labels of goods for the purpose of attracting attention to the goods, the quantities of such ingredients must be shown.

2. Ingredient quantities to be shown shall include ingredients together with the quantity of each ingredient.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tate of goods, ingredient quantity shown may be the weight of such ingredient per unit of product or one of these ratios: weight to weight; weight to volume; volume to volume, percentage of weight; or percentage of volume.

3. For certain kinds of goods, the presentation of their ingredients and ingredient quantities shall be as follows:

- (a) For foodstuffs, their ingredients must be presented in the order of high to low weight;

For additives, the name of the category of additives and the name of the additive and international code (if any) must be shown; for additives which are flavorings, sweeteners or colorings, apart from the above-mentioned contents, whether such additives are “natural” or “synthetic” must be indicated;

- (b) For medicines for human use, vaccines, medical bio-products, biologicals, veterinary drugs and plant protection drugs,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active elements must be shown;

- (c) For cosmetics, their ingredients, including additives, must be shown;

- (d) For domestic metal appliances and articles created from a principal material which determines their usage value, the names of ingredients of the principal material shall be shown together with the name of the goods but the goods'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are not required to be shown.

4. Ingredients or ingredient quantities of goods which are shown in ways different from those stipulated in Clause 3 of this Article are included in Appendix III to

this Decree.

Article 19. Technical specifications, hygiene and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1. For electric and electronic goods, machines and equipment, their basic technical specifications must be shown.
2. Medicines for human use, vaccines, medical bio-products, biologicals, veterinary drugs and plant protection drugs, the following must be shown:
 - (a) Indications, uses and contraindications (if any) of medicines;
 - (b) Registration number, manufacture lot batch, preparation form and packing specifications;
 - (c) Signs which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each kind of medicine according to current regulations.
3. For ingredients or substances in compound ingredients of goods of special categories which contain preservatives with prescribed dosage and included on the list of those which may be allergic or harmful to humans, animals and the environment, the names of preservatives accompanying these ingredients must be shown.
4. For goods or goods ingredients which have been x-rayed or genetically modified, their labels shall be presented in accordance with treaties to which Vietnam is a contracting party.
5. Technical specifications, information and warnings on hygiene and safety of goods which are presented in ways different from those stipulated in Clauses 2 and 3 of this Article are included in Appendix IV to this Decree.

Article 20. Other contents of goods label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responsible for goods may print other contents on goods labels. Such additional contents must not contravene the laws and must be truthful, precise and true to the substance of goods, not conceal or lead to misunderstanding of the compulsory contents of the labels.

Chapter III
STATE MANAGEMENT RESPONSIBILITIES FOR GOODS LABELS

Article 21. Responsibilities of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take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for performing the unified state management of goods labeling nationwide with the following specific tasks:

1. Drafting and submitting to competent state agencies for promulgation or promulgating according to its competence legal documents on goods labeling;
2. Disseminating and propagating policies and laws, organizing professional guidance and training in goods labeling.
3. Supervising and inspecting the observance of legal documents on goods labeling. Assuming the prime responsibility for settling and handling violations of goods labeling.
4. Stipulating the announcement of goods labels.
5. Organizing the building and management of a database on goods labels.

The General Department of Standardization, Metrology and Quality Control unde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assist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erforming the state management of goods labeling.

Article 22. Responsibilities of ministries, ministerial-level agencies and government-attached agencies

Ministries, ministerial-level agencies and government-attached agencies shall,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competence, have to coordinate with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erforming the state management of goods labeling.

Basing themselves on the goods under their management, ministries, ministerial-level agencies and government-attached agencies shall guide in detail contents and ways of presentation of labels after consulting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23. Responsibilities of provincial/municipal People's Committees

Provincial/municipal People's Committe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tasks and powers, perform the state management of goods labeling in localities.

Chapter IV

HANDLING OF VIOLATIONS OF GOODS LABELING

Article 24. Competence to handle violations of goods labeling

People's police, customs, market management, goods quality management and specialized inspection and other agencies shall, within the scope of their assigned functions, tasks and powers, shall, when detecting law-breaking acts related to goods labeling, have the right to handle such acts according to current provisions of law.

Article 25. Handling of violations committed by production, trading, agency, importing and exporting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violating the provisions of law on goods labeling shall,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ir violations, be administratively sanctioned or examined for penal liability; if causing damage, they shall have to pay compensations therefo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law.

Article 26. Handling of violations committed by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of state management agencies

Those who abuse their positions and powers to hinder lawful activities or violate the law on goods labeling shall, depending on the nature and severity of their violations, be administratively sanctioned or examined for penal liability; if causing damage, they shall have to pay compensations therefor according to the provisions of

law.

Article 27. Settlement of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Competent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shall have to settle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related to goods labeling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law on complaints and denunciations and goods labeling, and other relevant provisions of law.

Chapter V

IMPLEMENTATION PROVISIONS

Article 28. Implementation effect

1. This Decree shall take effect six months after its publication in “CONG BAO.”
2.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No. 178/1999/QD-TTg of August 30, 1999, promulgating the Regulation on labeling of domestically circulated goods and exported and imported goods, and Decision No. 95/2000/QD-TTg of August 15, 2000, adjust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contents of the Regulation on labeling of domestically circulated goods and exported and imported goods, issued together with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No. 178/1999/QD-TTg of August 30, 1999, shall cease to be effective as from the effective date of this Decree.
3. Goods which have labels presented under the Prime Minister’s Decision No. 178/1999/QD-TTg of August 30, 1999, and Decision No. 95/2000/QD-TTg of August 15, 2000, and were put into circulation on the market before the effective date of this Decree shall be permitted for continued circulation.

Article 29. Implementation responsibility

1. The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shall have to guide the implementation of this Decree.
2. Ministers, heads of ministerial-level agencies, heads of government-attached agencies and presidents of People's Committees of provinces and centrally run cities shall have to implement this Decre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Prime Minister

NGUYENTANDUNG

Appendix I

REGULATIONS ON WAYS OF PRESENTATION OF GOODS QUANTITIES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89/2006/ND-CP of August 30, 2006)

| Ordinal number | State, form or category of goods | Way of presentation |
|----------------|--|---|
| 1 | - Solid or gaseous goods, | - Net weight, |
| | - Mixed solid and liquid goods, | - Net mixed weight and weight of solid substances, |
| | - Goods being compressed gas, | - Net weight of compressed gas and net weight of pressurized containers (or net weight of compressed gas and aggregate weight of compressed gas and pressurized container), |
| 2 | - Pasty goods, | - Net weight or volume, |
| | - Pasty goods contained in sprayers, | - Net weight of both pasty and pressurizing substance, |
| 3 | - Liquid goods, | - Net volume at 200C, |
| | - Liquid goods contained in prayers, | - Net volume at 200C, including both liquid and pressurizing substances, |
| 4 | Medicines for human use; veterinary drugs; plant protection drugs: | |
| | - In pellets, | - Quantity of pellets, weight per pellet, |
| | - In powder, | - Net weight, |
| | - In liquid form, | - Net volume, |
| | - Sexual stimulants for fish, | - International unit, |
| 5 | Plant seeds: | |
| | - Seeds, | - Net weight, |
| | - Seedlings, | - Seedling, |
| 6 | Aquatic seeds: | |
| | - Artermia eggs, | - Net weight (g). |
| | - Unicellular plant seeds, | - Quantity of cells, |
| | - Multicellular plant seeds, | - Net weight, |
| 7 | Goods which are articles of different sizes of their surface | Sizes of surface: length and width or diameter or diagonal, |
| 8 | Goods in sheet form arranged in plates, | Thickness, area or length x width of a plate, |

| | | |
|----|--|---|
| 9 | Goods in sheet form arranged in rolls, | Thickness, width of sheet and length or net weight of a roll. |
| 10 | Goods in fibers or bars, | Section or equivalent parameters (parameters inferable from such section) and length or net weight of fiber or bar. |
| | - For fibers or bars made of smaller fibers, | - Section/fiber, quantity of fibers and length or net weight of fiber or bar should be shown. |
| | - For covered fibers or bars, | - Thickness of cover should be added. |
| 11 | Pipelines, | Outer and inner diameters or thickness and length of pipelines. |
| 12 | Fishing nets, | Stretched length, stretched width or number of meshes by length and net weight. |
| 13 | Machines, equipment, tools, appliances | Sizes of the mass of products or goods. |

Appendix II
REGULATION ON OTHER WAYS OF PRESENTATION OF POINTS OF
TIME FOR GOODS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89/2006/ND-CP of August 30, 2006)

| Category of goods | Goods items | Way of presentation |
|----------------------------|--|---|
| Food | Agricultural products, grains | Harvest or date of packing |
| Medicines for human use | Medicines for human use. | Date of start of manufacture. |
| | - For medicines prepared according to prescriptions. | - The date of preparation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Plant protection drugs | Plant protection drugs. | Date of processing or bottling or packing. |
| Plant seeds; animal breeds | Plant seeds, animal breeds | Date of ex-work or delivery for sale. |
| | Artemia eggs | Date of canning. |
| Petroleum products | Accompanying gas and other hydrocarbon gases | Date of ex-work inspection |

Appendix III
REGULATION ON OTHER WAYS OF PRESENTATION OF
INGREDIENTS AND INGREDIENT QUANTITIES OF GOODS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89/2006/ND-CP of August 30, 2006)

| Category of goods | Goods items | Way of presentation |
|--|---|---|
| Foodstuffs | Aquatic foodstuffs: if added with other materials, foodstuff additives. | Ingredient quantities of other materials and foodstuff additive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Foodstuff additives | Foodstuff additives. | |
| | - If there are two or more additives in a single pack. | - All the weights of additives should be shown in the order of their ratios. |
| Animal feeds | Aquatic animal feeds. | Principal ingredient quantities. |
| | - If added with non-nutrients. | - Ingredients of non-nutrient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 - For synthetic feeds. | - Protein, lipid, ash contents, fiber, humidity and absorbability level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 - For supplementary feeds. | - Contents of supplementary substance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Pharmaceutical materials | Pharmaceutical materials. | Content or concentration of active substances. |
| Veterinary drugs, vaccines and biologicals used in veterinary medicine | Veterinary drugs. | Ingredients, ingredient quantities of active substances. |
| Veterinary drugs and biologicals used in aquaculture | Aquatic resource protection drugs. | Composition formula or composition. |
| Plant protection drugs | Plant protection drugs. | Ingredient quantities of main active substances, content of solvent (if solvents increase toxicity or physic nature). |
| Textile, garment, leather and footwear products | Garments. | Principal ingredient quantity of material. |
| | - For multi layers. | - Principal ingredient quantity of each layer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 | |
|------------------------|---|--|
| Wood furniture | - Sawn timber of the same species of tree. | - Name of species. |
| | - Sawn timber of different species of trees. | - Category of timber. |
| | Household wood products | - Name of timber. |
| Metallurgical products | - Steel, | - Steel mark. |
| | - Metal, | - Category and purity(% of metal). |
| | - Ores | - Ore content(% of weight). |
| Petroleum products | Accompanying gas and other hydrocarbon gases | Gas composition(% of volume). |
| Chemicals | Chemicals. | Chemical formula, composition formula, composition. |
| | - For chemicals contained in pressurized containers | - Containing capacity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Fertilizers | Fertilizers | Ingredient quantity. |
| Industrial explosives | Industrial explosives | Principal ingredient quantity affecting the usage value. |

Appendix IV
REGULATION ON OTHER WAYS OF PRESENTATION OF TECHNICAL
SPECIFICATION AND HYGIENE AND SAFETY INFORMATION AND
WARNINGS OF GOODS

(Issued together with the Government's Decree No. 89/2006/ND-CP of August 30, 2006)

| Category of goods | Goods items | Way of presentation |
|--|---|---|
| Foodstuffs additives | Foodstuff additives. | - The phrase "Used for foodstuff" should be shown. |
| Veterinary drugs, vaccines and biologicals used in veterinary medicine | Veterinary drugs. | Main effects, side effects, registration number, manufacture lot number and the phrase "Only for veterinary use"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 - For schedule-A toxic substances. | - The phrase "Do not overuse prescribed dosage" (in black)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 - For schedule-B toxic substances. | - The phrase "Do not overuse prescribed dosage" (in red)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 - For drugs for external use. | - The phrase "For external use only" (in black)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Plant protection drugs | Plant protection drugs. | Use registration number, quality control number (KCS), information on toxicity, warnings and instructions on prevention of intoxication, instructions on treatment upon intoxication. |
| Plant seeds; animal breeds, aquatic seeds | Seedlings subject to grade classification | The grade of seedlings should be shown. |
| | Aquatic plant seeds | Length, diameter of main trunk, growth stage. |
| | Animal breeds. | Grade of breed, yield indicator typical of the breed. |
| | - For egg-oriented poultry. | - The egg yield per year should be additional shown. |
| | - For meat-oriented poultry. | - The gained weight per unit of time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 - For pork-oriented pigs. | - The weight gain capability, amount of feeds and thickness of back fat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 | |
|------------------------|--|--|
| | - For sows, | - Number of piglets per brood and number of broods per year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 Aquatic animal species: | |
| | - Reared species, | - Number of age days, length of breeding animals, |
| | - Artermia eggs, | - Quantity of eggs per gram, ratio of hatched eggs (%). |
| | Parental breeds, | - Weight (g), reproductive stage. |
| Metallurgical products | - Alloy | - Typical indicators for identification, which are decisive to the use purpose. |
| Fishing gear | - Fishing nets, | - Color, fineness (tex), strength(N), mesh size, |
| | - Fishing yarns and ropes, | - Diameter, fineness(tex), strength(N) twistedness(twists/m). |
| Chemicals | Chemicals, | Typical quality indicators, |
| | - For chemicals which are inflammable, toxic, corrosive, | - Relevant warnings should be shown, |
| | - For chemicals contained in pressurized containers, | - The code of container, containing capacity, loading person and hazard warning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Fertilizers | Fertilizers, | |
| | - For micro-organic fertilizers, | - The category and quantity of microorganisms should be additionally shown, |
| Industrial explosives | Industrial explosives | Principal quality indicators and usability in industrial activities, |

신흥교역국의 통관환경 연구: 베트남

2015년 12월 23일 인쇄

2015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박 형 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1924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 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 판 및
인 쇄 고려씨엔피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 ISBN 978-89-8191-816-3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